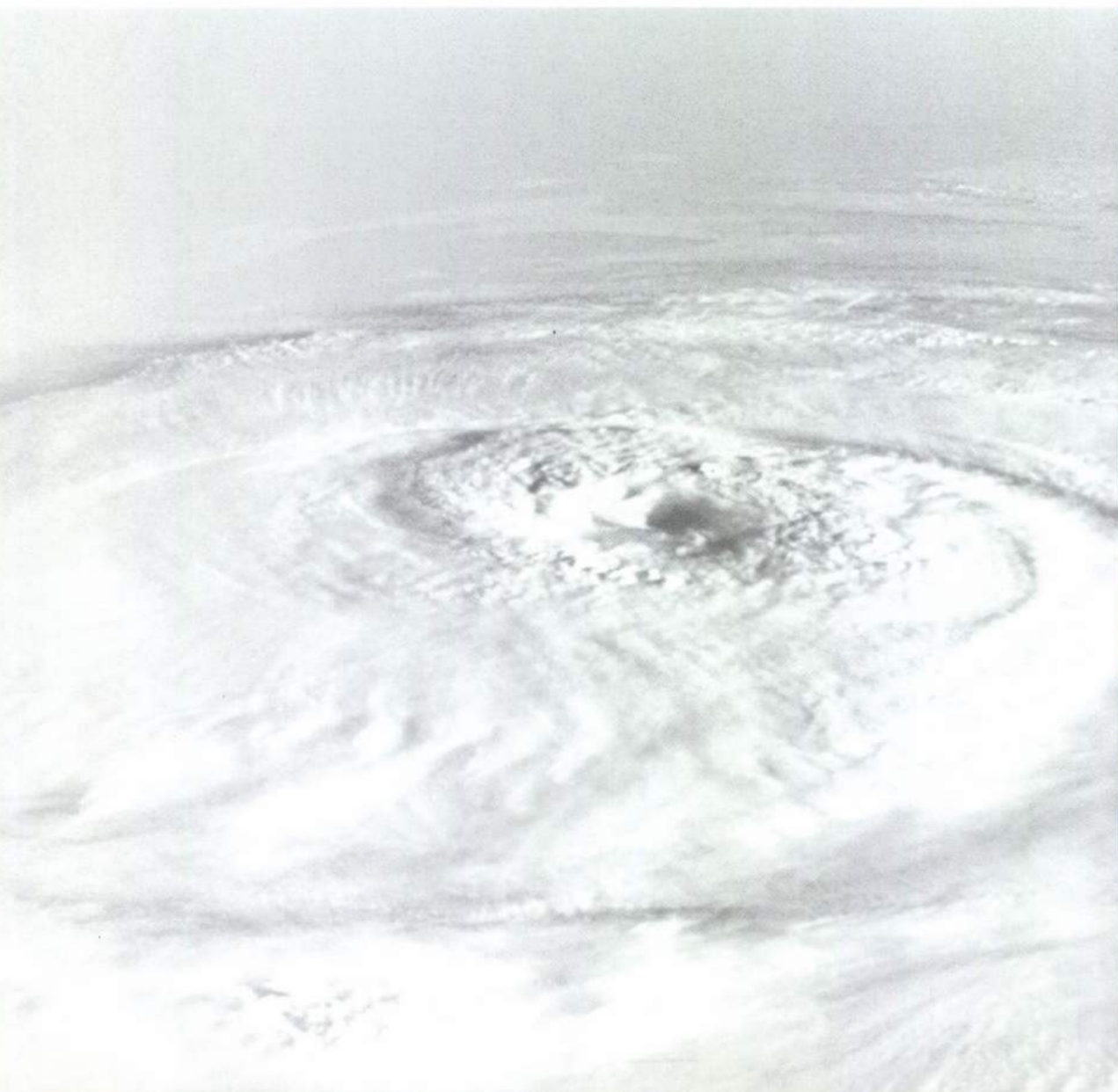


2009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제 출 문

제출처: 전국재해구호협회

본 보고서를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의 연구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09. 12. 4

연구 기관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연구책임자 : 이 재 은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책임자: 이재은(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유현정(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변성수(충북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이주호(충북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김주형(충북대 행정학과 석사과정)

조 성(충북대 행정학과 석사과정)

전국재해구호협회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의연금의 지원기준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제1절 의연금의 의의와 기능	4
1. 의연금의 개념	4
2. 의연금의 특징	5
제2절 의연금 지원의 유형 및 기준	7
1. 재해의연금 지원의 유형	7
2. 의연금 지급기준	8
3. 피해 조사 요령	9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22
제3장 의연금의 관리 및 운영 실태 분석	30
제1절 의연금의 법제도 현황 분석	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0
2. 재해구호법	34
3.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
4.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	43
5. 풍수해보험법	46
제2절 과거 피해로 인한 의연금 지원 대상 및 현황 분석	57
1. 의연금 지원 현황	57

2. 최근 10년간 의연금 지급 총괄 현황	59
3. 최근 10년간 의연금 세부 지급 현황	62
제3절 일본의 의연금 지원 사례 분석	66
1. 재난 피해 조사 기준 및 방법	66
2. 의연금에 대한 생계지원 방식	67
제4절 소상공인 생계지원 및 주택침수에 대한 지원액 현황 분석	71
1. 소상공인 피해조사의 어려움과 조사 대상	71
2. 주택 침수에 대한 지원 현황 분석	72
제4장 의연금 지원 체계에 관한 실증분석	81
제1절 조사의 설계	81
1. 조사내용	81
2. 조사방법	81
제2절 의연금 관리 운영에 대한 공무원, 일반 시민, 재해지 역 주민의 인식 분석	83
1. 인구사회학적 특성	83
2. 의연금의 사용	86
3. 의연금의 지급 범위 및 기준	126
제3절 의연금 지원 체계에 관한 실증분석의 결론	153
1. 현행 의연금 지원 정책에 대해 회의적	153
2. 의연금에 대한 인식도	154
3. 재해복구 비용 개별적 사전 마련 정책 필요	154
4. 의연금 사용처	155
5. 의연금 지원 방안	155

6. 의연금 지급방안	156
7. 모금된 의연금이 부족 또는 초과할 경우 대처방안	157
8. 소규모 재난시 의연금 모금	158
9. 소상공인 피해조사	158
제5장 효율적인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160
제1절 의연금 지원제도의 개선방향	160
제2절 의연금 지급기준 개선방향	166
제3절 의연금 지원의 향후 발전방향과 개선방안	171
제6장 결론	175
1. 연구의 요약	175
2. 연구 결과의 함의	177
참고문헌	180
부록 1 : 설문조사지 : 공무원용	186
부록 2 : 기탁자·일반시민용	198
부록 3 : 재해지역 주민용	205

- 표 목 차 -

<표 1> 의연금 지원의 유형	7
<표 2> 재해구호에 관한 선행연구	24
<표 3> 재해의연금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29
<표 4>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37
<표 5> 국고지원 제외 사항	42
<표 6> 지방자치단체별 부담금 비율	43
<표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신체장해등급 7등급	46
<표 8>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은 자	51
<표 9> 보험료의 구성	53
<표 10> 의연금의 지원범위	58
<표 11> 년도별 의연금 지급 총괄 현황	60
<표 12> 년도별-피해유형별 의연금 지급 총괄 현황	61
<표 13> 시도별-년도별 의연금 지급 총괄 현황	62
<표 14> 년도별-인명피해 유형별 의연금 지급 현황	63
<표 15> 년도별-주택피해유형별 의연금 지급 현황	64
<표 16> 년도별-기타 의연금 지급 현황	65
<표 17> 연도별 재해의연금 지원현황	73
<표 18> 연도별 재해 의연금 중 수해피해 지원현황	74
<표 19> 재해의연금 중 생계지원과 주택침수지원현황	75
<표 20> 재해의연금 중 생계지원현황	76
<표 21> 재해의연금중 주택침수지원현황	77
<표 22> 연도별 재해의연금중 법정구호비와 위로금 현황	78
<표 23> 연도별 주택피해 지원현황	79

<표 24> 재해지역 주민 및 일반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4
<표 25> 공무원 인구사회학적 특성	85
<표 26> 의연금 지급에 대한 이재민의 생계안정 만족도	86
<표 27> 의연금 지급에 대한 이재민의 정신적 안정 만족도	86
<표 28> 의연금 지급에 대한 이재민의 일상생활 복귀 만족도	87
<표 29> 일반 시민의 의연금에 대한 인식	88
<표 30> 의연금의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인식 분석	89
<표 31> 의연금의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인식 t-test	90
<표 32> 중장기 복구지원 사용에 대한 인식분석	91
<표 33> 중장기 복구지원 사용 대한 t-test	92
<표 34> 소외계층 추가 지원에 대한 인식분석	93
<표 35> 소외계층 추가 지원에 대한 t-test	94
<표 36> 봉사활동 단체 지원에 대한 인식분석	94
<표 37> 봉사활동 단체 지원에 대한 t-test	95
<표 38> 현금지급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96
<표 39> 중장기 재건의연금 서비스 지원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97
<표 40> 생활 의연금 현금지급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98
<표 41> 중장기 복지의연금 지급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99
<표 42> 소외 계층 추가지원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101
<표 43> 서비스지원 다양화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101
<표 44> 의연금 지급 고려사항에 대한 일반시민,재해지역 주민 인식분석 (1)	103
<표 45> 의연금 지급 고려사항에 대한 일반시민,재해지역 주민 인식분석 (2)	103
<표 46> 의연금 지급 고려사항에 대한 일반시민,재해지역 주민 인식분석	

(3)	104
<표 47> 의연금 지급 고려사항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105
<표 48> 사전 보험 가입 등에 대한 인식 분석	106
<표 49> 사전 보험 가입 등에 대한 인식 t-test	108
<표 50> 정부 피해보상금 형태 지원에 대한 인식분석	109
<표 51> 정부 피해보상금 형태 지원에 대한 인식 t-test	110
<표 52> 생산시설 피해 지원에 대한 인식분석	110
<표 53> 생산시설 피해 지원에 대한 인식 t-test	111
<표 54> 의연금에서 위로금 지급에 대한 인식 분석	112
<표 55> 의연금에서 위로금 지급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113
<표 56> 서비스지원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분석	114
<표 57> 서비스지원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115
<표 58> 지원방식 다양화에 대한 인식분석	116
<표 59> 지원방식 다양화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117
<표 60> 현금과 물품 지급에 대한 인식 분석	118
<표 61> 현금과 물품 지급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119
<표 62> 현금과 복구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 분석	120
<표 63> 현금과 복구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121
<표 64> 의료·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 분석	122
<표 65> 의료·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123
<표 66> 서비스 단체 지원에 대한 인식분석	124
<표 67> 서비스 단체 지원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125
<표 68> 현금과 봉사 서비스지원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125
<표 69> 모금 한도내에서 지급하는데 대한 인식분석	127
<표 70> 모금 한도내에서 지급하는데 대한 인식 t-test	128

<표 71> 추가모금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129
<표 72> 공익기금을 통한 부족분 보충에 대한 인식 빈도분석	130
<표 73> 공익기금을 통한 부족분 보충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131
<표 74> 정부 예산을 통한 부족분 보충에 대한 인식분석	132
<표 75> 정부 예산을 통한 부족분 보충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133
<표 76> 의연금 추가지급에 대한 인식분석	134
<표 77> 현금외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분석	135
<표 78> 잉여를 재해 대비 기금으로 적립하는데 대한 인식분석	136
<표 79> 소외계층 추가지원에 대한 인식분석	137
<표 80> 소규모재난의 경우 기존 적립금 지원에 대한 인식분석	138
<표 81> 소규모재난의 경우 기존 적립금 지원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139
<표 82> 소규모재난시 의연금 모금에 대한 인식분석	140
<표 83> 소규모재난시 의연금 모금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141
<표 84> 부족분의 정부 구호금 지급에 대한 인식분석	142
<표 85> 부족분의 정부 구호금 지급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144
<표 86> 소규모재난시 의연금 지급 않는데 대한 인식분석	144
<표 87> 소규모재난시 의연금 지급 않는데 대한 인식 분산분석	146
<표 88> 동일 피해 동일 지급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146
<표 89> 재산피해 대비 차등지급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147
<표 90> 세대 구성원수 대비 차등지급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148
<표 91> 의연금 총액 대비 차등지급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149
<표 92> 현금 일시지급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151
<표 93> 6개월 분할지급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152
<표 94> 의연금 지원 기준(안)	170

- 그 림 목 차 -

<그림 1> 의연금 지급에 대한 이재민의 만족도	87
<그림 2> 일반시민의 의연금 사용처에 대한 인식	88
<그림 3>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인식(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	90
<그림 4> 중장기 복구지원 사용에 대한 인식(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	91
<그림 5> 소외계층 추가 지원에 대한 인식(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	93
<그림 6> 봉사활동 단체 지원에 대한 인식(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	95
<그림 7> 현금지급에 대한 인식(공무원)	97
<그림 8> 중장기 재건의연금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공무원)	98
<그림 9> 생활 의연금 현금지급에 대한 인식(공무원)	99
<그림 10> 중장기 복지의연금 지급에 대한 인식(공무원)	100
<그림 11> 서비스지원 다양화에 대한 인식(공무원)	102
<그림 12> 의연금 지급 고려사항(일반시민-재해지역 주민)	102
<그림 13> 의연금 지급 고려사항(공무원)	105
<그림 14> 사전 보험 가입 등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107
<그림 15> 정부 피해보상금 형태 지원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109
<그림 16> 생산시설 피해 지원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	111
<그림 17> 위로금 지급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112
<그림 18> 서비스지원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114

<그림 19> 지원방식 다양화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116
<그림 20> 현금과 물품 지급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118
<그림 21> 현금과 복구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120
<그림 22> 의료·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122
<그림 23> 서비스 단체 지원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124
<그림 24> 현금과 봉사 서비스지원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126
<그림 25> 모금 한도내에서 지급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	127
<그림 26> 추가모금에 대한 인식 (공무원)	129
<그림 27> 공익기금을 통한 부족분 보충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130
<그림 28> 정부 예산을 통한 부족분 보충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132
<그림 29> 의연금 추가지급에 대한 인식 (공무원)	134
<그림 30> 현금외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 (공무원)	135
<그림 31> 잉여 적립에 대한 인식 (공무원)	136
<그림 32> 소외계층 추가지원에 대한 인식 (공무원)	137
<그림 33> 기존 적립금에서 지급하는데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139

<그림 34> 소규모재난시 의연금 모금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141
<그림 35> 부족분의 정부 구호금 지급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143
<그림 36> 소규모재난시 의연금 지급 않는데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145
<그림 37> 동일 피해 동일 지급에 대한 인식 (공무원)	147
<그림 38> 재산피해 대비 차등지급에 대한 인식 (공무원)	148
<그림 39> 세대 구성원수 대비 차등지급에 대한 인식 (공무원)	149
<그림 40> 의연금 총액 대비 차등지급에 대한 인식 (공무원)	150
<그림 41> 현금 일시지급에 대한 인식 (공무원)	151
<그림 42> 6개월 분할지급에 대한 인식 (공무원)	15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사회보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상 이변 현상에 의한 자연재난의 피해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민간 차원에서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재난 피해 현장에서 이재민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은 물론 이재민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의연금 모금 등의 활동이 그것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일반 국민들과 언론들은 그 피해규모 내지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또한 그 피해규모에 따라 각종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이 지급된다. 따라서 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재난피해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소관부처에 따라 지원항목과 재원별 부담률이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주요 지원내용은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기타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이재민 구호 및 생계를 위한 지원으로서 응급 구호, 장기 구호, 생계지원,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을 위한 피해조사는 주택이 침수 또는 반과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조사, 주택의 반과 또는 전과·유실 피해를 입어 장기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 수단인 농·임·축·어·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

원이 필요한 농·임·축·어가 및 염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및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등이 있다. 즉 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는 크게 주택피해 조사와 생계수단 피해조사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피해조사 체계에서 의연금품 지급을 위한 피해조사와 이 중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의연금품 지급을 위한 피해조사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20조와 제61조, 제66조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시행한 피해조사를 근거로 하여 의연금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연금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대두되는 쟁점은 현행 의연금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의연금에 대한 지급범위 및 기준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하에서 이 연구에서는 재해의연금의 성격에 맞는 합리적인 의연금 배분 원칙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혜자 중심의 효율적인 이재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의연금의 유형을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유형화하면, 첫째, 현재 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단기적 차원의 의연금 배분은 응급 의연금(emergent donation), 둘째, 현재 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중기적 차원의 의연금 배분은 재건의연금(recovery donation), 셋째, 과거 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복지의연금(welfare donation)과 구호서비스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의연금의 유형에 따라 이 연구의 범위는 합리적인 지원 기준, 의연금의 지원 방안 모색, 중기적 이재민들의 지원을 위한 필요한 제반 여건 마련 방안 등에 초점을 둔다.

이 연구는 문헌분석 방법과 실증분석 방법 등 크게 두 가지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우선, 문헌분석 방법으로 국내 의연금 배분 및 지원에 관한 연구에 대한 종합 분석과 해외 의연금 배분 및 지원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는 한편, 국내 의연금 배분 실태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함께 현행 의연금 배분의 제반 문제점 등을 분석한다. 둘째, 실증분석 방법으로는 국내 재난 피해를 당한 이재민과 공공기관 대상 설문조사, 국내 의연금 수혜자의 구호서비스 수요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국내 의연금 공공기관 담당자의 의연금 지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해외 의연금 배분 및 지원 단체의 현황 파악, 해외 의연금 배분 조직의 기능과 역할, 운영방안 조사, 해외 의연금 단체의 지원 사업 현황 및 실태 파악 등을 실시한다.

제2장 의연금의 지원기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의연금의 의의와 기능

1. 의연금의 개념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으로 의연금을 모금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의연금(義捐金)은 사회적 공익이나 자선을 위하여 내는 돈(표준국어대사전, 2007)으로 정의된다. 즉 의연금은 발생한 상황에서 사회적 공익이나 이재민에 대한 자선을 위하여 내는 돈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때 사회적 공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고, 자선은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준다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표준국어대사전, 2007). 따라서 재해의 연금은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이재민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기 위해 내는 돈으로 이해할 수 있다¹⁾.

일반적으로 의연금은 기부금 모금 활동과 다소 상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체로 기부금의 모금은 지역사회에 불우한 이웃을 돕거나 그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기부금 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들은 그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경비를 걷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의연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부금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성격

1) 의연금과 기부금은 의미상 차이점이 있다. '의연금'이 '사회적 공익이나 자선을 위하여 내는 돈'으로서 직접적으로 타인을 돕는 행위인데 반하여, '기부금'은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대가없이 내놓은 돈'으로 정의(표준국어대사전, 2007)되어 타인이나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도움으로써 간접적으로 타인을 돕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의연금은 재난 발생으로 말미암은 피해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둘째, 의연금은 재난 피해 상황에서 불행에 당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기부 행위에 기초하고 있다. 셋째, 의연금의 모금과 지원은 신속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지니고 있다. 넷째, 의연금 모금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일시적인 위로와 동시에 정상 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다섯째, 의연금은 동일한 재난으로부터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여섯째, 의연금 모금은 대부분의 경우 모금 기간이 단기간에 이루어진다. 일곱째, 의연금 모금은 모금액수가 대규모라는 점을 특성으로 한다. 여덟째, 의연금 모금 및 지원은 사적 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아홉째, 의연금 모금 및 지원 행위는 사적부조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연금의 모금, 관리, 지원 행위는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간의 비영리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취지에 적합하다. 열 번째, 의연금의 모금에 드는 운영상의 경비 지출은 각 민간 비영리 조직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의연금은 모금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재민 지원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서는 모금 창구의 단일화가 요구된다.

2. 의연금의 특징

일반적으로 의연금은 성금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 즉 성금의 다양한 유형 중의 하나로 의연금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금은 정성으로 내는 돈(표준국어대사전, 2007)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성금은 정성으로 돈을 내는 기부자의 의도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성금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연금이 지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연금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재난 피해 상황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이재민에 대한 자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의연금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금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의연금은 모금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달을 대행해주고 있는데, 국민정서 상 일시적인 구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해복지 차원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넷째, 현재 의연금의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도보다 공익적 부분을 더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어 있으며, 지원 기준은 인명피해와 주택피해, 생계유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제2절 의연금 지원의 유형 및 기준

1. 재해의연금 지원의 유형

향후 이재민들의 정상생활 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해의연금 지원 사업을 보다 세분화하여 유형화하고 이에 따라 지원 범위 및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이재은·유현정, 2009: 131-156). 재해의연금의 지급 범위는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의연금 지급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시간적 범위에서 보면 단기의 경우에는 위로금 성격의 의연금을 현금 지원하고, 중기와 장기는 현금이 아니라 지원 사업을 통해 이재민에게 도움을 준다고 가정해 보자. 다음으로, 공간적 범위에서 보면 현재 재해발생 지역과 과거 재해발생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표 1>과 같이 설정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의연금 지원의 유형

공간 \ 시간		시간	
		단기	중·장기
현재 재해발생 지역		응급의연금 지원	재건의연금 지원
과거 재해발생 지역		생활의연금 지원	복지의연금 지원

첫째, 현재 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단기적 차원의 의연금 배분은 응급 의연금(emergent donation) 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즉 현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위로금 성격의 의연금이 배분된다. 둘째, 현재 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의연금 배분은 재건의연금(recovery donation) 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현재 발생한 재난 피해로 인한 이재민의 생활을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원 사업을 벌이는 경우이다. 재건의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사회의 시민단체, 기업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과거 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단기적 차원의 의연금 배분은 생활의연금(livelihood donation) 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과거에 발생한 재난 피해로 인해 정상생활로 회복되지 못한 이재민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위로금 성격의 의연금을 지원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생활의연금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과거 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의연금 배분은 복지의연금(welfare donation) 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과거에 발생한 피해로 인해 단기적 지원을 통해 정상생활로 복귀하기 어려운 이재민에게 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 지원에 의해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활이 매우 어려운 사람을 의미하며, 이재민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재민으로 전락한 경우로서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수준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이재민의 필요사항은 위로 이상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의 많은 활동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재민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의 수단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2. 의연금 지급기준

현재 의연금은 이재민에 대한 의연금 지급, 이재민 재해구호를 위한 물품구입, 의연금품 모집·배분·관리 경비, 협회의 운영, 기타 소방방재청장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5가지 사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소방방재청 훈령 제79호, §3①).

의연금의 지원은 재해로 인한 사망자 유족 등에 대한 의연금, 주택침

수·파손에 대한 의연금, 생계지원 대상피해에 대한 의연금 등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다. 재해로 인한 사망자 유족 등에 대한 의연금은 사망·실종자의 유족인 세대주(1,000만원)와 세대원(500만원)에게 지원되며, 부상자인 세대주(500만원)와 세대원(250만원)에게 지급된다. 주택침수·파손에 대한 의연금은 주택전과(세대당 500만원), 주택반과(250만원), 주택침수(세대당 100만원)의 경우 지원된다. 생계지원 대상피해에 대한 의연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를 받는 농가·어가·임가·염생산가 등에게 세대당 100만원이 지원되며,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세대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3. 피해 조사 요령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피해조사

(1) 사망·실종, 부상자 구호

피해발생지 관할 시·군·구에서 피해조사와 보고를 담당하며, 거주지 시·군·구에 통보한다.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 여부를 사고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는 등 엄밀하게 조사한다. 피해조사에는 외국인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 및 고의·실수등 귀책사유가 명백한 사고는 제외된다. 제외되는 예에는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홍수구경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통제중인 잠수교(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하천바닥이나 세월교(잠

수교)에서 야영 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등이 있다.

부상자²⁾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 등급 7급 이상이어야 하나 우선 객관적 기준에서 향후 후유증 등으로 7급 이상이 예상될시 피해대상에 포함한다.

(2)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가. 응급 구호

이재민 응급구호는 주택이 침수 또는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하며, 침수나 제방붕괴 등이 우려되어 일시 대피 후 귀가한 경우에는 응급구호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장기 구호

2) 부상자에는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 발을 리스프랑(발등의 볼록한 부분)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한 팔에 가관절(김스를 하였으나 뼈가 어긋나는 등)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등이 있다.

이재민 장기구호는 주택이 반파 또는 전파·유실 피해를 입어 장기 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재민 장기구호의 대상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소유자, 전·월세입자, 침수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생계지원

이재민 생계지원은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임·축·어·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임·축·어가 및 염생산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피해조사 대상자에는 주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 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 자 등이 포함된다.

라.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면제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면제 조사는 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임·축·어·염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임·축·어가 및 염생산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피해조사 대상자에는 주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 자 등이 있다. 특히 사항으로 별도의 장학금 수혜자도 대상에 포함하며, 의무교육기관의 학생과 타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피해조사

(1) 주택복구

가. 주택 파손·유실

주택피해조사는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전파·반파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동일 부지 내에 1인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경우에는 주건물 1동만 피해로 하여 조사한다. 그러나 부속건물과 빈집,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피해구분은 피해면적을 및 용적률 개념이 아닌 개축 또는 수리여부로 판단한다. 유실은 홍수,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이며, 전파는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반파는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나. 주택침수

주택침수조사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한다. 주택침수조사는 전·월세입주자도 포함(주민등록상에는 없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을 시는 대상에 포함)하며, 1인 소유의 부지 내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는 1동만 지원한다. 그리고 피해조사대상에서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1가구 2

주택이상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세입자보조

세입자보조 조사는 주택이 유실·전파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월세 또는 전세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세입자가 사택, 빈집 또는 시가(孀家)등으로 이사하여 실제 계약금이 들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라. 마을기반조성

마을기반조성조사는 10동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경우 대상 지구를 조사한다.

(2) 농경지 복구

농경지 복구를 위한 피해조사는 재난으로 농경지의 유실 또는 매몰과 해수의 침수 및 유출된 유류의 유입으로 염해·토양오염 피해를 입은 농경지 중 지구당(피해면적이 육안으로 보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연속성을 갖는 피해지역) 5,000㎡이상 이거나, 1농가당 165㎡(매몰심도 10cm이상)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피해조사는 현지를 답사하며 필지별로 조사하며 매몰과 유실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매몰면적은 매몰심도가 10cm 이상 피해가 발생한 면적이며, 유실면적은 유실깊이 10cm 이상 피해가 발생한 면적이 대상이다. 또한 농경지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

는 매입대상으로 조사한다.

(3) 농림시설 및 농작물, 산림작물 복구

가. 농림시설 파손·유실

①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피해조사는 전파·반파 구분 조사하고, 시설별, 종류별,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단순 비닐과열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구분은 피해부분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전파는 시설의 70%이상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이다. 반파는 시설의 35%이상 70%미만 파손 및 유실·매몰된 경우이며, 피해액은 피해면적과 피해단가의 곱으로 책정하며, 반파는 1/2을 적용한다.

② 인삼재배 시설

인삼재배 시설은 유실·매몰·전파·반파로 구분하고 실제 피해면적을 조사한다. 피해정도 구분기준과 피해액 책정은 비닐하우스와 동일하며, 인삼재배 농가에 대한 조사는 인삼의 생육기간별(묘삼~6년차)로 침수기간(2시간~1.5일)에 따라 피해율(10%~100%)을 산정한다.

③ 버섯재배사

버섯재배사는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반파 구분하여 조사하며, 시설의 종류는 병버섯재배사, 판넬재배사, 하우스형 간이재배사 등으로 구분한다.

④ 과수 재배 시설

과수 재배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와 반파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시설의 종류에는 준영구시설을 포함하여 덕시설, 지주시설, 방조망, 관수시설 등이 있다.

⑤ 농산물 저장시설, 농기계, 창고

농산물 저장시설과 농기계 및 창고의 피해조사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신고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용도 일치여부 확인한다.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매몰, 전파, 반파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⑥ 농산물 건조시설

농산물 건조시설의 피해조사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신고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용도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피해액은 피해물량(톤)과 피해단가의 곱으로 책정한다.

⑦ 표고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시설

표고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시설 조사는 종균 및 표고자목용 원목 구입

내역 등을 확인하고, 시·군·구 및 산림조합의 표고제배 자금지원실적을 고려하여 피해물량을 조사한다. 표준설계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은 제외하는 등 비닐하우스 조사요령에 준하여 조사한다.

⑧ 잔디, 밤나무, 대추, 뽕은 감, 호도, 조경수, 분재 및 야생화, 산림작물

피해조사는 재배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 등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면적만 조사하는 등 농작물에 준하여 조사하며, 임야에 식재한 밤나무는 과수원 형태로 조성된 것에 한하여 조사한다. 또한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되지 않거나 관리·수확 되지 않는 밤나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피해조사 대상은 농가(임가)에서 가계(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며, 재배자가 아닌 전문유통업자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과수목 받침대, 포도지주등 임시 가시설물 등은 제외된다.

농작물은 피해특성상 피해조사가 장기간 소요되므로 피해 발생시 우선 잠정 보고하고,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확정 전까지 조사 완료하되 부득이 누락사항이 있을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 계획 수립 전까지 보고한다. 누락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지원조치 하여야한다.

(4) 축산물증식 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가. 축사 파손·유실

축사의 피해조사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신고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재난으로 인한 축사에 대하여 축사전체 설치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면적을 기준하여 유실·매몰·전파·반파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유실·매몰은 홍수, 산사태 등으로 시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이며, 전파는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반파는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피해조사는 축사의 종류 및 규모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축사종류에는 한육우사, 유우사, 번식돈사, 산란계사, 육계사, 보온덮개형 축사 등이 있다.

나. 축사부대 시설

축사부대 시설의 피해조사는 축종별 분뇨처리시설종류별, 규모별 등으로 조사한다. 분뇨처리시설의 종류에는 한육우, 젖소, 돼지, 닭(평사, 케이지) 등의 분뇨처리시설이 있다. 재난으로 인한 축사부대시설에 대하여 유실·매몰·전파·반파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기타사항은 축사피해 조사요령을 준용한다.

다. 초지유실

초지유실에 대한 피해조사는 초지의 유실 및 매몰 피해로서 현지 조사를 통하여 초지 조성 허가대장 및 초지 관리대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조사대상은 조성방법, 조성면적, 피해면적 및 관리자 내역 등이 포함된다.

라. 잠실 파손·유실

피해조사는 유실·매몰·전파·반파된 잠실로써 반파는 건물평수와 파손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마. 가축입식

가축입식 피해조사는 축사의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등으로 가축의 폐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가축의 폐사시, 읍면동에서는 반드시 현지를 답사하여, 폐사가축종류 및 수량을 정확히 조사한 피해조사서를 작성 확인하고 사진촬영 후 매장 조치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피해확인조서를 작성한다.

바. 누에 유실·폐사

누에 피해조사는 잠실이 파손·유실되어 누에가 유실 또는 폐사된 경우 조사한다. 피해액 산정은 하지 않으며, 피해량은 참수에 따라 무게(kg)로 표시한다. 누에씨 공급(배부)대장을 참조하여 피해농가, 공급시기, 공급량 등 확인한 후 피해량을 산정한다.

(5) 어선과 어망·어구 피해

가. 어선의 파손·유실

어선의 파손·유실에 대한 조사대상은 유실·전파 및 반파된 어선 중 어

선법상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한 어선이다. 또한 1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신고를 필하였거나 양식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이 해당된다. 유실 및 침몰된 선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며, 전파는 80%이상 파손 및 침몰·유실된 선박이며, 반파는 25~80%미만 파손된 선박이다. 피해보고는 관할 해양경찰청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지사가 보고하고 선적지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한다.

나.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어망·어구의 파손·유실의 피해조사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허가)대장을 확인하고 유실된 어망·어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피해조사는 당해 연도 건조가격이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정치망, 낭장망, 통발류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조사내용에는 면허·허가대장상의 위치, 시설종류, 시설 규모, 어업권자와 피해어업인 일치, 면허기간 및 어업의 시기, 당해 연도 설치 자재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6)수산물 증·양식시설 및 입식 피해

가. 수산물 증·양식 시설의 파손·유실

피해조사는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전수조사하고 시설물 유실로 현장 확인이 불가할 경우는 수협, 조합, 어촌계, 내수면 관련협회, 어업권자들을 방문하여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주변 탐문조사를 실시한다. 또

한 반드시 어업허가·면허·신고대장을 확인(종류, 기간, 어장위치, 면적 등)하고 유실된 모든 시설은 시장·군수, 구청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참조하여 자세히 조사하되, 무면허·무허가(신고) 및 양식어업별 시설기준을 초과하거나 관련 시설이 비치되지 않은 양식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수산 증·양식부대 시설의 파손·유실

피해조사는 피해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전수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상사정 등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확인하여야 한다. 시설물 유실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협, 어촌계, 어업권자 등을 방문하여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주변 탐문조사를 실시한다. 반드시 어업면허, 시설의 허가·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고 유실된 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피해액의 산정은 부대시설 종류별로 지원기준지수를 적용하되, 시설은 단위별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 수산생물 등의 입식

수산생물 등의 입식에 대한 피해조사는 수산 증·양식시설 면허대장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식, 출하, 판매신고서 및 증명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유실인 경우에는 종묘살포계획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피해물량은 시설기준별 표준사육(입식)량을 초과할 수 없다.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고 수량

만 조사하며, 패류, 해조류, 기타류는 신고서 및 대장을 열람하여 입식장소·품종 및 수량, 종묘살포(입식)일자 등을 확인한다.

(7) 염전피해

염전피해조사는 염전의 유실 또는 매몰과 해수의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염전을 매몰과 유실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매몰면적은 매몰심도를 10cm로 기준하여 산술평균 환산한 면적을 피해염전으로 하며, 유실면적은 유실깊이 20cm로 기준하여 산술 평균 환산한 면적을 피해염전으로 한다. 피해조사대상에서 염관리법에 의한 염제조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상 염전을 가동하지 않은 염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8) 기타재난의 복구공장, 광산, 시장 등의 피해

피해조사는 공장, 광산, 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등을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하여, 회사 및 개인별 피해신고를 받은 후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한다. 광산은 갱도,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며, 시장은 상설 및 정기시장 지구내 피해를 의미한다. 피해액은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와 제품피해액을 제외한 시설물과 기계류 등 시설자재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재해구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주호(2007)는 재해구호 정책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 혹은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이 요구되며, 재해구호활동에 있어서 조직 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토대로 정부와 민간조직들이 상호간 재해구호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합의와 갈등해결 노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 신설을 통한 재난관리 및 재해복구의 제도적 개선 이후에도 정책네트워크 자체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태풍 '루사'의 재해구호정책을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결정과 재해구호 활동이 집행결과의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제도적 개선을 시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구조가 위계적 구조의 권력관계에서 상호의존적인 교환관계 구조로 변화되었으나,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달리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결정과 재해구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 실패에 따른 제도적 변화와 네트워크 구축이 현실적인 재해구호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해구호정책 네트워크 내 행위자의 수평적 권한 관계구조가 정책 집행기능에 한정되지 않으며 재해구호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 과정에서 상호간의 협력관계의 지속적인 유지와 신뢰 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해지역에 대한 재해구호활동의 집행에 있어서도 절차 혹은 프로그램적인 협력 보다는 피해상황 및 이재민의 요구에 따른 문제 중심의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계복(2001)은 재해구호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 재해대비분야에 있어

서 이재민 등록, 적정 구호품 지급, 재해 충격에 대한 사회 심리적 지원, 성금품 모집 및 배분 등에 대한 메카니즘의 구축이 요구되며, 경쟁적으로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신선인(2001)은 우리나라 공적 재해구호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해정신보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재해정신보건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 실시한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면접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재해정신보건체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다.

<표 2> 재해구호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자	연구목적, 분석대상, 주요 내용
재해구호	이주호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 : 재해구호 정책네트워크 모형 구축 분석대상 : 태풍 「루사」와 「에위니아」 재해구호 주요내용 : 효과적인 재해구호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의 형성이 요구됨
	이계복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 : 재해구호체계의 효율화 방안 모색 분석대상 : 한국의 재해구호체계 주요내용 : 재해구호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재민 등록, 적정 구호품 지급, 재해 충격에 대한 사회 심리적 지원, 성금품 모집 및 배분 등에 대한 메카니즘의 구축이 요구되고, 민간단체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체계를 갖추어야 함
	신선인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 : 재해정신보건체계의 도입 필요성 강조 분석대상 : 한국과 미국의 재해정신보건사업 주요내용 : 우리나라 공적 재해구호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해정신보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
	Gregory Kutz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 : 재해 낭비예방프로그램 필요성 설명 분석대상 : 허리케인 「katrina」와 「rita」 재해구호활동 주요내용 : katrina와 rita에서 이재민 구호가 신속하게 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불러왔음, 향후 낭비 및 남용 예방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부각
	Russell S. Sobel and Peter T. Leeson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 : 효과적인 재해구호체계 구축방안 모색 분석대상 : 재해구호체계의 수요자(이재민)와 공급자 주요내용 : 구호 요구자들(relief demanders)과 구호 공급자들(relief suppliers)들 사이의 정보 비대칭의 해소가 중요함.
	Rajib Shaw and Katsuihiro Goda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 : 효과적 재해구호를 위한 NGO 활용방안 모색 분석대상 : 일본 고베 지진 사례 주요내용 : 고베 지진 사례를 통해 자원봉사자와 NGO 활동의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간의 협력 증진이 중요함을 파악함
	Jalali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 : 재해구호체계의 민간 및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분석대상 : 재해구호체계의 민간 영역 주요내용 : 재해 발생 직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민간조직이나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

Gregory Kutz(2007)는 katrina와 rita에서 이재민 구호가 신속하게 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Katrina와 Rita 복구 과정 중에 잠재적(potentially)으로 수십억 달러 추가적인 지출(additional spending)로 인하여 주와 연방 기관은 많은 자원의 낭비와 남용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향후 낭비 및 남용 예방 프로

그램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Russell S. Sobel and Peter T. Leeson(2007)은 자연재난 후 한쪽 편에는 "구호 요구자들(relief demanders)"-절망적(desperately)으로 재해 구호 공급을 필요로 하는 개인(individuals), 음식, 피난처, 병원 치료 그리고 기타 등등을 포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구호 공급자들"(relief suppliers)-구호 요구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공급과 전문가의 의견(expertise) 등-이 있다. 효과적인 재해구호를 위해서는 3개의 긴요한 단계에서 효율적인 정보 발생이 요구된다고 한다. 첫 번째는 인정(recognition) 단계이다. 즉, 재난은 나타났(occur)는가? 얼마나 가혹(severe)한가? 그것은 구호를 필요로 하는가? 두 번째는 요구 평가(assessment)와 분배(allocation) 단계를 이다. 어떤 구호품이 요구되는가? 누가 그들에게 즉시 제공할 수 있는가? 어떤 지역들과 개인들이 그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가? 세 번째는 피드백(feedback)과 평가(evaluation) 단계이다. 재난구호 활동은 잘 되어(work)가고 있는가? 무엇이 수정(modification)을 필요로 하는가? 등이다. 효과적인 재해구호를 위해서는 구호 요구자들과 구호 공급자간의 정보 비대칭을 제거해야 하고, 정부는 재해구호의 3단계 시에 적절한 정보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Rajib Shaw and Katsuihciro Goda(2004)는 고베 지진이 일본 사회에 커다란 두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원봉사자와 NGO 활동의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간의 협력 증진이 되었다고 한다.

Jalali(2002)는 재해 발생 직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민간조직이나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들의 참여는 반드시 공공부문과 협력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구호활동과는 다른 영역, 즉 피해자들을 위한 권익옹호 및 정부활동에 견제세력으로서의 적대

적 관계에 놓일 수 있으며, 이점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4: 22).

재해의연금의 배분 체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재은·양기근(2006)에서는 미국·일본·독일·프랑스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재해의연금 모금 및 배분 체계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은 한국의 재해의연금 모금 및 배분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재해의연금 모금 및 지원은 민간의 시민사회 부문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금된 의연금에서 모집 경비 및 운영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 응급지원 내용으로부터 장기적인 재해복지 차원의 지원내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현재의 재해의연금을 통한 지원서비스가 주로 금전적이고 물질적 차원의 지원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보다 전문화하고 구체적이면서 장기적인 실용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김승권(2002)에서는 수재의연금 전달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연금 성격에 대한 인식 부족, 재해구호에 대한 시·도의 책임부족 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실제로 재해발생시 의연금으로 지원되는 사망자 위로금, 장기구호비 등은 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선 지원되고, 사후 의연금 등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이재민의 경우 국민의 의연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재원(2000)에 의하면, 재해 발생 이후 재원과 물자가 부족하기 보다는 이를 관리하고 이재민들에게 지원하는 구호 행정이 체계화되지 않아 기대되는 수준의 구호활동이 전개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구호품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구호품 지급 기준의 이원화, 현장중심 전산망 구축, 권역별 관리 체계 구축, 민간 구호 파트너십 구축, 중앙정부·언론·구호감사 협조 체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Paul(2006)은 개발도상국의 재해구호의 어려움과 특히 긴급원조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즉 이재민들은 극단적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외부 지원이 필요한데,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재민은 자국의 자원으로 충족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국제 원조 기관과 외국 및 비정부 조직(NGO)을 통한 해외 원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재해구호나 원조의 경우, 공공 물품 분배(public distribution)에 있어 광범위한 부패(corruption)나 대대적인 불법 행위(irregularities)들로 인해 모든 이재민들에게 균등(equally)하게 배분할 수 없게 되어, 구호 물품(relief goods)의 종류와 수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Thomas and Fritz(2006)에서는 기업 등이 구호물품을 기부하는 것보다 구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고 한다. 2006년 12월 26일 남아시아에서 지진과 해일이 발생한 후에 2주 내에 Sri Lanka의 Colombo 공항에는 물품이 쌓이기 시작하였으나, 공급 창고들을 막고 수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처럼 재난 발생 직후 기부 보다는 재난 구호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Morris(2003)에서는 재해이후 이재민으로 분류하고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모금된 재해 의연금품을 수혜자들에게 분류하여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음식, 의류, 그리고 의약품으로 이루어지는 구호물품의 양이 이재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1998년 Honduras에서 발생했던 허리케인 Mitch의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1998년 10월 중앙아메리카를 강타한 허리케인 Mitch는 5,657명의 사상자와 인구의 1/3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던 대규모 재난이었다. Morris는 재해의연금품 배분(allocation)을 위한 간단한 모델을 통해 재해구호품을 받을 확률은 부(wealth)보다는 재산적 손실(assets losses)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즉 이재민들이 살던 거처(dwelling)에 대한

피해로 고통 받는 것을 통제한다면, 제공받아야 할 의연금품의 양은 허리케인 Mitch 이전의 부(wealth)보다는 재산적 손실(assets losses)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Wodon & Yitzhaki(2002)에서는 개념상으로 재해 의연금품을 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원칙적으로 가난한 이재민 혹은 많은 피해로 고통 받는 이재민들을 구호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두 그룹은 전혀 같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피해의 정도는 전적으로 부(wealth)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표 3> 재해의연금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목적, 분석대상, 주요 내용
이재은·양기근 (2006)	·연구목적: 한국 재해의연금 모금 및 배분 체계 개선방향 제시 ·분석대상: 한국과 미국·일본·독일·프랑스의 재해의연금체계 ·주요내용: 미국·일본·독일·프랑스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의 재해의연금 모금 및 배분 체계의 개선방향 제시
김승권 (2002)	·연구목적: 수재의연금 전달체계 개선방안 모색 ·분석대상: 한국의 수재의연금 전달체계 ·주요내용: 수재의연금 전달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의연금 성격에 대한 인식부족, 재해구호에 대한 사·도의 책임부족 등
이재원 (2000)	·연구목적: 한국의 재해구호 행정체계의 개선방향 제시 ·분석대상: 한국의 재해구호 행정체계 ·주요내용: 재해발생 이후 재원과 물자가 부족하기 보다는 이를 관리하고 이재민들에게 지원하는 구호행정이 체계화되지 않아 기대되는 수준의 구호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음
Paul (2006)	·연구목적: 개발도상국 이재민 구호체계의 개선 ·분석대상: 개발도상국의 재해구호 및 긴급원조체계 ·주요내용: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난 발생 시 해외 구호품의 분배에 있어 부패와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해 이재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함
Thomas & Fritz (2006)	·연구목적: 재해구호 및 의연금체계 개선방안 모색 ·분석대상: 남아시아 지진 해일 사례 ·주요내용: 재난 발생 직후 민간단체들의 많은 기부 보다는 재난 구호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함
Morris (2003)	·연구목적: 재해의연금 모금 및 배분체계 개선방향 제시 ·분석대상: 허리케인 Mitch 사례 ·주요내용: 자연재난이후 이재민으로 분류하고 증하는 것은 가능하나 모금된 재해 의연금품을 수혜자들을 분류하여 전달하는 것이 어려움
Wodon & Yitzhaki (2002)	·연구목적: 재해의연금 체계의 개선 방안 모색 ·분석대상: 재해의연금 체계 ·주요내용: 피해의 정도는 전적으로 부(wealth)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재해 의연금품을 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가능.

제3장 의연금의 관리 및 운영 실태 분석

제1절 의연금의 법제도 현황 분석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 입법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장하는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1).

2) 주요내용

이 법에서는 재난의 개념에 자연재난과 에너지·통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동법§3 1.). 운영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

을 하도록 (동법§9) 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설치되던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주무부처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개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동법§14).

동법§22 및 §24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소방방재청장과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동법§30),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재정·금융 등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60 및 §61). 또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 안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동법§73).

국가는 국민이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한다(동법§76)는 규정을 두어 개인의 보험 가입에 대비한 국가적인 노력을 명문화 하였다.

3) 재난의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재난의 개념을 태풍·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붕괴·교통사고 등의 인적재난 및 에너지·통신 등의 사회적 재난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난의 개념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난과 재난

관리법상의 재난 및 에너지·통신·교통 등의 사회적 재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함에 따라서 종합적인 재해 및 재난 발생의 예방·구조 및 복구관리가 가능해 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4) 국고부담

동법 §66조①에서 국가는 재난관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필요한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기준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는 경우 재난의 범위를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모든 재난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며, 복합적 재난발생의 경우 국고 부담이 전문화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하는 재난의 범위를 일정범위의 재난, 즉 자연재난에 한정하는 등 국고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동법 §67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그 적립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이원적으로 적립·관리되는 재난관리법상의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기금의 적립목적과 사용용도가 서로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시정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조치로 판단된다.

다만, 기금의 적립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등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적립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는 일정한 적립요율의 범위를 정하고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요율적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의 필요성은 제기된다.

6) 재난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

동법§76①에서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련 보험·공제의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관련 보험제도 도입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요구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자발적인 재난예방 및 복구보다는 정부의 복구비지원에만 의존하려는 현상 등을 보완하여 국가와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재해위험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재해의 사전예방과 위험분산을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할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법 2001년 제정)의 경우 사과, 배등 6종의 품목에 대해 보험을 실시중이다. 2002년도의 경우 태풍 루사 등의 피해 당시 보험가입 18,620농가 중 37%인 6,953농가에 보험금 348억 원이 지급되어 재해를 입은 과수 농가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농가가 납부한 보험료 59억6,800만원에 비해 농가수령 보험금은 348억 원으로 보험사업자가 지급한 보험금이 농가부담보험료의 5.8배 수준으로

제도도입 초기부터 적자를 분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난형태를 고려하고 관련 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재난관련 보험제도의 도입초기에는 위험지역 보험료의 지원 등 각종 재정지원과 홍보등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재난보험 법률의 제정이나 관련 보험법률 개정 등 법률의 정비와 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재해구호법

비상 재해의 복구와 이재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62년 제정된 재해구호법은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재해구호법§1).

“이재민”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동법§2 1). “의연금품”이라 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 중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동법§2 5).

1)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동법§29④의 규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 위원회로 지정한다. 또한 배분위원회는 의연금품 배분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심의·의결한다(동법§25).

의연금품의 모집자는 의연금품 모집 완료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내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동법§26①), 모집자는 모집 비용 총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동법 §26②). 이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 지급과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용품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또한 주택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지원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동법§26④).

2) 벌칙규정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호를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34①8). 또한 동법§35 본문에서는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34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양벌규정을 두는 이유는 법인이 주체로서 행해지는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법률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종업원만을 처벌할 경우 위반행위의 예방과 재발 방지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사실상 법인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에 줄 경우에는 오히려 이를 방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4본문만으로 구성되었던 개정 전의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다. 개정(2008. 12. 26)된 양벌규정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양벌규정을 두는 취지에 비추어 법인 등의 면책가능성을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인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인 법인 등이 사실상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재해구호법 시행령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동법시행령§8①)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표 4>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구분	내용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2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3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 따른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사전 집행
5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특히 4호에서는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과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주택침수 및 세입자에 대한 보조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사전 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 등이 부담하는 금액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 부담률에 따라 사후에 정산토록 하고 있다.

3.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재난지원금

위 기술에서 지급되는 의연금의 지급대상은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동일하다. 재난지원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실종된 자나 부상자와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

원하는 금액을 말하며, “주생계수단”이라 함은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 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3).

중앙본부장(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민방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응급조치를 위하여 관계직원의 출동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물자 및 지정된 장비·인력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요청한다. 또한 이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9). 더불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시·도 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 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이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0).

이러한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를 제외하고 발생한 재난관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채민

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이재민의 구호, 중·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농림어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정부양곡의 무상지급,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66).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1).

2) 재난지원금 지원

재난지원금의 지원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와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또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재난지수”라 함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또한 “재난등급”이라 함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을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 한 것을 말한다(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3).

3) 지원대상

재난지원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4의 내용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와 주택복구를 위하여 지원된다.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에는 사망자·실종자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가 이루어지며, 주택이 유실·전파·반파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가 포함된다. 또한 주택이 유실·전파·반파된 세입자에 대한 보조도 이루어진다.

4) 재난복구비용의 부담기준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인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및 영농·영어·영림·양축(양축)·염생산 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과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주택복구,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어전과 어망·어구의 복구,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공공시설의 복구 및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 목적의 지원을 위한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하 “보통세등연평균액”)을 기준으로 한 시·군·구(자치구)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기준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14억원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20억원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26억원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6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32억원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구 : 38억원

이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군·구에 대하여 제4조제1항 제1호 및 동항 제2호 가목 내지 바목과 동항 제3호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5).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동법§6).

<표 5> 국고지원 제외 사항

구분	내용
1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 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 안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 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법 제36조·제40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 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중 피해(폭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

재난지원금의 부담률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비부담총액이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 제7조에 따른 국고추가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부담률을 국고 8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함은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중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특별교부세 등을 제외한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

도 및 시·군·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6> 지방자치단체별 부담금 비율

시·군·구의 최근3년 간 평균재정력지수	시 · 도	시 · 군 · 구
0.3 미만	50%	50%
0.3 이상 0.9 미만	40%	60%
0.9 이상	30%	70%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9①).

4.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

현재 의연금품 관리·운용은 소방방재청 훈령 제79호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의연금품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1), 의연금품의 모집 및 관리·운용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관장한다(동법§2).

의연금품은 이재민에 대한 의연금 지급과 의연금품 모집·배분·관리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된다(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4①1.3).

1) 사망·실종시 의연금의 지급

의연금의 지급은 재해로 인한 사망, 실종, 부상 또한 주택의 침수·파손의 경우 이루어지며, 재해로 인한 생계지원 대상 피해에 대하여도 이루어진다. 사망 또는 실종자의 유족에게는 세대주 사망·실종의 경우 1000만원, 세대원 사망·실종의 경우 500만원의 의연금이 지급된다.

재해로 인한 사망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본문의 내용에 따라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사망을 인정한다. 이 보고를 통해 즉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시체의 확인이 없이도 사망한 것으로 다루며, 이를 인정사망이라 칭한다.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이라 함은 사망의 증명은 없으나 사망의 확률이 대단히 높고 생존을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하며, 수해·화재를 비롯하여 전쟁·해난·탄광폭발·홍수·사태 등에도 같은 적용이 이루어진다. 인정사망을 인정하는 이유는 시체의 확인은 없지만, 고도의 사망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번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스위스 민법 등은 인정사망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실종선고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의 불비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부에 사망의 기재가 하게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6).

2) 사망·실종시 의연금 지급 대상

의연금은 유족에게 지급된다. 유족은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의 경우에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1000).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이 상속의 최우선순위가 되며 의연금 지급의 우선대상이 된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세대주 사망의 경우 직계 존·비속이 있을 때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의연금이 공동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이들이 없는 경우는 배우자에게 의연금이 지급된다.

3) 부상시 의연금 지급

세대주의 부상은 500만원, 세대원의 부상은 250만원의 의연금이 지급되며, 이때 부상의 판단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장해등급 7급 이상으로 한다.(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5①1.)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46). 장해 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이 있으며 이 중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에서 따르는 신체 장해등급 7급은 다음과 같다.

<표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신체장해등급 7등급

구분	내용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리스프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 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4	척추에 극도의 기능장애나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에 중증도의 기능장애나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애가 남은 사람

4) 주택의 침수 및 파손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주택이 전파한 때는 세대당 500만원의 의연금이 지급된다. “주택의 전파”란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택이 반파한 경우는 세대당 250만원의 의연금을 지급한다. “주택의 반파”란 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택이 침수된 경우에는 세대당 100만원의 의연금(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5① 2).

5) 생계지원대상 의연금 지급

재해로 인하여 생계지원 대상이 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세대별로 의연금이 지급된다. 국가는 재난관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치료 및 보상 보상금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①본문)는 규정에 의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에 관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를 받은 농가·어가·임가·염생산가에게 세대당 100만원의 의연금이 지급된다.

6) 소상공인에 대한 의연금 지급

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세대당 100만원의 의연금지급을 명시하고 있다(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5① 3).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어·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의 경우에

는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4).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및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5①). 이 규정에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5. 풍수해보험법

1) 풍수해보험의 도입 취지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의 지원은 과거 1960년대 생계구호의 차원에서 시작되어 매년 그 지원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원 금액만으로는 피해복구가 어려워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부는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이 농림어업분야에 한정적으로 운영되어 중소기업시설 등에서도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피해발생은 곧 국가의 지원으로 인식되어 자율적인 방재체계의 구축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덕적인 해이현상도 심화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풍수해로 인한 피해보상 보험으로는 화재보험의 풍수해위험담보특약이 있으나 영리목적의 민영보험회사의 특성상 거대손실을 우려한 보험사들이 적극적인 보험인수를 꺼리고 있어 가입률은 매우 저조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는 현행 피해지원제도의 대체·보완 효과가 미흡하다고 하겠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서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의 피해·지원제도를 보완하고,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 및 손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2) 주요 내용

풍수해 보험법은 자연재난 중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현행 피해 지원 제도를 보완·대체하는 풍수해 관련 정책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되 사업추진의 전문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등과 약정체결을 통하여 위탁운영토록 하고 손실보전준비금 제도를 운영하여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보험사업의 손실금을 보존토록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률 제고 등 보험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한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제작, 시설현황·피해이력 관련 통계집적 진산망 등을 유지·관리토록 함으로서 향후 대상 시설물의 확대 등에 대비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3) 풍수해의 정의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통칭한다. "자연재해"라 함은 상기 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가뭄·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풍수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풍수해보험법의 목적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풍수해보험법§1). 풍수해보험 사업은 소방방재청장이 관장하는 것으로 풍수해보험이 담보하는 목적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풍수해보험법§4).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2①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방재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은 자 또는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하게 할 수 있다(풍수해보험법§2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은 자”란 다음과 같다.

<표 8>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은 자

구분	내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자금의 대출 또는 국고·지방비의 지원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등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
4	축산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에서 받는 자금의 대출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6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8조에 따라 조성된 주거환경개선자금에서 주택개량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7	농어촌정비법 제4장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대출
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기업 진흥자금 및 산업기반자금의 대출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10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정책자금의 대출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대출

“대통령령을 정한 기간”이란 이상에 따른 자금의 대출을 받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대출기간과 보험목적물 존치기간 중 더 짧은 기간을 말한다.

또한 국고 또는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후 3년간을 기간으로 한다(풍수해보험법시행령§16).

5) 보험 목적물 시설규정

풍수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는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가 해당된다.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주택법§2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주택법§2 2.). 이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주택법 시행령§2①).

6) 국가 등의 재정지원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데(풍수해보험법§2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동법§7). 소방방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그 지원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보험료 지원 금액을 받으려는 보

험사업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시용계획·결산서를 소방방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4). 보험료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9> 보험료의 구성

구 분	위험보험료(A)	부가보험료(B)	영업보험료 (C=A+B)
개별계약	65%	35%	100%
단체계약 (단독주택)	70%	30%	100%

위험보험료란 향후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의미하며, 부가보험료는 보험사업자의 사업운영비와 사업수수료 개념의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는 총 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을 말한다.

보험료의 지원기준은 온실, 축사,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와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로 분류한다.

7)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풍수해보험법 §12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예측과 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보험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 보험으로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국가예산의 지원한도 등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높은 보험금액으로 가입한 주민과 낮은 보험금액으로 가입한 주민 간에 피해발생시 보험금 수령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예산의 지원한도 및 보험사업의 건전성, 재해 발생주이, 보험가입자의 가입금액 과다에 따른 지원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설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소방방재청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의 최소 한도로 현행 피해지원제도상 복구비 기준액(3,000만원)의 50%인 1,500만원부터 최대한도로 복구비 기준액의 90%인 2,700만원으로 한정하는 등 국가가 매년 시설물별로 별도 고시하는 복구공사 기준단가의 50~90% 범위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의 경우 복구비 기준액(3,000만원)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자치단체 지원분을 포함하여 기준액의 30%인 900만원 이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의 한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실질적 복구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하여 주민이 지급받는 보험금과 실제 소요되는 복구비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국가예산의 지원한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험가입금액의 한도가 설정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풍수해보험법 §25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과거의 풍수해 발생이력 및 발생위험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 위험정도를 지역별로 표시하는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피해발생의 위험율과 비례하는 것으로 풍수해보험 관리지도의 활용을 통해 지역별 보험료 세분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해저감사업 등의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풍수해보험관리지도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기간 동안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9) 지방자치단체의 전담부서 구성·운영

풍수해보험법 §3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법에 의한 풍수해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풍수해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일반 민영보험과는 달리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협조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을 비롯하여 보험 운영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작성 등의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므로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전담 부서를 구성·운영함에 있어서는 설치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신속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0) 풍수해보험제도와 피해지원제도와 관계

풍수해보험법 §34에서는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대상시설물의 재난복구사업에 대하여는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되,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그 지원규모를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의 경우, 이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재해복구비까지 지원받을 경우 이중수혜로 인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보험가입자는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그 지원규모를 축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를 축소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복구비 지원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절 과거 피해로 인한 의연금 지원 대상 및 현황 분석

1. 의연금 지원 현황

1) 지원기준

현행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 지원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중앙지원 대상자 중에서 소방방재청 훈령 제79호 의연금품 관리운영규정의 대상이 되는 이재민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실종한 사람의 유족, 부상자, 주택상의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하여 지원하며, 2006년도부터는 생계수단으로서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서 피해를 입은 세대 등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의연금 지원을 하도록 의연금품관리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제도화하였다.

이에 따른 지원 금액의 범위는 다음의 <표 10>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소방방재청 훈령 제79호에 의한 의연금품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이재민에 대하여는 지원을 100%로 의연금으로 하고 있으며, 인명 피해의 경우 인원수를 기준으로 사망자 및 실종자가 세대주가 되는 경우 10,000,000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세대원의 경우는 5,000,000원 이내로 하고 있다. 한편, 부상자의 경우는 세대주가 피해를 당한 경우 5,000,000원 이내, 세대원의 경우 2,500,000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기타 그 피해 대상이 주택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전파, 반파, 침수 주택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으나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경우, 농업, 어업, 임업, 소금생산업에 대해 세대당 1,000,000원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사업장에 대해 1,000,000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표 10> 의연금의 지원범위

(단위: 천원)

구분		단위		지원액	비고
인명피해 지원대상	사망자 및 실종자	인	세대주	10,000이내	100% 의연금으로 지급
			부상자	5,000이내	
	부상자	인	세대주	5,000이내	
			반파주택	2,500이내	
주택피해 지원대상	전파주택	세대		5,000이내	
	반파주택	세대		2,500이내	
	침수주택	세대		1,000이내	
생계지원 대상	농업/어업/임업 /소금생산업	세대		1,000이내	
	소상공인	세대		1,000이내	

2) 지원대상 및 절차

의연금의 지원대상은 인명 피해의 경우, 사망/실종자의 유족이라 함은 호적이나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하고 있으며, 부상자는 그 부상이 산업재해보상 보험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로 하고 있다.

주택 피해의 경우 전파, 반파, 침수 세대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건축의 필요성, 주택사용의 불가능, 침수 범위 등으로 피해를 조사하여 지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계지원의 경우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50% 이상 피해를 입은 세대 및 학자금이 면제되는 세대로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피해 세대를 함께 지급하고 있다. 생계지원의 경우 전자의 경우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과 관계

법령을 통해 그 피해 규모 등을 추정 지급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 사업장의 피해 규모를 작성 제출하여 이를 판단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이는 자연재난피해신고서의 작성 서식의 피해내역 작성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주택 피해 이외에 농업·임업·염생산시설(소금생산업), 수산시설, 어선, 가축·생물, 농·산림작물,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제외한 다른 생계수단의 경우 피해 조사 내역이 구체적이고 확인 점검이 가능한 내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 내용과 업태 외에 피해 물량을 신고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상 그 피해액을 추산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의연금의 지원은 시,군,구의 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의연금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배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재해구호법에 의거하여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확정된 결과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피해주민에게 개별 계좌로 재해의연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2. 최근 10년간 의연금 지급 총괄 현황

최근 10년간 의연금 지급의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2003년까지는 의연금을 법정구호비와 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며, 법정구호비의 경우 사망, 실종, 부상 및 장기구호(이재민 구호비), 생계보조, 생계지원의 항목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위로금은 사망, 실종, 부상, 주택전파, 주택반파, 주택침수, 연료비, 명절위로금, 월동대책비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이 밖에도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특별위로금

(47,725,400,000원) 및 강원도 산불피해(2,260,979,000원), 양양산불(721,350,000원), 대구지하철참사(67,014,074,984원), 서해안유류유출사고 피해(2,198,000원)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2006년도 추가지원과 2007년도 태풍 '나리' 피해에 대한 제주지역 등에 대한 추가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의연금의 지급이라 함은 전국재해구호협회로 모집된 국민의 성금만으로 이재민에게 지급된 금액으로, 해마다 크고 작은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크고 작은 자원봉사단체는 물론, 뜻있는 국민들이 직접 피해현장을 찾거나, 마음을 더해 전달하는 성금이 차지하는 금액 또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이재민들에게 전달되는 의연금의 총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이해해야 옳다.

<표 II> 년도별 의연금 지급 총괄 현황

(단위: 천원)

년도	의연금	특별위로금 또는 추가지원	법정구호비	합계
1999	31,923,660		15,051,320	46,974,980
2000	10,294,900	2,260,979	4,986,366	17,542,245
2001	27,577,280		3,666,758	31,244,038
2002	75,672,800	47,725,400	6,586,924	129,985,124
2003	69,955,320	92,889,481	8,826,631	171,671,432
2004	15,978,740	192,014	167,500	16,338,254
2005	10,542,540	721,350	580,000	11,843,890
2006	21,066,000	27,724,440		48,790,440
2007	18,242,000	12,956,600		30,838,600
2008	2,215,740	2,198,000		4,413,740
합계	283,468,980	186,308,264	39,865,499	509,642,743

* 모집경비 소요금액은 산입에서 제외함.

의연금 지급 금액의 경우 재난 피해의 규모에 따라 년도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지원 금액이 가장 높았으며, 2004년 이후 의연금으로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5년 의연금품관리운용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세부화 하였다.

한편, 의연금(2003년까지 위로금)의 지급은 인명피해, 주택피해,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인명피해에 대한 지급은 전체 의연금 지급 항목 중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연금 지급의 주된 지원 대상은 주택피해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도 기타 사항에는 2005년까지는 월동대책비, 명절위로금, 연료비 등에 대하여 산정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생계지원을 위하여 농업, 임업, 어업, 소금생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표 12> 년도별-피해유형별 의연금 지급 총괄 현황

(단위: 천원)

년도	의연금			합계
	인명피해	주택피해	기타	
1999	2,002,500	14,322,900	30,649,580	46,974,980
2000	1,442,500	7,476,300	8,623,445	17,542,245
2001	2,622,500	24,894,400	3,727,138	31,244,038
2002	5,927,500	46,178,700	77,878,924	129,985,124
2003	6,085,000	43,707,900	121,878,532	171,671,432
2004	357,500	5,619,000	10,361,754	16,338,254
2005	1,255,000	3,885,300	6,703,590	11,843,890
2006	617,500	11,502,500	36,670,440	48,790,440
2007	162,500	6,385,500	24,290,600	30,838,600
2008	90,000	1,348,500	2,975,240	4,413,740
합 계	20,562,500	165,321,000	323,759,243	509,642,743

* 2005년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 제정에 따라 기존 연료비, 월동, 명절위로금 등이 생계수단 피해 지원(생계지원)으로 변동됨. 이 규정 제정으로 기존 법정구호

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지원.

3. 최근 10년간 의연금 세부 지급 현황

최근 10년간 의연금의 년도별 시도별 의연금 지급 총괄 현황은 다음의 <표 13>과 같다. 2002년에서 2003년의 경우 태풍 '루사', '매미' 등 대규모의 자연재난이 연속적으로 전국에 걸쳐 피해를 입힘에 따라, 의연금의 지급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지출되었으며, 2008년의 경우 태안유류유출사고 발생에 따라 2차에 걸친 의연금 지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표 13> 시도별-년도별 의연금 지급 총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서울	2,201,305	180,061	21,034,431	5,405,819	3,290,658	32,780	10,800	1,846,500	9,000	50,000	33,971,351
부산	111,918	156,401	43,020	473,044	10,253,950	-	114,340	968,000	84,900	334,240	12,548,813
대구	112,980	80,157	566	247,310	70,221,362	204,294	-	257,250	21,250	-	71,146,135
인천	3,179,472	378,674	1,731,950	482,473	11,361,100	8,120	5,960	529,000	32,500	52,000	7,768,699
광주	261,644	478,729	283	680,817	116,424	1,318,240	298,340	7,250	-	2,000	3,114,027
대전	203,040	6,860	15,477	79,005	99,462	321,080	77,620	5,200	8,500	-	815,996
울산	5,610	31,917	283	100,822	3,099,053	15,280	68,920	273,780	-	478,900	4,074,135
경기	18,752,967	6,356,477	5,214,203	11,527,006	1,076,021	81,300	279,380	6,569,310	100,500	750,000	49,577,164
강원	2,556,390	2,379,165	697,180	65,575,367	7,411,628	526,660	952,270	24,043,540	217,000	12,000	104,871,310
충북	154,241	61,178	147,032	2,433,945	77,008	3,958,880	27,460	1,897,010	46,750	51,500	6,765,004
충남	2,472,138	1,626,004	521,587	1,113,188	330,515	5,092,260	1,073,280	458,000	1,411,760	1,162,000	15,260,702
전북	1,629,104	536,201	45,290	2,455,116	2,232,908	271,500	4,142,000	274,830	220,000	21,500	11,829,449
전남	7,901,436	3,010,445	801,489	24,339,452	7,073,267	2,934,180	3,178,660	1,853,500	4,110,700	1,046,000	56,049,130
경북	912,048	655,528	209,481	8,704,619	8,250,347	1,085,680	1,102,020	1,379,000	170,790	408,000	22,873,413
경남	3,113,010	1,252,695	748,776	15,986,189	53,451,090	87,640	470,680	5,318,500	270,790	36,000	82,735,280
제주	3,587,560	403,731	37,190	380,848	1,415,739	400,200	42,760	2,890,000	24,135,150	-	39,293,138
합계	46,974,980	17,542,245	31,244,038	129,985,124	171,671,432	16,338,254	11,843,890	48,790,440	30,838,600	4,413,740	509,642,743

의연금의 년도별 인명피해 유형에 따른 지급 현황은 다음의 <표 14>와 같다. 의연금의 지급은 사망·실종(10,000,000원), 부상(5,000,000원) 등에 대하여 세대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2004년부터는 2005년까지는

사망·실종의 세대주(20,000,000원)와 세대원(15,000,000원) 그리고 부상 세대주(10,000,000원)와 세대원(7,500,000원)을 각각 그 상한기준액을 구분 상향조정하여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06년 의연금품관리운용규정 개정으로 사망·실종 세대주는 10,000,000원, 세대원은 5,000,000원으로 부상 세대주는 5,000,000원, 세대원은 2,500,000원으로 상한액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표 14> 년도별-인명피해 유형별 의연금 지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의연금(인명피해지원)				합계
	사망/실종		부상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1999	2,002,500				2,002,500
2000	1,442,500				1,442,500
2001	2,622,500				2,622,500
2002	5,025,000		902,500		5,927,500
2003	2,565,000		3,520,000		6,085,000
2004	250,000		107,500		357,500
2005	970,000		285,000		1,255,000
2006	470,000	125,000	20,000	2,500	617,500
2007	110,000	30,000	10,000	12,500	162,500
2008	70,000	20,000	-	-	90,000

* 2001년까지는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과 부상에 대해서만 의연금 지급.

다음으로, 년도별로 주택피해 유형에 따른 의연금의 지급 현황은 다음 <표 15>와 같다. 주택피해에 대한 의연금 지급은 2005년까지 주택에 대한 피해를 기준으로 세대별로 지급하여 왔다. 즉, 주택전과, 주택반과, 주택침수에 따라 주택침수는 지원 기준액을 3,000,000원으로 주택반과는 1,500,000원, 주택침수는 600,000원을 기준액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2006년부터는 주택의 피해유형 중 주택전과와 주택반과의 경우 소유자와 세입자를 구분하여 주택전과 소유자의 경우 5,000,000원을 세입자의 경우

2,500,000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반파의 경우는 소유자의 경우 2,500,000원, 세입자의 경우 1,250,000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표 15> 년도별-주택피해유형별 의연금 지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의연금(주택피해지원)					합계
	주택전파		주택반파		주택침수	
	소유자	세입자	소유자	세입자		
1999	2,343,000		1,774,500		10,205,400	14,322,900
2000	444,000		676,500		6,355,800	7,476,300
2001	351,000		123,000		24,420,400	24,894,400
2002	10,167,000		6,031,500		29,980,200	46,178,700
2003	5,295,000		5,182,500		33,230,400	43,707,900
2004	531,000		336,000		4,752,000	5,619,000
2005	777,000		688,500		2,419,800	3,885,300
2006	2,170,000	287,500	1,427,500	107,500	7,510,000	11,502,500
2007	250,000	35,000	475,000	27,500	5,598,000	6,385,500
2008	125,000	5,000	67,500		1,151,000	1,348,500
합계	22,780,500		16,917,500		125,623,000	165,321,000

* 2001년의 경우 주택침수 지원에 대해 세대 외에 세입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원.

* 2006년 의연금품관리운용규정 개정으로 주택전파, 반파 피해에 대해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지원기준 금액을 차등 지급.

마지막으로, 년도별로 인명피해 및 주택피해 이외의 의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5년까지 생계지원을 위한 사업장 피해에 대하여는 법정구호비의 생계지원으로 지급하였으며, 의연금 중 위로금은 명절위로금, 월동대책비, 연료비로 지급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6년부터는 명절위로금, 월동대책비, 연료비의 지급 대신 생계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피해 이재민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표 16〉 년도별-기타 의연금 지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의연금(기타 지원)					합계
	명절위로금	월동대책비	연료비	농어업인	소상공인	
1999	9,240,000	3,482,400	3,738,360	-	-	16,460,760
2000	832,000	654,600	537,000	-	-	2,023,600
2001	538,000	322,800	307,080	-	-	1,167,880
2002	19,431,880		6,792,220	-	-	26,224,100
2003	17,451,200		5,396,220	-	-	22,847,420
2004	7,136,800		3,032,940	-	-	10,169,740
2005	4,435,200		1,547,040	-	-	5,982,240
2006	-	724,440	-	6,406,000	2,540,000	9,670,440
2007	-	-	-	7,756,000	3,938,000	11,694,000
2008	-	-	-	184,000	593,240	777,240
합계	64,249,320		21,350,860	14,346,000	7,071,240	107,017,420

* 2003년까지 생계지원은 법정구호비로 지급. 단, 의연금 이외 특별위로금으로 2002년 '루사' 피해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피해 사실 확인 후 별도 신청절차 없이 200만원씩 지급함.

제3절 일본의 의연금 지원 사례 분석

1. 재난 피해 조사 기준 및 방법

최근 일본의 의연금 지급에 대한 큰 변화는 없으며³⁾,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의연금의 지급 시 사전에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재난 피해에 대한 조사담당자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서, 수해, 지진, 건축 피해 정도에 대하여 수일 내에 조사를 실시한 뒤,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제도적 취지를 고수하고 있다(阿部 陽一郎,2009.03.12).

일본은 피해조사를 위하여 우선, 건축 설계사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일급 건축사가 재해 직후 주거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일급 건축사의 밑에는 2급 건축사와 일반건축사(목공소를 운영자)들을 둔다(阿部 陽一郎,2009.03.12). 다만, 이는 수해나 지진, 건축피해 조사 담당자의 자격에 한정되는 것으로 화재 피해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방관이 조사를 실시하거나 경찰관이 소방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일본은 재난에 의한 피해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자연재난의 경우에 건축사가 바로 투입되어 주거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그 1개월 후 행정기관이 화재의 경우에는 그것이 재해에 의한 화재라는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재해에 근거한 화재라는 점을 밝히는 근거는 투입된 소방관의 조사에 근거하고 있다.

지진이나 수해의 경우에는 건축전문가가 투입된 후 긴급 판단으로 3단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 적색 단계 판단의 경우, 주거 불가(피난 발령)를 의미하며, 2단계 황색 단계 판단은 주거 가능(여진 주

3) 일본의 의연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하여는 전국재해구호협회 2007년 「의연금의 효율적인 모집 및 배분방안 연구」를 참조.

의)이며, 3단계 청색 판단의 경우는 주거 가능으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다만, 이 판단에 근거한 행정 차원에서의 최종 판단은 건축 전문가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阿部 陽一郎, 2009.03.12).

또한, 주택 피해에 대한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택 피해를 전파, 반파, 침수로 구분하며, 다만, 지진의 경우 한국과 달리, 전파, 반파로 구분하지만 반파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일부 파괴'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다. 결국, 주택 피해의 경우 전파, 반파, 일부파괴의 3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부파괴의 경우에는 의연금의 많이 들어올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차이를 보인다.

2. 의연금에 대한 생계지원 방식

일본의 경우 의연금의 성격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는 점에서 위로금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기부금의 액수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정부에서 상해자 및 재해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지급되는데 이는 모든 피해자에 적용되는 성격을 가진다. 의연금은 재해 발생 후에 적십자사나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모금을 의미하고, 정부에서 지급되는 조위금은 재해 발생 직전에 이미 국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개념적 차이를 갖는다.

둘째, 생계지원은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은 정부가 은행이자의 반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 생계유지나 기업 재생을 위해 용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체납 또는 신용불량 등이 없어야 하는 특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장기 저리 용자제도를 적용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또한, 재해 발생 시에는 일정기간(최저 1년 기간) 동안은 세금 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 밖에 생계지원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지원방식으로 일반 국민에 대해서 주택재건에 한해서 정부가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 특징이 있다(阿部 陽一郎,2009.03.12).

한편, 일본은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의 공장이나 시설 피해에 대해 의연금으로 지급이나 지자체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현 제도 자체가 한신 대지진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도시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피해액이 어느 정도 최대화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측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한신 대지진의 경우를 참조하여 실제적으로 정부가 지자체 및 다른 공동모금 단체와 함께 재해 발생에 대비한 특별 적립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특정 지역에 재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적립금뿐만 아니라 46개의 지자체가 갖고 있는 적립금을 모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전적으로 신속한 지원과 위로금이라는 차원에서 재난 피해 대상의 경우 모두 지급한다(阿部 陽一郎,2009.03.12).

또한, 일본은 피해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즉,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①재해 조위금(재해사망자), ②재해장해위로금(상해), ③재해구호자금(개인주택이나 자영업자의 생산설비 재건 지원), ④피해자 생활재건 지원법(모든 재해대상자에 대한 주택재건 용도), ⑤부흥기금 등에 의한 주택재건 지원, 각종 융자제도(특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운영자에 대한 공장, 생산설비 지원 용도, 개인의 주택재건에도 활용)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일본에 있어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는 융자제도에 관한 경우로서, 형식상으로는 정부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경우, 은행에서는 융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반대로 은행에서도 융자를 해 줄 경우 정부 융자 대상자인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의

생산시설이나 생산설비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용자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지 의연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한다(阿部 陽一郎,2009.03.12). 즉, 기부금에 의한 의연금 중에서도 자영업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의연금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의 의무가 없고, 따라서 생산설비에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일본은 의연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부 용자제도가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의연금에 의한 지급으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는 아직까지 언급된 적이 없으며, 정부 지원금과 의연금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다. 의연금만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재해에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본의 경우, 인적피해와 주택피해를 기준으로 의연금을 지급하였으나, 한신 대지진 이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피해자생활재건지원법”에 두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는 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시 파괴된 주택을 치우는데 사용하는 정리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주택 파괴시 국가지원금의 용도가 주택정리 이외에 일정기간 생활용품의 구매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본이 지원금 용도를 파괴주택을 정리하는 데에만 한정하는 이유는 개인의 사유재산 지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고 엄격하기 때문이다(阿部 陽一郎,2009.03.12).

한편, 일본은 이재민을 위해 의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의연금 기부와 자원봉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연금은 어디까지나 위로금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실제로 의연금을 활용한 별도의 지원은 없다 할 수 있다(阿部 陽一郎,2009.03.12).

또한, 일본은 의연금에 대한 적립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혜 대상자에 대한 의연금 지급이 있으나, 액수의 규모는 다를 수도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 의연금을 전적으로 위로금의 성격으로 판단하는데 있다.

다만, 일본 후쿠이현의 경우, 이재민에 대한 의연금의 지급 방식에 있어, 최근까지는 현금을 균등하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지만, 피해자의 Needs가 다 틀리고,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볼런티어 활동이나 그런 물품으로도 전달을 하고 있다. 다만, 필요 물건을 전달한다던가, 볼런티어 활동을 다 해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와 별개로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다(鷹尾大英,2009.03.13). 이는 프랑스가 현금지원 방식을 배제하고 기부금의 비용을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구별된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는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Luc Guittet,2009.02.06).

제4절 소상공인 생계지원 및 주택침수에 대한 지원액 현황 분석

1. 소상공인 피해조사의 어려움과 조사 대상

재해로 인한 생계지원 대상 피해에 대한 의연금의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를 받은 농가, 어가, 임가, 염생산가 등에 대한 의연금 지급과 소상공인의 피해로 인한 의연금 지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에서 농가·어가·임가·염생산가 등에 대한 의연금 지급을 위한 피해조사는 비교적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피해조사는 농가, 어가, 임가, 염생산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비교적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조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다만, 재해복구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장, 광산, 시장 등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및 확인이 이루어질 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소상공인 생계지원에 대한 의연금 지급은 피해 금액에 따라 의연금 지원 금액이 달라지지 않고, 일정한 (침수)피해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즉 소상공인이 신고한 피해액이 곧 의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재난피해로 입은 이재민에 대한 고통분담과 위로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내는 의연금이 소상공인의 양심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연금의 의미를 살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제조업체는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피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피해조사는 소상공인의 업종별 유형보다는 피해대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인적 피해, 물적 피해, 기타 무형의 피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 피해의 경우에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피해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또한 무형의 피해는 종류도 다양하고 그 피해액을 정확하게 책정하기 어려우므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물적 피해 중에서도 유체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적 피해는 피해액 책정이 까다롭고 책정 과정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피해액 조사 대상은 유체물로서 건물(부속물과 부착물 포함), 부대설비, 구축물, 시설, 선박·항공기·차량 등 운반구, 기계장치, 공구 및 기구, 집기비품, 가재도구, 재고자산(원재료, 부재료, 제품, 반제품, 상품, 저장품, 부산물 등) 등이 해당된다.

2. 주택 침수에 대한 지원 현황 분석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재해의연금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2000년 법정구호비와 위로금 포함, 구호물품 구입비 및 파주 구호 물품

창고부지 구입비 등으로 재해의연금이 전국에 지원되었다. 이후 2001년에는 2000년도와 비교해서 78.1% 증가한 312억 여원이 가뭄피해 및 호우피해를 당한 이재민에게 지원되었다. 그 이후 2002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316%이상 증가한 재해의연금이 지원되었는데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약 590억원 특별위로금으로 지원되었고 특별재해지역 특별위로금으로 약 430억 원이 특별재해지역의 이재민들에게 지원되었다. 2003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32.1% 증가한 1720억 원 가까운 금액이 재해의연금으로 지원되었는데 우선 그 해에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사건이 발생해서 약 670억 원이 대구지하철화재 성금으로 지원되었고 기타 태풍 '소텔로'로 인한 피해, 태풍 '매미'로 인한 농가 피해 등으로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통계치의 가장 큰 액수인 약 1720억 원 가량이 재해의연금으로 지원되었다.

<표 17> 연도별 재해의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재해의연금	증감비율(%)
2000	17,542,245	
2001	31,244,038	78.1
2002	129,985,124	316.0
2003	171,671,432	32.1
2004	16,338,254	-90.5
2005	11,843,890	-27.5
2006	48,790,440	311.9
2007	30,838,600	-36.8
2008	4,413,740	-85.7

그 이후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의연금이 대폭 감소되었고 2006년도에 강원도에 호우 및 강풍피해로 인해 약 488억 원이 재해의연금으로 지원되었고 2007년도에는 태풍 '나리'로 인해서 약 308억 원이 재해의연금으로 지원되었다. 2008년도에는 서해안 원유유출사고 인해 전남 8개 지역에 2차례로 나누어서 총 21억 9천 8백만 원이 지급되는 등 총 44억 여원 정도가 재해의연금으로 지원되었다.

<표 18> 연도별 재해 의연금 중 수해피해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재해의연금	수해피해 지원액	기타피해 지원액
2000	17,542,245	15,281,266	산불피해:2,260,979
2001	31,244,038	30,207,552	한해피해:1,036,486
2002	129,985,124	129,985,124	
2003	1,711,671,432	104,849,371	대구지하철화재 참사지원:66,822,061
2004	16,338,254	6,536,560	대구지하철화재 참사지원:192,014 폭설피해:9,609,680
2005	11,843,890	6,083,280	폭설피해:5,039,260 산불피해:721,350
2006	48,790,440	48,790,440	
2007	30,838,600	30,838,600	
2008	4,413,740	2,215,740	서해안 원유유출 지원:2,198,000
합계	462,667,763	374,787,933	87,879,830

*2001년 한해피해 지원액중 시도를 통해 지원한 1,036,486천원만 포함되어 있음

*농림부(10,000,000천원)에 물품구입(310,476천원)을 통한 지원액 10,310,476천원은 제외되어 있음

<표 19> 재해의연금 중 생계지원과 주택침수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재해의연금	생계지원		주택침수		합계 (생계지원+주택침수)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2000	17,542,245	3,983,829	22.7	6,355,800	36.2	10,339,629
2001	31,244,038	2,319,123	7.4	24,420,400	78.2	26,739,523
2002	129,985,124	16,632	0.0	29,980,200	23.1	29,996,832
2003	171,671,432	928,352	0.5	33,230,400	19.4	34,158,752
2004	16,338,254		0.0	4,752,000	29.1	4,752,000
2005	11,843,890		0.0	2,419,800	20.4	2,419,800
2006	48,790,440	8,946,000	18.3	7,510,000	15.4	16,456,000
2007	30,838,600	11,694,000	37.9	5,598,000	18.2	17,292,000
2008	4,413,740	777,240	17.6	1,151,000	26.1	1,928,240
합계	462,667,763	28,665,176	6.2	115,417,600	24.9	144,082,776

재해의연금 중에서 수해피해 지원액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2000년도 총 재해의연금 약 175억 지원에서 수해피해 지원액으로 152억 여원이 지원되었고 산불피해로 약 22억 원이 지급되었다. 기타피해로 나머지의 금액이 지원되었다. 2001년도에는 총 312억 여원의 재해의연금 중에서 약 302억 원이 수해피해 지원액으로 지원되었고 나머지 한해피해, 기타피해 등으로 해서 약 10억 원이 지급되었다.

2002년도에는 약 1300억 원의 재해의연금 지원액 중에서 1300억 여원이 수해피해 지원금으로 지원되었는데 전체 재해의연금 중에서 약 9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후 2004년도부터 2008년도 까지 총 재해의연금 중에서 수해피해 지원액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유는 총 의연금 중에서 재해피해 지원 금액 중에서 수해피해 지원 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20> 재해의연금 중 생계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재해의연금	생계지원액	비율(%)
2000	17,542,245	3,983,829	22.7
2001	31,244,038	2,319,123	7.4
2002	129,985,124	16,632	0.0
2003	171,671,432	928,352	0.5
2004	16,338,254		0.0
2005	11,843,890		0.0
2006	48,790,440	8,946,000	18.3
2007	30,838,600	11,694,000	37.9
2008	4,413,740	777,240	17.6
합계	462,667,763	28,665,176	6.2

재해의연금에서 생계지원액을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0년도에 약 175억 원에서 생계지원액으로 약 40억 원이 지원되었고 총 재해의연금의 22.7%의 비율로 지원되었다. 2001년도에는 약 312억 원에서 23억 원 정도로 생계지원액이 지원되었는데 비율로는 전체 의연금 중에서 7.4%가 지원되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전체 재해의연금의 1% 미만으로 생계지원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약 488억 원의 재해의연금 중에서 약 90억 원이 생계지원 금액으로 지원되었다. 2007년도에는 생계지원액으로 재해의연금 약 308억 원 중에서 약 117억 원이 지원되었다. 이 가운데 생계지원액이 전체 의연금 지원 금액의 37.9%의 비율로 지원되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전체 재해의연금 약 44억 원 중에서 17.6%에 해당하는 7억7천여만원이 생계지원으로 지급되었다.

<표 21> 재해의연금중 주택침수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재해의연금	주택침수지원액	비율(%)
2000	17,542,245	6,355,800	36.2
2001	31,244,038	24,420,400	78.2
2002	129,985,124	29,980,200	23.1
2003	171,671,432	33,230,400	19.4
2004	16,338,254	4,752,000	29.1
2005	11,843,890	2,419,800	20.4
2006	48,790,440	7,510,000	15.4
2007	30,838,600	5,598,000	18.2
2008	4,413,740	1,151,000	26.1
합계	462,667,763	115,417,600	24.9

재해의연금 중에서 주택침수지원액은 위로금에서 지원되는데 우선 전체 재해의연금 중에서 주택침수지원액이 얼마나 지원되었는가를 살펴보면, 2000년도에 약 175억원의 재해의연금 중에서 36.2%에 해당하는 63억 5천여만원이 주택침수지원액으로 지원되었다. 2001년도에는 전체 재해의연금 지원액에 78.2%인 약 244억원이 주택침수지원액으로 지원되었고 2002년도에는 약 4분의1 규모인 약 332억원이 주택침수 지원금액으로 지원되었다. 2003년도에는 전체 1716억원의 재해의연금 규모 중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약 332억원 정도의 금액이 주택침수지원액으로 지원되었다. 또한, 2004년도 29.1%, 2005년 20.4% 규모의 의연금이 주택침수지원금으로 지원되었다. 이후 2006년도에 와서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전체 의연금 규모의 약 15.4%에 해당하는 7억5천1백만원이 주택침수지원액으로 지원되었다. 2007년도에는 전체 의연금 규모의 약 18.2% 해당하는 56억여원이 지원되었고 마지막으로 2008년도에는 전체 의연금의 26.1%인 약 11억원

이 주택침수 지원액으로 지원되었다.

<표 22> 연도별 재해의연금중 법정구호비와 위로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의연금 지원총액	법정구호비		위 로 금		합 계 (법정구호비+ 위로금)
		금액	비율(%)	금액(특별위 로금 제외)	비율(%)	
2000	17,542,245	4,986,366	28.4	10,294,900	58.7	15,281,266
2001	31,244,038	3,666,758	11.7	27,577,280	88.3	31,244,038
2002	129,985,124	6,586,924	5.1	75,672,800	58.2	82,259,724
2003	171,671,432	8,826,631	5.1	69,955,320	40.7	78,781,951
2004	16,338,254	167,500	1.0	15,978,740	97.8	16,146,240
2005	11,843,890	580,000	4.9	10,542,540	89.0	11,122,540
2006	48,790,440	-	-	-	-	-
2007	30,838,600	-	-	-	-	-
2008	4,413,740	-	-	-	-	-
합계	462,667,763	24,814,179	5.4	210,021,580	45.4	234,835,759

재해의연금은 2005년까지 크게 나누어서 법정구호비와 위로금으로 구분되어 지원되다가 2006년 이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의연금으로 지원되었다. 이밖에도 특별위로금이나 기타 지원금액으로 합산해서 전체 재해의연금으로 총 지원되었다.

2000년도는 법정구호비가 49억 8천여만원이 지원되었고 위로금은 약 102억원 정도 지원이 되어서 법정구호비와 위로금을 합쳐 152억 8천여만원이 지원되었다.

2001년도에는 36억 6천여만원이 법정구호비로 지원이 되었고 275억원 정도의 위로금이 지원되어 총 312억원이 지원되었다.

2002년도에는 법정구호비와 위로금을 합쳐서 822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법정구호비가 88억 2천6백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위로금으로는 약 700억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합쳐 약 788억원이 지원이 되었다.

2004년도에는 법정구호비와 위로금을 합쳐 161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법정구호비와 위로금액을 합쳐 63억원이 지원되었다. 이후 2006년부터는 의연금으로 통합하여 2006년에 약 488억원이, 2007년에는 308억여원이, 그리고 2008년도에는 44억여원이 지원되었다.

<표 23> 연도별 주택피해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주택침수		주택전파		주택반파		합 계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2000	6,355,800	85.0	444,000	5.9	676,500	9.0	7,476,300
2001	24,420,400	98.1	351,000	1.4	123,000	0.5	24,894,400
2002	29,980,200	64.9	10,167,000	22.0	6,031,500	13.1	46,178,700
2003	33,230,400	76.0	5,295,000	12.1	5,182,500	11.9	43,707,900
2004	4,752,000	84.6	531,000	9.5	336,000	6.0	5,619,000
2005	2,419,800	62.3	777,000	20.0	688,500	17.7	3,885,300
2006	7,510,000	65.3	2,457,500	21.4	1,535,000	13.3	11,502,500
2007	5,598,000	87.7	285,000	4.5	502,500	7.9	6,385,500
2008	1,151,000	85.4	130,000	9.6	67,500	5.0	1,348,500

재해의연금의 위로금 중에서 주택에 피해정도에 따라서 주택침수, 주택전파, 주택반파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주택피해의 대부분이 주택침수로 인해 지원액이 나가기 때문에 주택침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2000년도에 주택침수로 지원되는 금액은 약 63억원으로 주택피해 지원금액 중에서는 8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2001년도와 2002년도에도 주택침수가 전체 주택피해 지원 금액의 98%, 64.9%로 차지하고 있어 주택침수로 인한 지원액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2003년도에는 전체 주택피해로 인한 지원 금액의 76%에 해당하는 332억원이 주택침수의 지원금액으로 지원되었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주택피해로 나가는 지원액의 대부분을 주택침수지원액으로 지원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4장 의연금 지원 체계에 관한 실증분석

제1절 조사의 설계

1. 조사내용

본 설문조사는 의연금 지원 체계에 대한 공무원, 기탁자 및 일반 시민, 이재민 등의 의견을 수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연금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의 획득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연금 지원 체계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조사내용은 의연금의 사용과 의연금의 지급범위 및 기준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의연금의 ①사용처에 대한 인식, ②사용 용도, ③의연금의 지원시 고려사항, ④소상공인 등의 생산 수단 및 시설에 대한 지원 방법, ⑤이재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연계 필요성, ⑥의연금 지원방식의 다양화 등을 설문하였다. 다음으로 의연금의 지급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①의연금 지급 금액의 부족시 대안, ②일부 소규모 지역 재난 발생시 의연금 지원 등을 설문하였다.

2. 조사방법

1) 기본 방향

본 조사는 의연금 지원 제도에 대한 의연금 사용에 대한 인식과 의연금

지급 범위 및 기준 등을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의연금의 성격에 맞는 합리적인 의연금 배분 원칙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혜자 중심의 효율적인 이재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의 기본 방향은 의연금 관련 담당 공무원, 기탁자 및 일반 시민,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의연금 지원 제도에 대하여 설문하고, 그 결과를 수집하는데 두었다. 이와 같은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1차 자료의 수집은 의연금 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의 대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일 현재 의연금 관련 담당 공무원, 의연금 기탁자 및 일반 시민, 의연금 수혜자인 이재민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규격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우편 및 현장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3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또한, 우편 조사의 특성상 낮은 회수율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회수율이 높았던 것은 의연금 지원 지도에 대한 관련공무원들의 관심이 높았고 특히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조사자료의 분석에 활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 12.0이며, 기법으로는 기술적 통계분석을 통해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의연금 관리 운영에 대한 공무원, 일반 시민, 재해지역 주민의 인식 분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재해지역 주민 및 일반시민

<표 24> 재해지역 주민 및 일반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재해지역		일반시민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체		162	100.0	235	100.0
성별	남	94	58.0	111	47.2
	여	68	42.0	124	52.8
연령	20대	3	1.9	91	38.7
	30대	42	25.9	64	27.2
	40대	34	21.0	55	23.4
	50대	61	37.7	22	9.4
	60대이상	22	13.6	3	1.3
학력	초졸이하	12	7.4	1	0.4
	중졸	46	28.4	2	0.9
	고졸	78	48.1	51	21.7
	대학중퇴이상	26	16.0	181	77.0
연소득	3000만원이하	71	43.8	159	67.7
	3000만원이상-4000만원이하	64	39.5	26	11.1
	4000만원이상-5000만원이하	18	11.1	24	10.2
	5000만원이상-6000만원이하	7	4.3	13	5.5
	6000만원이상	2	1.2	13	5.5

구분		재해지역		일반시민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체		162	100.0	235	100.0
세대주 와의관 계	세대주본인	86	53.1	99	42.1
	배우자	48	29.6	43	18.3
	부모	9	5.6	0	0.0
	형제자매	3	1.9	1	0.4
	자녀	14	8.6	92	39.1
	기타	2	1.2	0	0.0
직업	회사원	16	9.9	79	33.6
	공무원	6	3.7	38	16.2
	자영업	27	16.7	14	6.0
	농축수산업	64	39.5	0	0.0
	전문직	4	2.5	28	11.9
	주부	25	15.4	14	6.0
	학생	0	0.0	46	19.6
	단순노무	9	5.6	4	1.7
	무직	5	3.1	4	1.7
	기타	6	3.7	8	3.4

2) 공무원

<표 25> 공무원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공무원	
		빈도	백분율
전체		156	100.0
성별	남	104	66.7
	여	52	33.3
연령	20대	13	8.3
	30대	48	30.8
	40대	63	40.4
	50대	31	19.9
	60대이상	1	0.6
학력	고졸이하	16	10.3
	대졸	118	75.6
	석사	21	13.5
	박사	1	0.6
연소득	3000만원이하	43	27.6
	3000-4000만원	58	37.2
	4000-5000만원	39	25.0
	5000-6000만원	12	7.7
	6000만원이상	4	2.6
직급	8-9급	46	29.5
	6-7급	92	59.0
	5급	14	9.0
	4급이상	4	2.6
근무년수	1-2년	13	8.3
	3-5년	26	16.7
	6-9년	12	7.7
	10년이상	105	67.3
재해구호업무 근무년수	1년미만	89	57.1
	1-2년	58	37.2
	3-4년	4	2.6
	5년이상	5	3.2

2. 의연금의 사용

1) 의연금 지원에 대한 이주민 만족도(이주민 대상)

이주민을 대상으로 의연금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생계 안정 만족도는 약간 도움이 되었다가 3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8.4%로 나타났다. 이를 생계안정 만족도를 지수화 한 결과 3.32로 나타났다.

<표 26> 의연금 지급에 대한 이주민의 생계안정 만족도

문항	구분	전혀도 움되지 않음	별로도 움되지 않음	보통이 다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만족도
생계 안정	빈도	10	28	46	56	22	162	3.32
	백분율	6.2%	17.3%	28.4%	34.6%	13.6%	100.0 %	

정신적 안정 만족도는 약간 도움이 된다가 3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4.6%로 나타났다. 정신적 안정 만족도를 지수화 한 결과 3.34로 나타났다.

<표 27> 의연금 지급에 대한 이주민의 정신적 안정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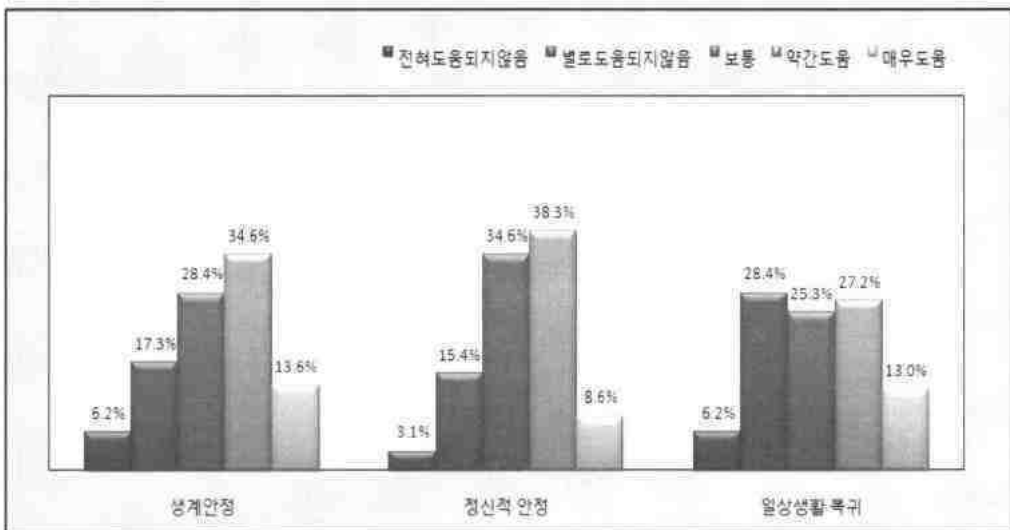
문항	구분	전혀도 움되지 않음	별로도 움되지 않음	보통이 다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만족도
정신적 안정	빈도	5	25	56	62	14	162	3.34
	백분율	3.1%	15.4%	34.6%	38.3%	8.6%	100.0 %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복귀 만족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2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도움이 된다가 27.2%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복귀 만족도를 지수화 한 결과 3.12로 나타났다.

<표 28> 의연금 지급에 대한 이재민의 일상생활 복귀 만족도

문항	구분	전혀도 움되지 않음	별로도 움되지 않음	보통이 다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만족 도
일상생 활 복귀	빈도	10	46	41	44	21	162	3.12
	백분율	6.2%	28.4%	25.3%	27.2%	13.0%	100.0 %	

의연금 지원에 대한 이재민 만족도를 분석해 본 결과 일상생활 복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의연금 지급에 대한 이재민의 만족도

2) 의연금에 대한 인식도(일반시민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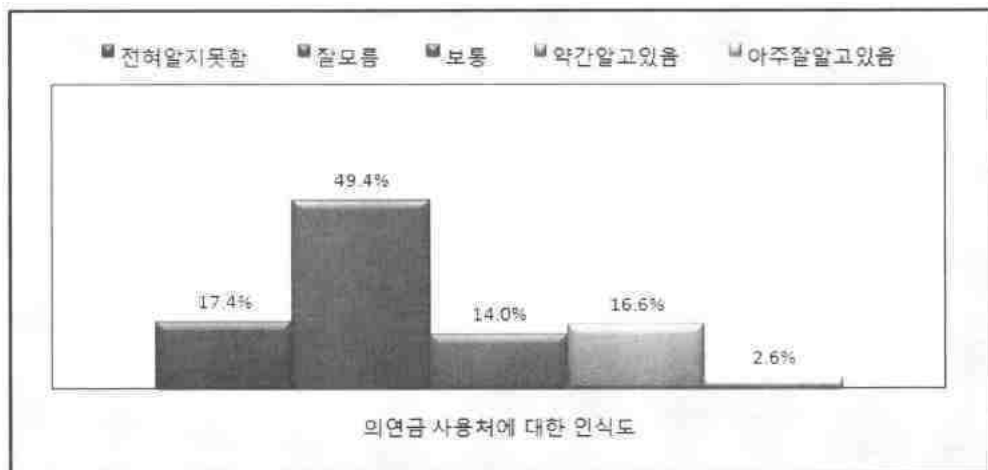
기탁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재해의연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의연금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잘 모른다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가 17.4%로 나타났다.

의연금에 대한 인식도를 지수화 한 결과 2.37로 기탁자와 일반시민의 의연금 인식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기탁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재해의연금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 일반 시민의 의연금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알지 못한다	잘모른다	보통이다	약간 알고있다	아주잘 알고있다	전체	인식도
빈도	41	116	33	39	6	235	2.37
백분율	17.4%	49.4%	14.0%	16.6%	2.6%	100.0%	



<그림 2> 일반시민의 의연금 사용처에 대한 인식

3) 의연금의 사용용도

(1) 일반시민 및 재난지역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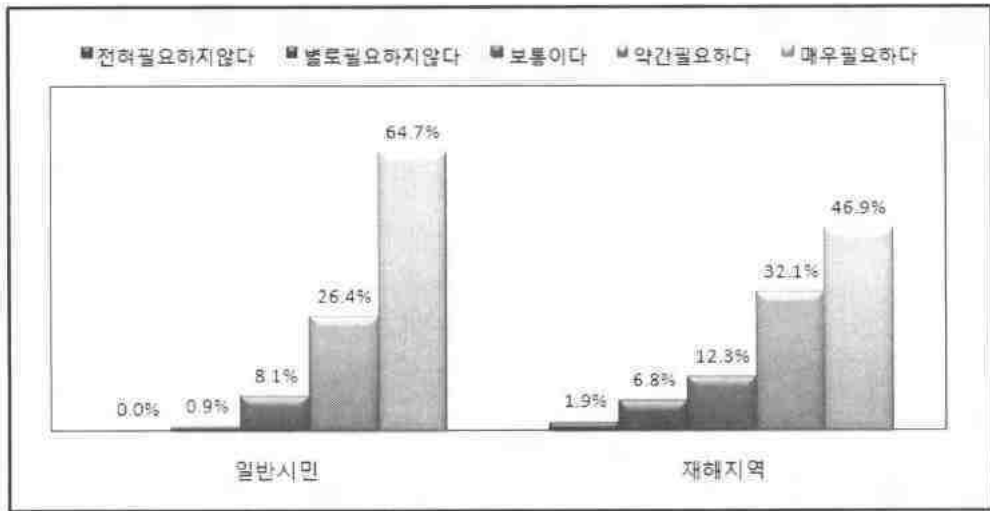
일반시민 및 재난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이재민을 위한 긴급자금지원

의연금을 이재민을 위한 긴급자금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일반시민과 재해지역 주민 모두 매우필요하다(일반시민 64.7%, 재해지역 주민 46.9%)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일반시민 26.4%, 재해지역주민 32.1%)로 나타났다.

<표 30> 의연금의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인식 분석

집단	구분	전혀필요하지 않다	별로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전체
일반시민	빈도	0	2	19	62	152	235
	백분율	0.0%	0.9%	8.1%	26.4%	64.7%	100.0%
재해지역	빈도	3	11	20	52	76	162
	백분율	1.9%	6.8%	12.3%	32.1%	46.9%	100.0%



<그림 3>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인식(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

의연금을 이재민을 위한 긴급자금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4.55, 재해지역 주민은 4.15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민 간 긴급자금지원으로 사용에 대한 평균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민을 위한 긴급자금지원으로 의연금을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일반시민들이 재해지역주민들 보다 더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1> 의연금의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인식 t-test

구분	N	Mean	t-value
일반시민	235	4.55	4.352***
재해지역	162	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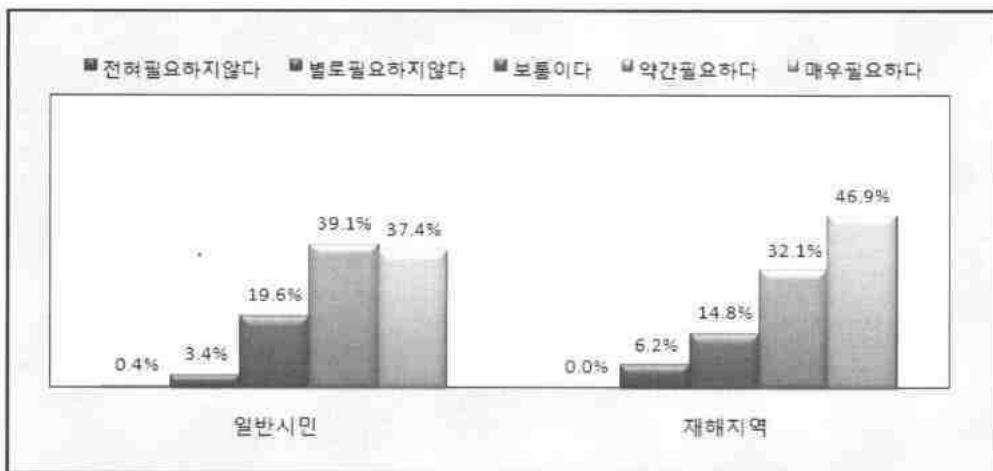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나. 이재민을 위한 중·장기적 복구 사업 지원

의연금을 이재민을 위한 중·장기적 복구 사업 지원으로 사용해야 하다는 것에 대해 일반시민은 약간 필요하다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37.4%로 나타났다. 재해지역주민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가 4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가 32.1%로 나타났다.

<표 32> 중장기 복구지원 사용에 대한 인식분석

집단	구분	전혀필요하지 않다	별로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전체
일반시민	빈도	1	8	46	92	88	235
	백분율	0.4%	3.4%	19.6%	39.1%	37.4%	100.0%
재해지역	빈도	0	10	24	52	76	162
	백분율	0.0%	6.2%	14.8%	32.1%	46.9%	100.0%



<그림 4> 중장기 복구지원 사용에 대한 인식(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

의연금을 이재민을 위한 중·장기적 복구 사업 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4.10, 재해지역 주민은 4.20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민 간 이재민을 위한 중·장기적 복구 사업 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민을 위한 중·장기적 복구 사업 지원으로 의연금을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민 모두 같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 할 수 있다.

<표 33> 중장기 복구지원 사용 대한 t-test

구분	N	Mean	t-value
일반시민	235	4.10	-1.108
재해지역	162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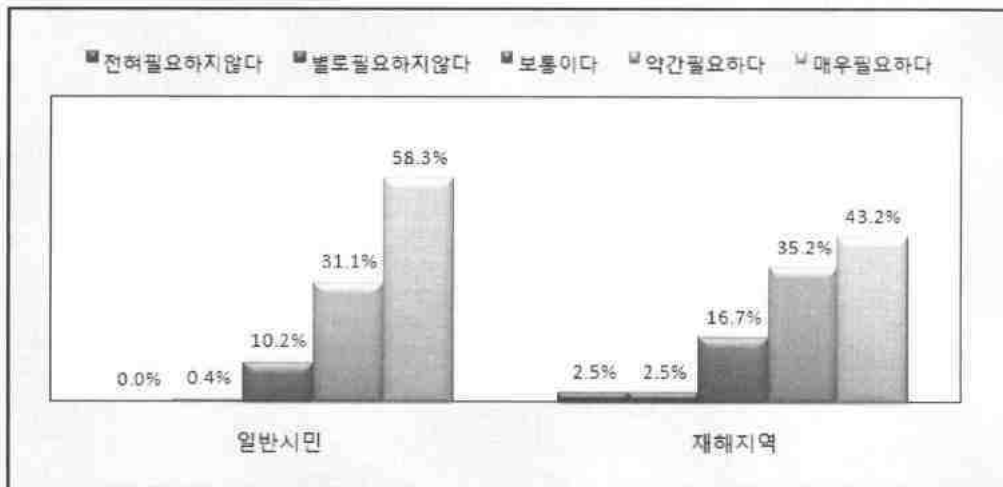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다. 이재민 중 소외계층 추가지원

의연금을 이재민 중 소외계층 추가 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민 모두 매우 필요하다(일반시민 58.3%, 재해지역주민 43.2%)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약간 필요하다(일반시민 31.1%, 재해지역주민 35.2%)로 나타났다.

<표 34> 소외계층 추가 지원에 대한 인식분석

집단	구분	전혀필요 하지않다	별로필요 하지않다	보통이다	약간필요 하다	매우필요 하다	전체
일반시민	빈도	0	1	24	73	137	235
	백분율	0.0%	0.4%	10.2%	31.1%	58.3%	100.0%
재해지역	빈도	4	4	27	57	70	162
	백분율	2.5%	2.5%	16.7%	35.2%	43.2%	100.0%



<그림 5> 소외계층 추가 지원에 대한 인식(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

의연금을 이재민 중 소외계층 추가 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4.47, 재해지역 주민은 4.14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민 간 이재민 중 소외계층 추가 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두 집단 간에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외계층 추가 지원으로 의연금을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일반시민

이 재해지역주민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5> 소외계층 추가 지원에 대한 t-test

구분	N	Mean	t-value
일반시민	235	4.47	3.781***
재해지역	162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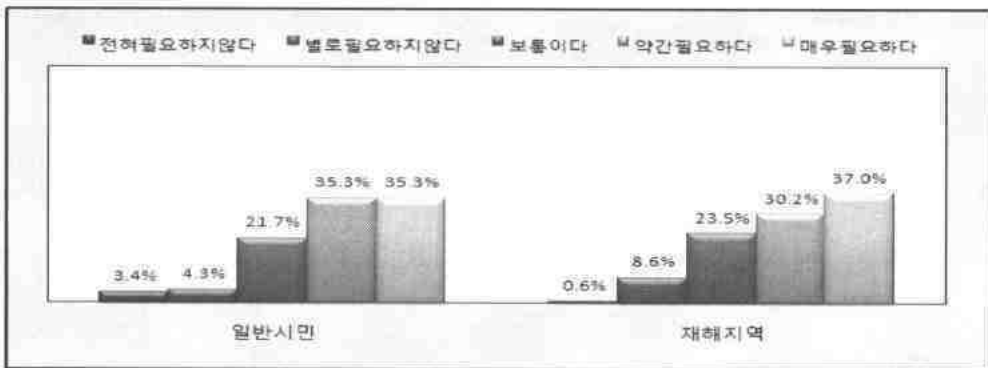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라. 재해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단체 지원

의연금을 재해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단체 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일반시민은 매우 필요하다와 약간 필요하다가 모두 35.3%로 가장 많았으며, 재해지역주민은 매우 필요하다가 37.0%, 약간 필요하다가 30.2%로 나타났다.

<표 36> 봉사활동 단체 지원에 대한 인식분석

집단	구분	전혀필 요하지 않다	별로필 요하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필 요하다	매우필 요하다	전체
일반시 민	빈도	8	10	51	83	83	235
	백분율	3.4%	4.3%	21.7%	35.3%	35.3%	100.0%
재해지 역	빈도	1	14	38	49	60	162
	백분율	0.6%	8.6%	23.5%	30.2%	37.0%	100.0%



<그림 6> 봉사활동 단체 지원에 대한 인식(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

의연금을 재해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단체 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3.95, 재해지역 주민은 3.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재해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단체 지원에 대한 일반시민과 재해지역 주민간 평균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두 집단 간에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해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단체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일반시민과 재해지역 주민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7> 봉사활동 단체 지원에 대한 t-test

구분	N	Mean	t-value
일반시민	235	3.95	0.043
재해지역	162	3.94	

* p<.05, ** p<.01, *** p<.001

이와 같이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일반시민은 이재민을 위한 긴급자금지원과 이재민 중 소외계층 추가지원을 위해 의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재해지역주민의 경우는 이재민을 위한 중·장기적 복구사업 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이재민을 위한 긴급자금지원, 이재민 중 소외계층 추가지원으로 나타났다.

(2) 공무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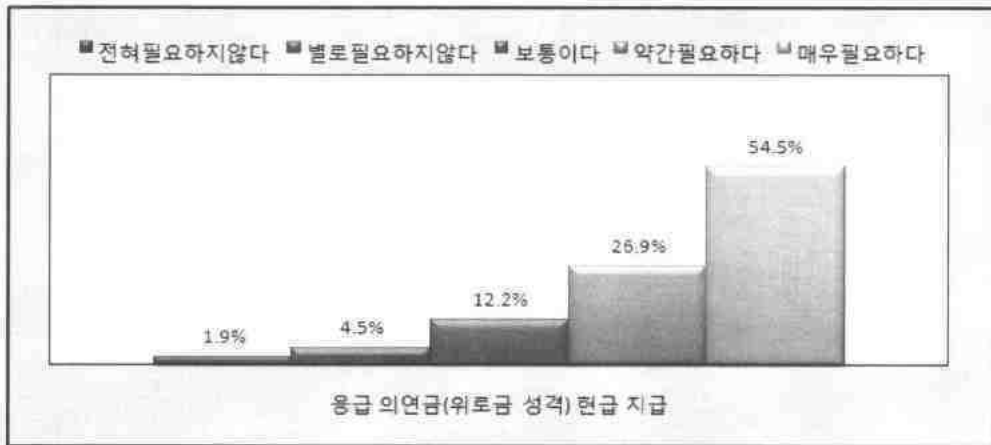
가. 응급 의연금(위로금 성격) 현금 지급

의연금을 현재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응급 의연금(위로금 성격)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매우 필요하다가 5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가 26.9%로 나타났다.

의연금을 응급 의연금(위로금 성격)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지수화 한 결과 4.28로 높게 나타났다.

<표 38> 현금지급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구분	전혀필요하지 않다	별로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전체	Mean
빈도	3	7	19	42	85	156	4.28
백분율	1.9%	4.5%	12.2%	26.9%	54.5%	100.0%	



<그림 7> 현금지급에 대한 인식(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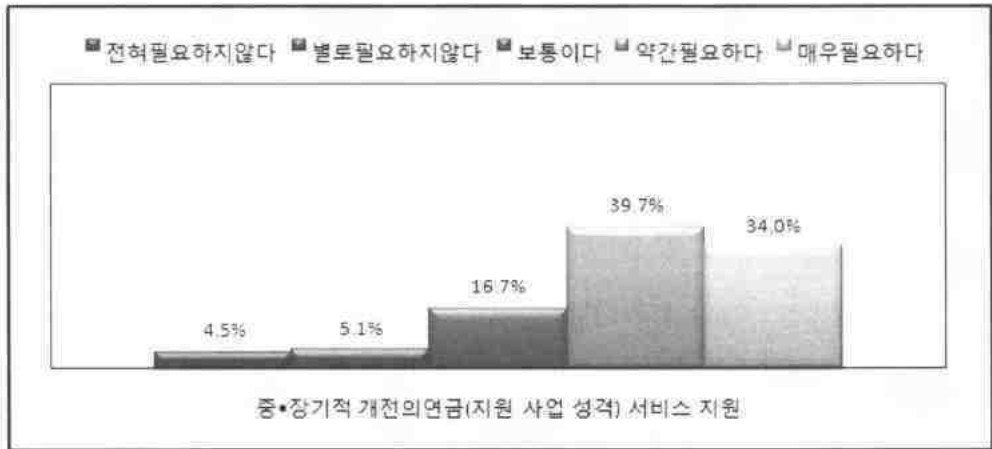
나. 중·장기적 재건의연금(지원사업성격) 서비스지원

의연금을 현재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중·장기적 재건의연금(지원사업성격) 서비스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약간 필요하다가 3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34.0%로 나타났다.

의연금을 중·장기적 재건의연금(지원사업성격) 서비스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지수화 한 결과 3.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39> 중장기 재건의연금 서비스 지원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구분	전혀필요하지 않다	별로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전체	Mean
빈도	7	8	26	62	53	156	3.94
백분율	4.5%	5.1%	16.7%	39.7%	34.0%	100.0%	



<그림 8> 중·장기 재건의연금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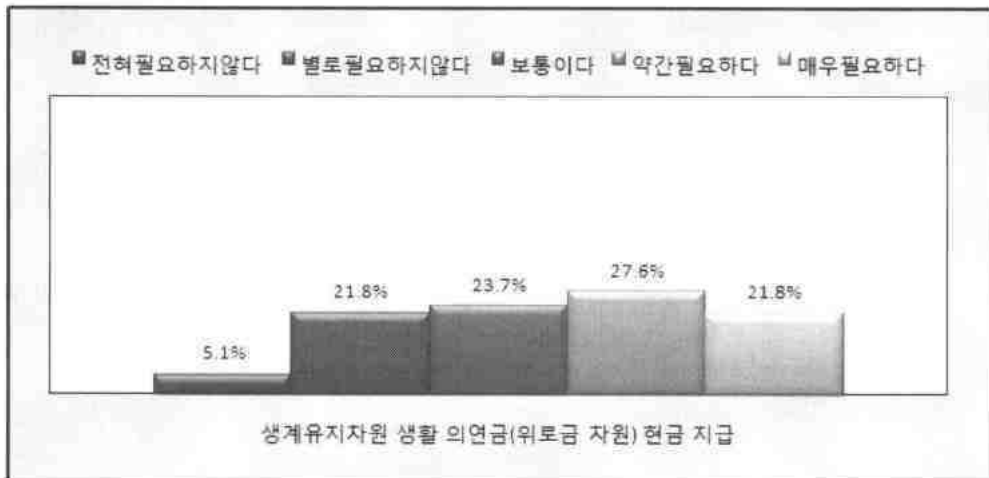
다. 생계유지차원 생활 의연금(위로금 차원) 현금 지급

의연금을 과거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재민에게 생계유지차원 생활 의연금(위로금 차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약간 필요하다가 2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3.7%로 나타났다.

의연금을 생계유지차원 생활 의연금(위로금 차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지수화 한 결과 3.39로 나타났다.

<표 40> 생활 의연금 현금지급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구분	전혀필요 하지 않다	별로필요 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필요 하다	매우필요 하다	전체	Mean
빈도	8	34	37	43	34	156	3.39
백분율	5.1%	21.8%	23.7%	27.6%	21.8%	100.0%	



<그림 9> 생활 의연금 현금지급에 대한 인식(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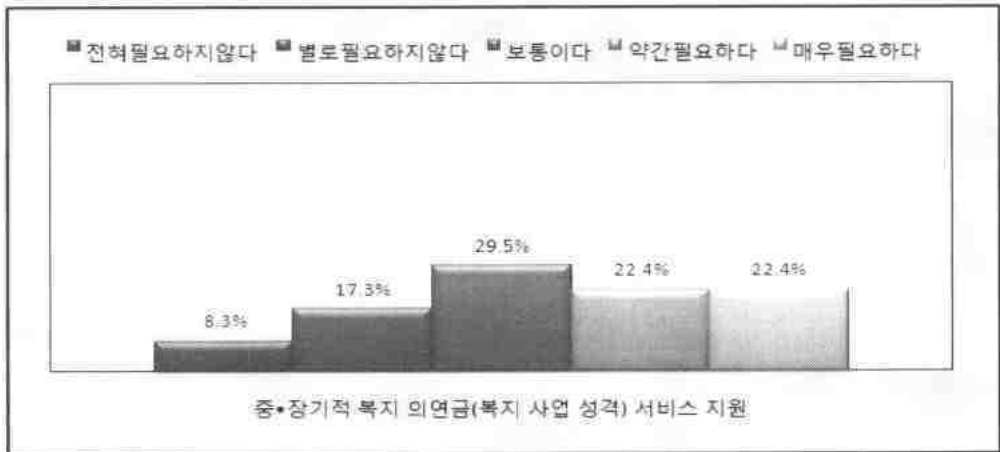
라. 중·장기적 복지의연금(복지사업성격) 서비스 지원

의연금을 과거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재민에게 중·장기적 복지의연금(복지사업성격) 서비스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약간 필요하다고 2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23.7%로 나타났다.

의연금을 중·장기적 복지의연금(복지사업성격) 서비스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지수화 한 결과 3.33으로 나타났다.

<표 41> 중장기 복지의연금 지급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체	Mean
빈도	13	27	46	35	35	156	3.33
백분율	8.3%	17.3%	29.5%	22.4%	22.4%	100.0%	



<그림 10> 중장기 복지의연금 지급에 대한 인식(공무원)

이와 같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응급 의연금(위로금 성격) 현금 지급으로 의연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의연금 지원 서비스의 다양화(공무원 대상)

의연금을 이재민 중에서도 중증장애인가정, 독거노인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후 추가지원 서비스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3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는 31.4%로 나타났다.

이를 지수화 한 결과 3.8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2> 소외 계층 추가지원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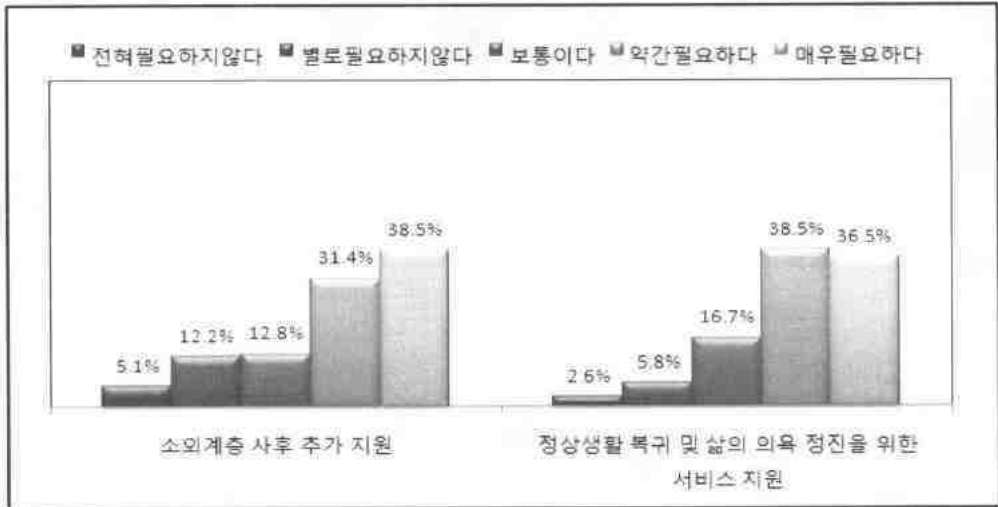
문항	구분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전체	Mean
소외계층 사후 추가 지원	빈도	8	19	20	49	60	156	3.86
	백분 율	5.1%	12.2 %	12.8 %	31.4 %	38.5 %	100.0 %	

의연금을 정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고 삶의 의욕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재난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농촌봉사, 의료지원봉사, 상담서비스 등의 서비스 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간 필요하다가 3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36.5%로 나타났다.

이를 지수화 한 결과 4.01로 높게 나타났다.

<표 43> 서비스지원 다양화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문항	구분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전체	Mean
정상생활 복귀 및 삶의 의욕 정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	빈도	4	9	26	60	57	156	4.01
	백분 율	2.6%	5.8%	16.7 %	38.5 %	36.5 %	100.0 %	



<그림 11> 서비스지원 다양화에 대한 인식(공무원)

이와 같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연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소외계층 사후 추가 지원과 정상생활 복귀 및 삶의 의욕 정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 모두 높게 나타나 향후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원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이라 판단된다.

5) 의연금 지원 시 고려사항

(1) 일반시민 및 재해지역주민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연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순위의 경우, 일반시민은 손실된 재산 가액에 따른 차등지원(42.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피해규모가 같아도 가족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31.1%)이 많았다. 재해지역주민은 손실된 재산 가액에 따른 차등지원(32.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형평성이 중요하므로 세대별 균등지원

(32.1%)이 많았다.

<표 44> 의연금 지급 고려사항에 대한 일반시민, 재해지역 주민
인식분석(1)

순위	집단	구분	세대별균 등	가족수등 차등	피해액차 등	의연금비 례	전체
1순위	일반시 민	빈도	38	73	100	24	235
		백분율	16.2%	31.1%	42.6%	10.2%	100.0%
	재해지 역	빈도	52	50	53	7	162
		백분율	32.1%	30.9%	32.7%	4.3%	100.0%

2순위의 경우 일반시민은 피해규모가 같아도 가족수 등에 따라 차등지
원(3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손실된 재산 가액에 따른 차등지원
(27.2%)이 많았다. 재해지역주민은 손실된 재산 가액에 따른 차등지원
(28.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피해규모가 같아도 가족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27.5%)이 많았다.

<표 45> 의연금 지급 고려사항에 대한 일반시민, 재해지역 주민
인식분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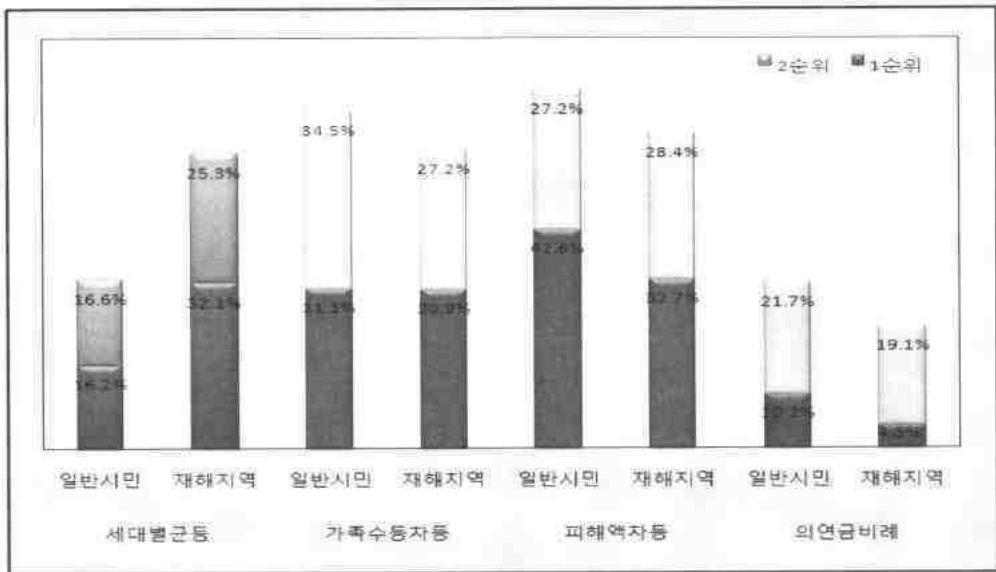
순위	집단	구분	세대별균 등	가족수등 차등	피해액차 등	의연금비 례	전체
2순위	일반시 민	빈도	39	81	64	51	235
		백분율	16.6%	34.5%	27.2%	21.7%	100.0%
	재해지 역	빈도	41	44	46	31	162
		백분율	25.3%	27.2%	28.4%	19.1%	100.0%

위에서 살펴본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의연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일반시민은 손실된 재산 가액에 따른 차등지원(3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피해규모가 같아도 가족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31.0%)로 많았다. 재해지역주민은 피해규모가 같아도 가족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3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손실된 재산 가액에 따른 차등지원(30.0%)이 많았다.

<표 46> 의연금 지급 고려사항에 대한 일반시민, 재해지역 주민 인식분석(3)

순위	집단	구분	세대별균 등	가족수 등차등	피해액차 등	의연금 비례	전체
1+2순위	일반시 민	빈도	90	123	153	31	397
		백분율	24.1%	31.0%	37.6%	7.3%	100.0%
	재해지 역	빈도	91	131	117	58	397
		백분율	24.3%	32.7%	30.0%	1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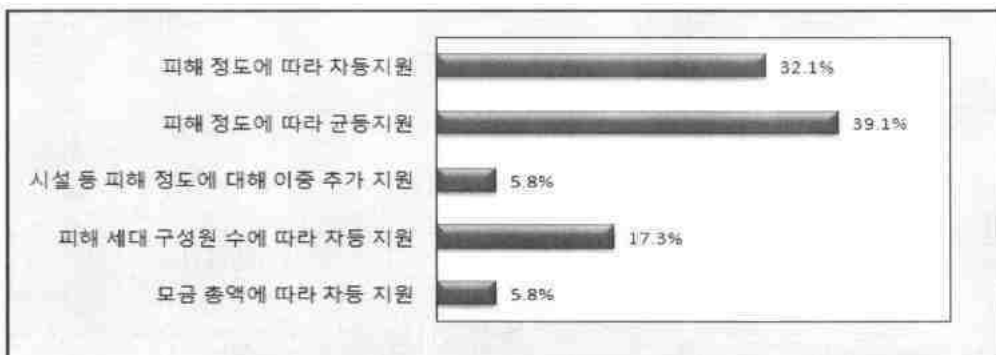
<그림 12> 의연금 지급 고려사항(일반시민-재해지역 주민)

(2) 공무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연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피해정도에 따라 형평성 있게 균등지원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원이 32.1%, 피해세대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의연금 차등지원이 17.3%, 생산시설이나 장비 등의 피해정도에 대해 이중 추가지원이 5.8%, 의연금 모금 총액에 따라 차등지원 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의연금 지급 고려사항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문항	빈도	백분율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원	50	32.1%
피해정도에 따라 형평성 있게 균등지원	61	39.1%
생산시설이나 장비 등의 피해 정도에 대해 이중 추가지원	9	5.8%
피해세대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의연금 차등지원	27	17.3%
의연금 모금 총액에 따라 차등 지원	9	5.8%
전체	156	100.0%



<그림 13> 의연금 지급 고려사항(공무원)

6) 소상공인 등의 생산 수단 및 시설에 지원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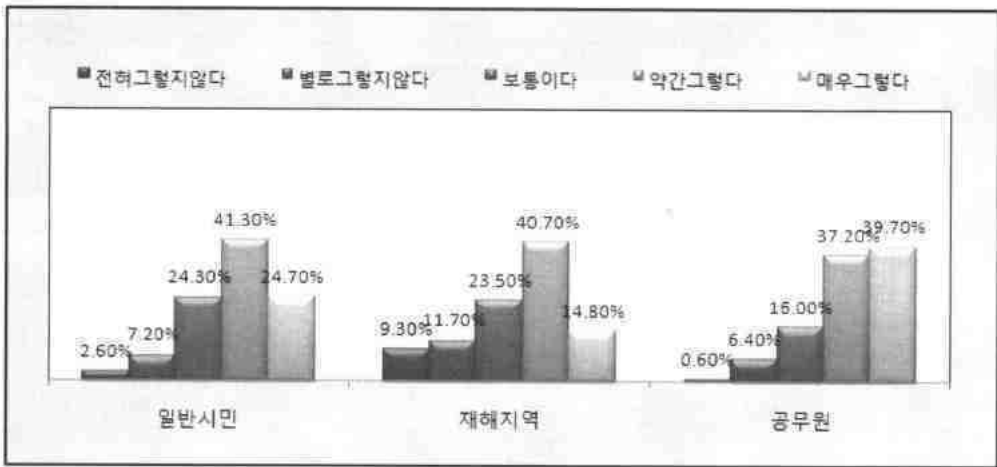
상공인이나 농가·어가·임가·염생산가의 생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 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보험가입 등으로 사전예방

사유재산은 스스로 지켜야하므로 보험가입 등으로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에 대해서 일반시민은 약간 그렇다가 4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가 24.7%로 나타났다. 재해지역주민의 경우는 약간 그렇다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3.5%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는 매우 그렇다가 3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가 37.2%로 나타났다.

<표 48> 사전 보험 가입 등에 대한 인식 분석

집단	구분	전혀그 렇지않 다	별로그 렇지않 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일반시 민	빈도	6	17	57	97	58	235
	백분율	2.6%	7.2%	24.3%	41.3%	24.7%	100.0%
재해지 역	빈도	15	19	38	66	24	162
	백분율	9.3%	11.7%	23.5%	40.7%	14.8%	100.0%
공무원	빈도	1	10	25	58	62	156
	백분율	0.6%	6.4%	16.0%	37.2%	39.7%	100.0%



<그림 14> 사전 보험 가입 등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사유재산은 스스로 지켜야하므로 보험가입 등으로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3.78, 재해지역주민은 3.40, 공무원은 4.09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유재산은 보험가입을 통해 스스로 지켜 사전에 예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이 가장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반시민, 재해지역 주민 순이 있었다.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가입은 사유재산에 피해에 대한 책임성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공무원과 일반시민, 재해지역 주민 간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의연금 지급은 재산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지원 기준을 정하여서 지급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침수 신고만 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단순 신고 접수에 의한 의연금 지급으로 형평성이 고려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가 농민들에게만 적용되듯이, 소상공인은 화재보험 등으로 어느 정도의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으로 대비를 유도하는 한편, 명확한 지급 기준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A군 담당공무원, 2009.07.24).

<표 49> 사전 보험 가입 등에 대한 인식 t-test

집단	N	평균	차이	F-value
일반시민	235	3.78	a	18.124***
재해지역	162	3.40	b	
공무원	156	4.09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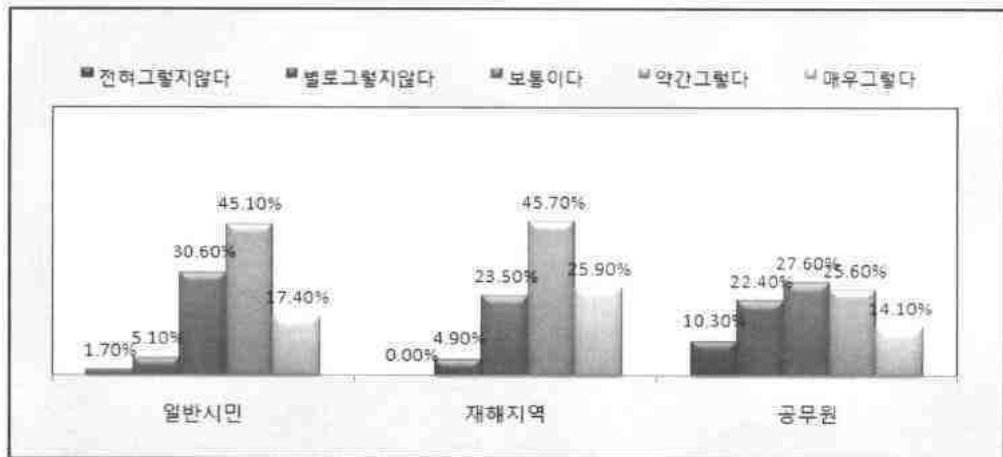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나. 정부가 피해 보상금 형태로 지원

정부가 피해보상금 등의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에 대해서 일반시민은 약간 그렇다가 4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0.6%로 나타났다. 재해지역주민의 경우는 약간 그렇다가 4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가 25.9%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는 보통이다가 2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가 25.6%로 나타났다.

<표 50> 정부 피해보상금 형태 지원에 대한 인식분석

집단	구분	전혀그렇지 않다	별로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일반시민	빈도	4	12	72	106	41	235
	백분율	1.7%	5.1%	30.6%	45.1%	17.4%	100.0%
재해지역	빈도	0	8	38	74	42	162
	백분율	0.0%	4.9%	23.5%	45.7%	25.9%	100.0%
공무원	빈도	16	35	43	40	22	156
	백분율	10.3%	22.4%	27.6%	25.6%	14.1%	100.0%



<그림 15> 정부 피해보상금 형태 지원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정부가 피해보상금 등의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일반시민과 재해지역 주민, 공무원의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3.71, 재해지역주민은 3.93, 공무원은 3.11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

민은 공무원에 비해 정부가 피해보상금 등의 형태로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보상 지원에 대한 공무원 집단과 일반시민·재해지역 주민 집단의 견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 정부 피해보상금 형태 지원에 대한 인식 t-test

집단	N	평균	차이	F-value
일반시민	235	3.71	a	30.971***
재해지역	162	3.93	a	
공무원	156	3.11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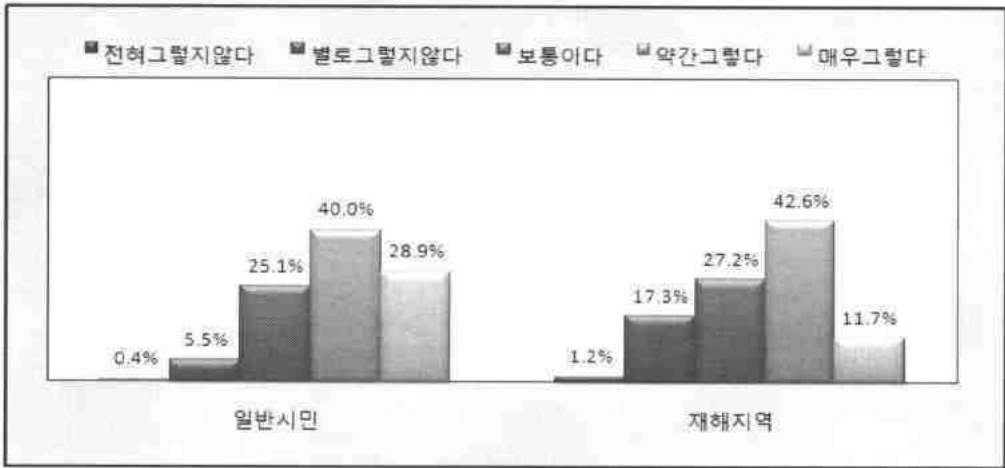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다. 생산시설 피해지원(일반시민, 재해지역 주민 대상)

생산시설 피해지원은 위로금성격이 아니므로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이 바람직하다에 대해서 일반시민은 약간 그렇다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가 28.9%로 나타났다. 재해지역주민의 경우는 약간 그렇다가 4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7.2%로 나타났다.

<표 52> 생산시설 피해 지원에 대한 인식분석

집단	구분	전혀그렇 지않다	별로그렇 지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 다	매우그렇 다	전체
일반시민	빈도	1	13	59	94	68	235
	백분율	0.4%	5.5%	25.1%	40.0%	28.9%	100.0%
재해지역	빈도	2	28	44	69	19	162
	백분율	1.2%	17.3%	27.2%	42.6%	11.7%	100.0%



<그림 16> 생산시설 피해 지원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

생산시설 피해지원은 위로금성격이 아니므로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이 바람직하다에 대한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3.91, 재해지역주민은 3.46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시민이 재해지역주민보다 생산시설 피해지원은 위로금성격이 아니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생산시설 피해 지원에 대한 인식 t-test

구분	N	Mean	t-value
일반시민	235	3.91	4.765***
재해지역	162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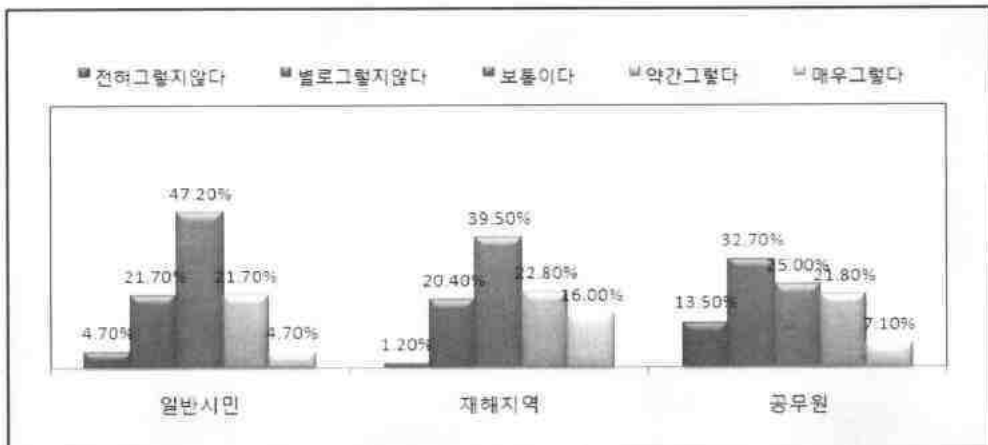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라. 현행대로 의연금에서 위로금 지원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으나 현행대로 의연금에서 위로금을 지원해야 한다에 대해서 일반시민은 보통이다가 4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가 각각 21.7%로 나타났다. 재해지역주민의 경우는 보통이다가 3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가 22.8%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별로 그렇지 않다가 3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5.0%로 나타났다.

<표 54> 의연금에서 위로금 지급에 대한 인식 분석

집단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일반시민	빈도	11	51	111	51	11	235
	백분율	4.7%	21.7%	47.2%	21.7%	4.7%	100.0%
재해지역	빈도	2	33	64	37	26	162
	백분율	1.2%	20.4%	39.5%	22.8%	16.0%	100.0%
공무원	빈도	21	51	39	34	11	156
	백분율	13.5%	32.7%	25.0%	21.8%	7.1%	100.0%



<그림 17> 위로금 지급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으나 현행대로 의연금에서 위로금을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민, 공무원의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3.00, 재해지역주민은 3.32, 공무원은 2.76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과 일반시민이 재해지역주민에 비해 현행대로 의연금에서 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견해 수준이 낮은 것이므로 현행 의연금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식수준이 높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표 55> 의연금에서 위로금 지급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집단	N	평균	차이	F-value
일반시민	235	3.00	a	12.317 ***
재해지역	162	3.32	b	
공무원	156	2.76	a	

* p<.05, ** p<.01, *** p<.001

7) 이재민에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연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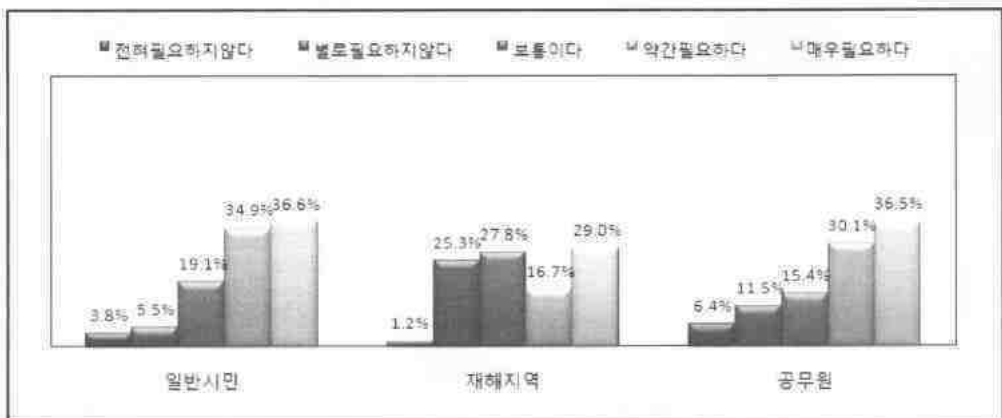
이재민을 위한 현금지원 외에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단체나 자원봉사단체등과 연계하여 이재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시민은 매우 필요하다는 3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는 34.8%로 나타났다. 재해지역주민은 매우 필요하다는 2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7.8%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매우 필요하다는 3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는 30.1%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의연금품 전달시 도로 유실이 발생이나 의연품의 유효기간이 짧은 것이나 부피가 큰 것들로 인해 한정된 구호차량으로 운영하다보니 차량지원이나 인력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A군 담당공무원, 2009.07.24).

<표 56> 서비스지원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분석

집단	구분	전혀필요하지 않다	별로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전체
일반시민	빈도	9	13	45	82	86	235
	백분율	3.8%	5.5%	19.1%	34.9%	36.6%	100.0%
재해지역	빈도	2	41	45	27	47	162
	백분율	1.2%	25.3%	27.8%	16.7%	29.0%	100.0%
공무원	빈도	10	18	24	47	57	156
	백분율	6.4%	11.5%	15.4%	30.1%	36.5%	100.0%



<그림 18> 서비스지원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이재민을 위한 현금지원 외에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단체나 자원봉사단체등과 연계하여 이재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각 집단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3.95, 재해지역주민은 3.47, 공무원은 3.79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무원과 일반시민이 재해지역주민에 비해 현금지원 이외의 서비스를 사회단체나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57> 서비스지원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집단	N	평균	차이	F-value
일반시민	235	3.95	a	8.395***
재해주민	162	3.47	b	
공무원	156	3.79	a	

* p<.05. ** p<.01. *** p<.001

8) 의연금 지원 방식의 다양화

의연금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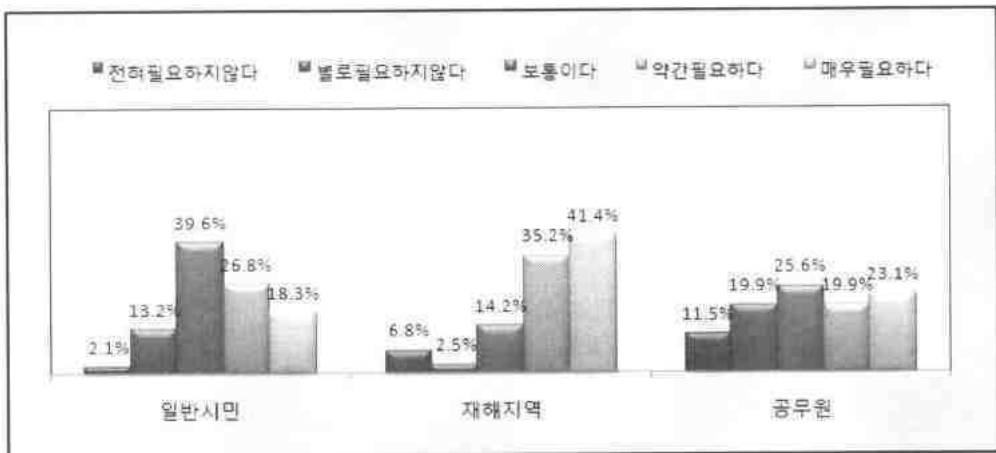
가. 전액 현금 지원

의연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 시민은 보통이다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가 26.8%로 나타났다. 재해지역주민은 매우 필요하다가 41.4%로 가장 높았

으며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가 35.2%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보통이다가 2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23.1%로 나타났다.

<표 58> 지원방식 다양화에 대한 인식분석

집단	구분	전혀필요하지 않다	별로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전체
일반시민	빈도	5	31	93	63	43	235
	백분율	2.1%	13.2%	39.6%	26.8%	18.3%	100.0%
재해지역	빈도	11	4	23	57	67	162
	백분율	6.8%	2.5%	14.2%	35.2%	41.4%	100.0%
공무원	빈도	18	31	40	31	36	156
	백분율	11.5%	19.9%	25.6%	19.9%	23.1%	100.0%



<그림 19> 지원방식 다양화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의연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각 집단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3.46, 재해지역주민은 4.02, 공무원은 3.23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해지역주민은 일반시민과 공무원에 비해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59> 지원방식 다양화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집단	N	평균	차이	F-value
일반시민	235	3.46	a	20.630***
재해지역	162	4.02	b	
공무원	156	3.23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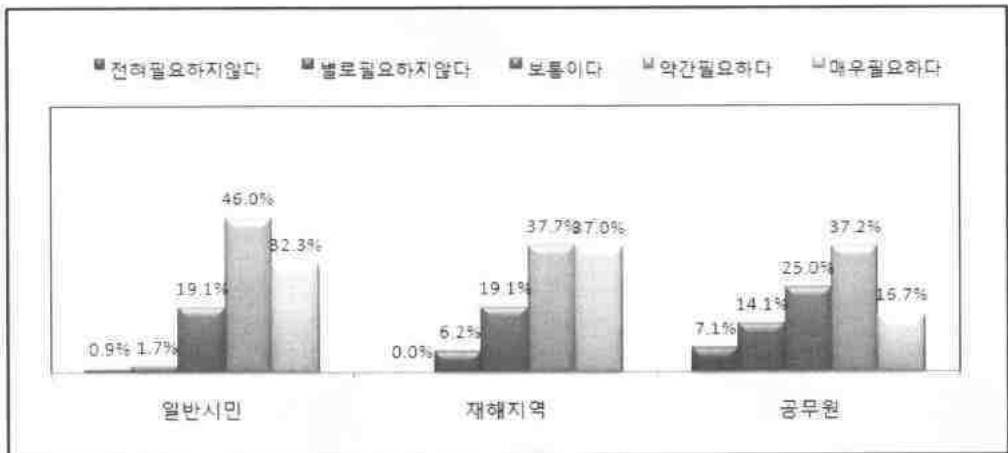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나. 현금과 물품을 함께 지원

의연금을 현금과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은 약간 필요하다가 4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32.3%로 나타났다. 재해지역주민의 경우는 역시 약간 필요하다가 3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37.0%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약간 필요하다가 37.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5.0%로 나타났다.

<표 60> 현금과 물품 지급에 대한 인식 분석

집단	구분	전혀필요 하지않다	별로필요 하지않다	보통이다	약간필요 하다	매우필요 하다	전체
일반시민	빈도	2	4	45	108	76	235
	백분율	0.9%	1.7%	19.1%	46.0%	32.3%	100.0%
재해지역	빈도	0	10	31	61	60	162
	백분율	0.0%	6.2%	19.1%	37.7%	37.0%	100.0%
공무원	빈도	11	22	39	58	26	156
	백분율	7.1%	14.1%	25.0%	37.2%	16.7%	100.0%



<그림 20> 현금과 물품 지급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의연금을 현금과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각 집단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4.07, 재해지역주민은 4.06, 공무원은 3.42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 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해지역주민과 일반시민은 공무원에 비해 의연금을 현금과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61> 현금과 물품 지급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집단	N	평균	차이	F-value
일반시민	235	4.07	a	26.257***
재해지역	162	4.06	a	
공무원	156	3.42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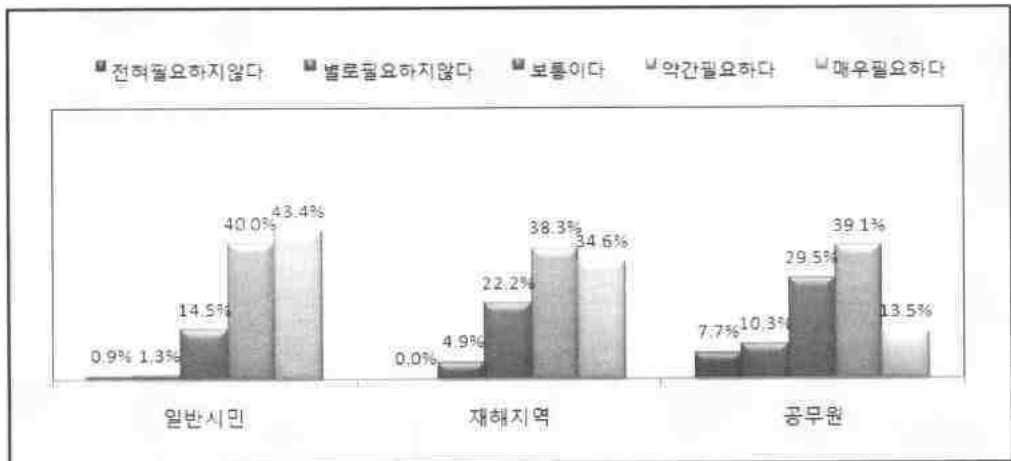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다. 현금과 복구서비스 지원

의연금을 현금과 복구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은 매우 필요하다가 43.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가 40.0%로 나타났다. 재해지역주민의 경우는 역시 약간 필요하다가 3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34.6%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약간 필요하다가 39.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9.5%로 나타났다.

<표 62> 현금과 복구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 분석

집단	구분	전혀필요 하지않다	별로필요 하지않다	보통이다	약간필요 하다	매우필요 하다	전체
일반시민	빈도	2	3	34	94	102	235
	백분율	0.9%	1.3%	14.5%	40.0%	43.4%	100.0%
재해지역	빈도	0	8	36	62	56	162
	백분율	0.0%	4.9%	22.2%	38.3%	34.6%	100.0%
공무원	빈도	12	16	46	61	21	156
	백분율	7.7%	10.3%	29.5%	39.1%	13.5%	100.0%



<그림 21> 현금과 복구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의연금을 현금과 복구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각 집단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4.24, 재해지역주민은 4.02, 공무원은 3.40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해지역주민과 일반시민은 공무원에 비해 의연금을 현금과 복구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63> 현금과 복구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집단	N	평균	차이	F-value
일반시민	235	4.24	a	39.994***
재해지역	162	4.02	a	
공무원	156	3.40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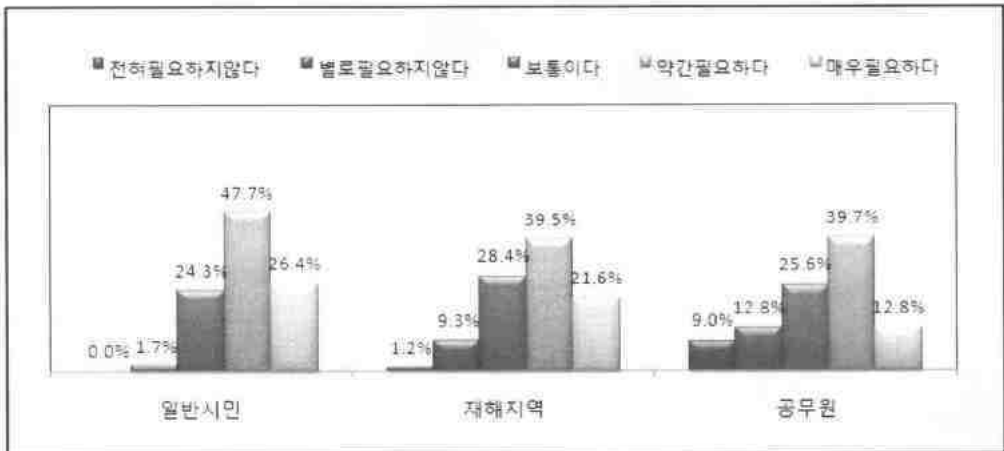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라. 의료·심리상담 등 별도 서비스 지원

의연금을 의료·심리상담 등 별도 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은 약간 필요하다가 4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26.4%로 나타났다. 재해지역주민의 경우는 역시 약간 필요하다가 3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8.4%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약간 필요하다가 39.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5.6%로 나타났다.

<표 64> 의료·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 분석

집단	구분	전혀필요 하지않다	별로필요 하지않다	보통이다	약간필요 하다	매우필요 하다	전체
일반시민	빈도	0	4	57	112	62	235
	백분율	0.0%	1.7%	24.3%	47.7%	26.4%	100.0%
재해지역	빈도	2	15	46	64	35	162
	백분율	1.2%	9.3%	28.4%	39.5%	21.6%	100.0%
공무원	빈도	14	20	40	62	20	156
	백분율	9.0%	12.8%	25.6%	39.7%	12.8%	100.0%



<그림 22> 의료·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의연금을 의료·심리상담 등 별도 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각 집단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3.99, 재해지역주민은 3.71, 공무원은 3.35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연금을 의료·심리상담 등 별도 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재해지역주민, 공무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65> 의료·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집단	N	평균	차이	F-value
일반시민	235	3.99	a	22.124***
재해지역	162	3.71	b	
공무원	156	3.35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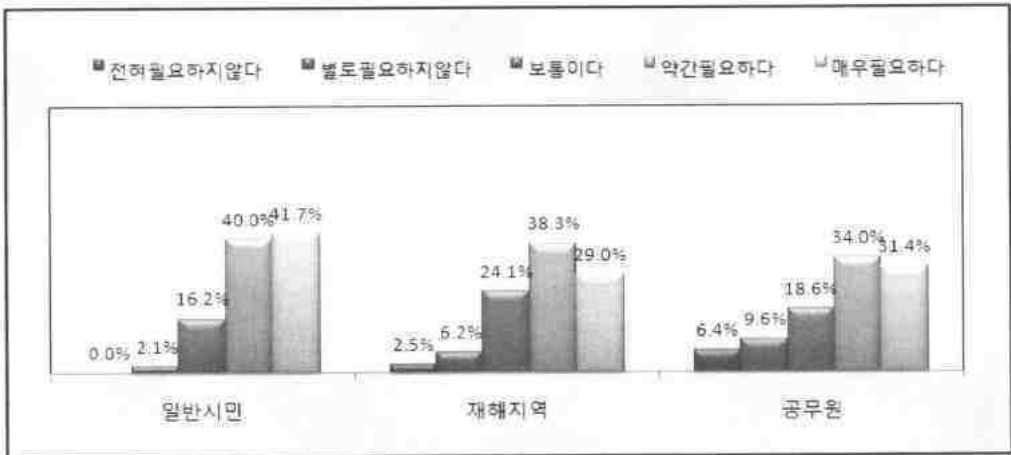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마.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단체 지원

의연금을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은 매우 필요하다는 4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는 40.0%로 나타났다. 재해지역주민의 경우는 약간 필요하다는 3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29.0%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약간 필요하다는 3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31.4%로 나타났다.

<표 66> 서비스 단체 지원에 대한 인식분석

집단	구분	전혀필요 하지않다	별로필요 하지않다	보통이다	약간필요 하다	매우필요 하다	전체
일반시민	빈도	0	5	38	94	98	235
	백분율	0.0%	2.1%	16.2%	40.0%	41.7%	100.0%
재해지역	빈도	4	10	39	62	47	162
	백분율	2.5%	6.2%	24.1%	38.3%	29.0%	100.0%
공무원	빈도	10	15	29	53	49	156
	백분율	6.4%	9.6%	18.6%	34.0%	31.4%	100.0%



<그림 23> 서비스 단체 지원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의연금을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각 집단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4.21, 재해지역주민은 3.85, 공무원은 3.74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의연금을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일반시민이 재해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서비스 단체 지원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집단	N	평균	차이	F-value
일반시민	235	4.21	a	12.705***
재해지역	162	3.85	b	
공무원	156	3.74	b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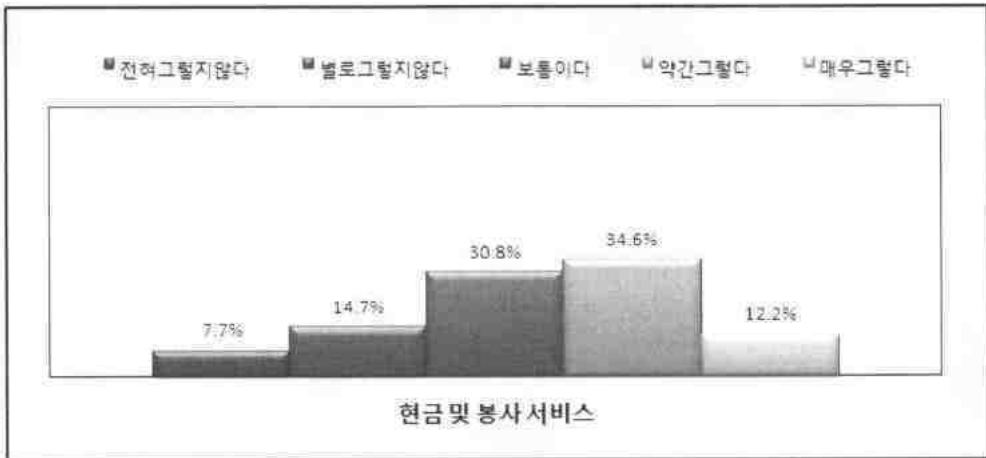
바. 현금과 봉사서비스 함께 지원(공무원 대상)

의연금을 현금과 봉사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간 그렇다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가 30.8%로 높게 나타났다.

의연금을 현금과 봉사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3.29로 나타났다.

<표 68> 현금과 봉사 서비스지원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구분	전혀그 렇지않 다	별로그 렇지않 다	보통이 다	약간그 렇다	매우그 렇다	전체	평균
빈도	12	23	48	54	19	156	3.29
백분율	7.7%	14.7%	30.8%	34.6%	12.2%	100.0%	



<그림 24> 현금과 봉사 서비스지원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3. 의연금의 지급 범위 및 기준

1) 의연금 지급 금액이 부족한 경우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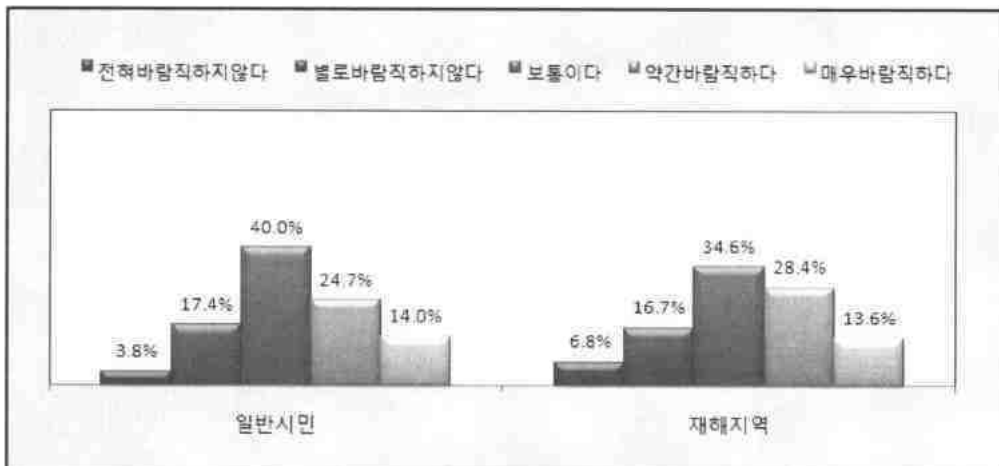
지급해야 할 의연금 지원액에 비해 모금된 의연금 총액이 부족할 경우 대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모금된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일반시민, 재해지역 대상)

모금된 금액 한도에서 지원 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민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일반시민은 보통이다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바람직하다고 24.7%로 나타났다. 재해지역주민은 역시 보통이다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바람직하다고 28.4%로 나타났다.

<표 69> 모금 한도내에서 지급하는데 대한 인식분석

집단	구분	전혀바람 직하지않 다	별로바람 직하지않 다	보통이다	약간바람 직하다	매우바람 직하다	전체
일반시민	빈도	9	41	94	58	33	235
	백분율	3.8%	17.4%	40.0%	24.7%	14.0%	100.0%
재해지역	빈도	11	27	56	46	22	162
	백분율	6.8%	16.7%	34.6%	28.4%	13.6%	100.0%



<그림 25> 모금 한도내에서 지급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

모금된 금액 한도에서 지원 하는 방안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3.28, 재해지역주민은 3.25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간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간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금된 금액 한도에서 지원 하는 방안에 대한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민의 견해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0> 모금 한도내에서 지급하는데 대한 인식 t-test

구분	N	Méan	t-value
일반시민	235	3.28	0.217
재해지역	162	3.25	

* p<.05, ** p<.01, *** p<.001

이재민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연금품은 적정규모를 정하여 지원 한도액 (물품은 금액을 환산)내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의연금품이 많이 들어 온다고 다 지원해주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지원일 수 있고 퍼주기식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의연금의 지원 규모가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의연금이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이기는 하나, 피해복구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어려운 생활여건을 감안한다면 지원 금액이 작은 규모라는 점과 주택전과외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임시거주시설이 실제 이용에 어려움과 사용기간의 제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A군 담당공무원, 2009.0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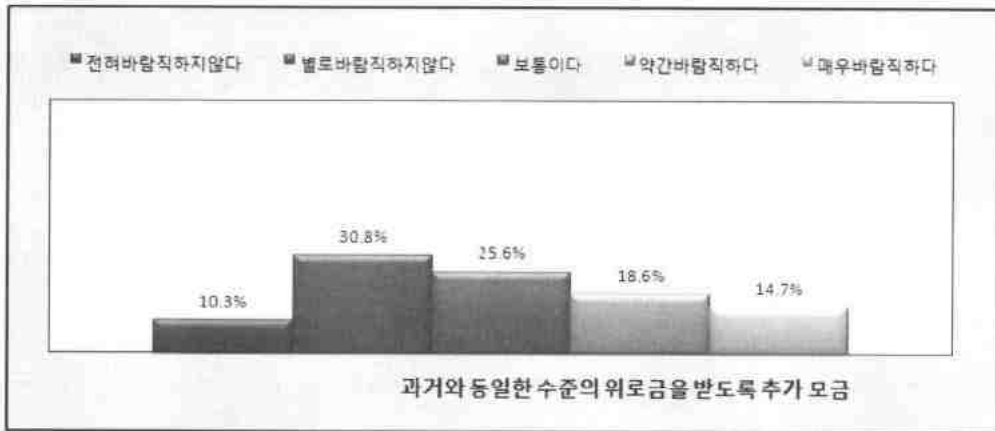
나. 과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모금(공무원 대상)

과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모금하는 방안에 대해 공무원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가 3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5.6%로 많았다.

과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모금하는 방안을 지수화한 결과 2.9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71> 추가모금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구분	전혀바람 직하지않 다	별로바람 직하지않 다	보통이다	약간바람 직하다	매우바람 직하다	전체	평균
빈도	16	48	40	29	23	156	2.97
백분율	10.3%	30.8%	25.6%	18.6%	14.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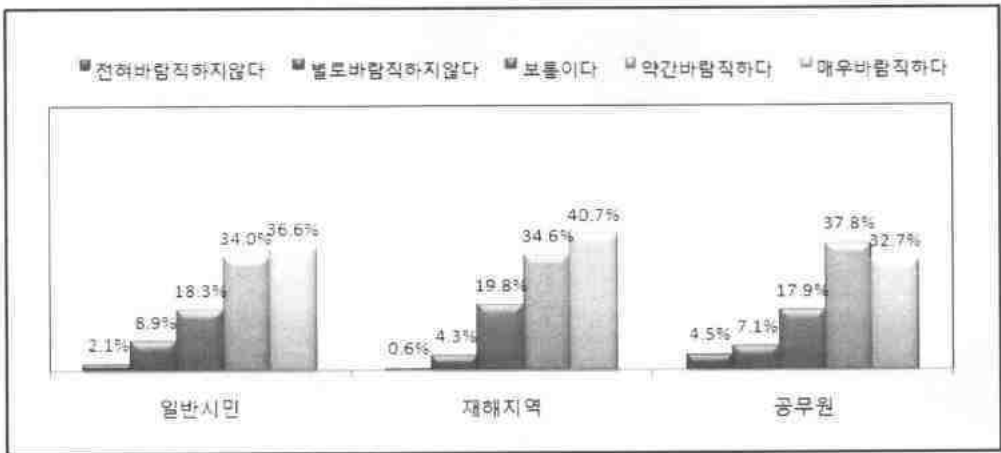
<그림 26> 추가모금에 대한 인식 (공무원)

다. 공익기금을 통한 부족분 보충

공익기금을 통해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시민의 경우 매우 바람직하다가 3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바람직하다가 34.0%로 나타났다. 재해지역주민의 경우 역시 매우 바람직하다가 40.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바람직하다가 34.6%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약간 바람직하다가 3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가 32.7%로 나타났다.

<표 72> 공익기금을 통한 부족분 보충에 대한 인식 빈도분석

집단	구분	전혀바람직하지않다	별로바람직하지않다	보통이다	약간바람직하다	매우바람직하다	전체
일반시민	빈도	5	21	43	80	86	235
	백분율	2.1%	8.9%	18.3%	34.0%	36.6%	100.0%
재해지역	빈도	1	7	32	56	66	162
	백분율	0.6%	4.3%	19.8%	34.6%	40.7%	100.0%
공무원	빈도	7	11	28	59	51	156
	백분율	4.5%	7.1%	17.9%	37.8%	32.7%	100.0%



<그림 27> 공익기금을 통한 부족분 보충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공익기금을 통해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안에 대한 각 집단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3.94, 재해지역주민은 4.10, 공무원은 3.87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익기금을 통해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시민, 재해지역주민, 공무원 모두 동일한 수준의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표 73> 공익기금을 통한 부족분 보충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집단	N	평균	차이	F-value
일반시민	235	3.94	a	2.233
재해지역	162	4.10	a	
공무원	156	3.87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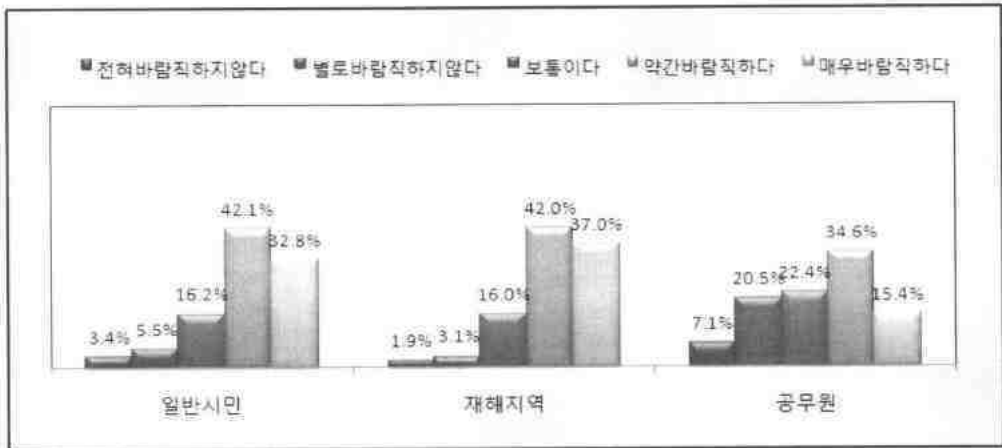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라. 정부 예산을 통한 부족분 보충

정부예산을 통해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시민의 경우 약간 바람직하다가 3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가 32.8%로 나타났다. 재해지역주민의 경우 역시 약간 바람직하다가 42.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가 37.0%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약간바람직하다가 3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다가 22.4%로 나타났다.

<표 74> 정부 예산을 통한 부족분 보충에 대한 인식분석

집단	구분	전혀바람 직하지않 다	별로바람 직하지않 다	보통이다	약간바람 직하다	매우바람 직하다	전체
일반시민	빈도	8	13	38	99	77	235
	백분율	3.4%	5.5%	16.2%	42.1%	32.8%	100.0%
재해지역	빈도	3	5	26	68	60	162
	백분율	1.9%	3.1%	16.0%	42.0%	37.0%	100.0%
공무원	빈도	11	32	35	54	24	156
	백분율	7.1%	20.5%	22.4%	34.6%	15.4%	100.0%



<그림 28> 정부 예산을 통한 부족분 보충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정부예산을 통해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안에 대한 각 집단 의견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시민은 3.95, 재해지역주민은 4.09, 공무원은 3.31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예산을 통해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민이 공무원에 비해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표 75> 정부 예산을 통한 부족분 보충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집단	N	평균	차이	F-value
일반시민	235	3.95	a	27.018***
재해지역	162	4.09	a	
공무원	156	3.31	b	

* p<.05, ** p<.01, *** p<.001

2) 의연금 모금 금액이 초과한 경우의 방안(공무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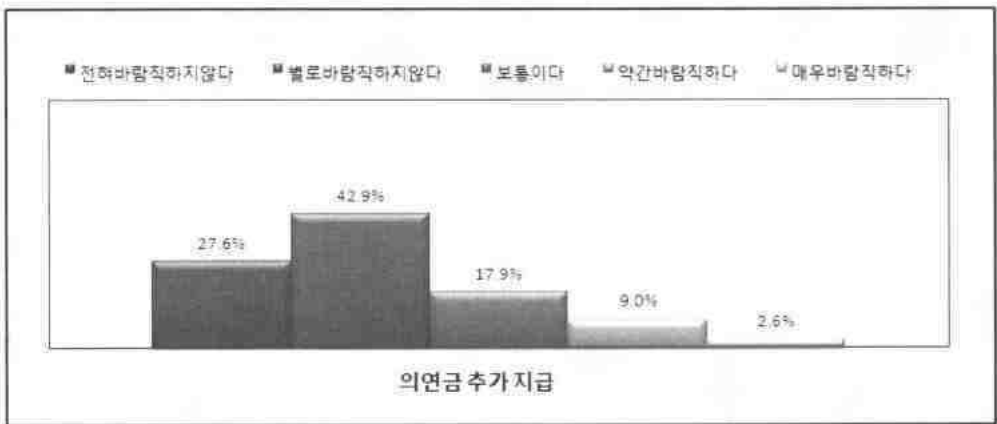
모금된 의연금 총액이 지급해야할 위로금 총액을 초과한 경우 대책 방안에 대한 견해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의연금 추가 지급

해당 이재민에게 의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가 4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가 27.6%로 나타났다. 본 의견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지수화한 결과 2.16으로 비교적 해당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표 76> 의연금 추가지급에 대한 인식분석

구분	전혀바람직하지 않다	별로바람직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바람직하다	매우바람직하다	전체	평균
빈도	43	67	28	14	4	156	2.16
백분율	27.6%	42.9%	17.9%	9.0%	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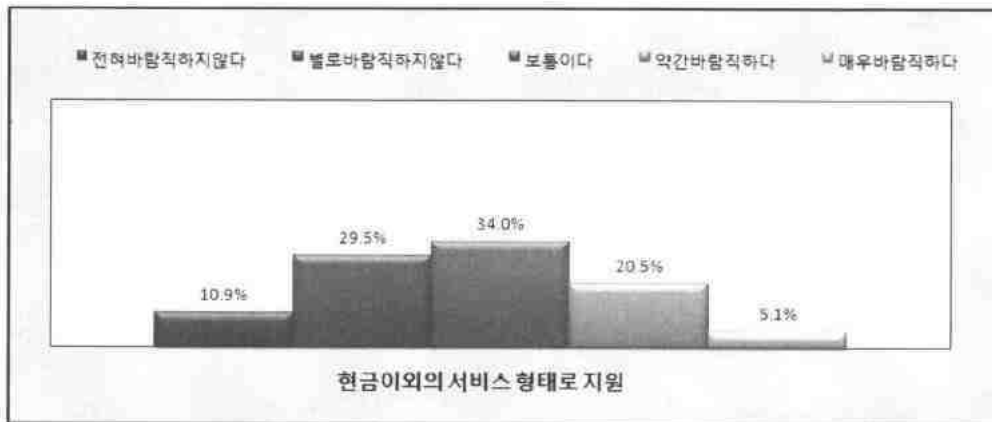
<그림 29> 의연금 추가지급에 대한 인식 (공무원)

나. 현금 이외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

해당 이채민에게 현금 이외의 서비스로 지급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별로 보통이다가 3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가 29.5%로 나타났다. 본 의견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지수화한 결과 2.79로 비교적 해당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77> 현금외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분석

구분	전혀바람 적하지않 다	별로바람 적하지않 다	보통이다	약간바람 적하다	매우바람 적하다	전체	평균
빈도	17	46	53	32	8	156	2.79
백분율	10.9%	29.5%	34.0%	20.5%	5.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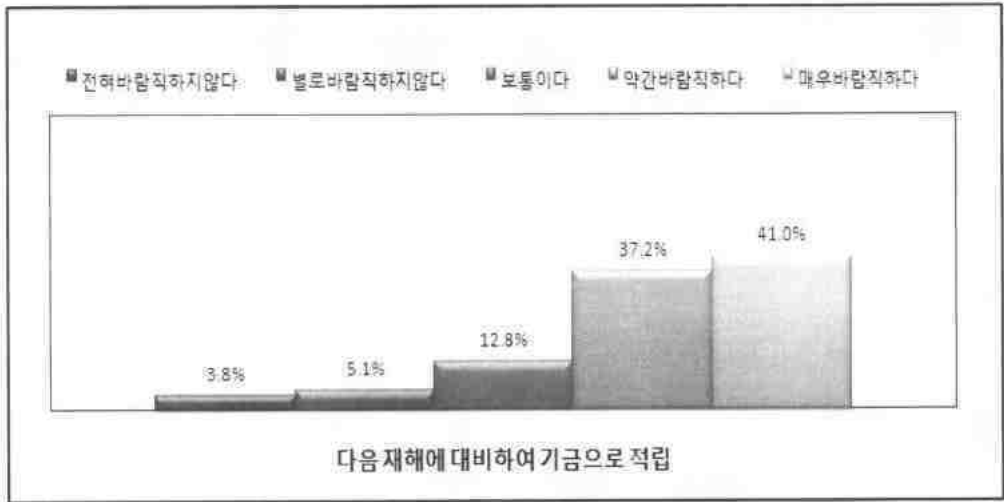
<그림 30> 현금외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 (공무원)

다. 다음 재해에 대비하여 기금으로 적립

다음 재해에 대비하여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매우 바람직하다고 4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바람직하다고 37.2%로 나타났다. 본 의견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지수화한 결과 4.06으로 해당 방안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는 실제 실무담당자의 인터뷰에서도 신중한 고려 속에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A군 공무원, 2009.07.24)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표 78> 잉여를 재해 대비 기금으로 적립하는데 대한 인식분석

구분	전혀바 람직하 지않다	별로바 람직하 지않다	보통이 다	약간바 람직하 다	매우바 람직하 다	전체	평균
빈도	6	8	20	58	64	156	4.06
백분율	3.8%	5.1%	12.8%	37.2%	4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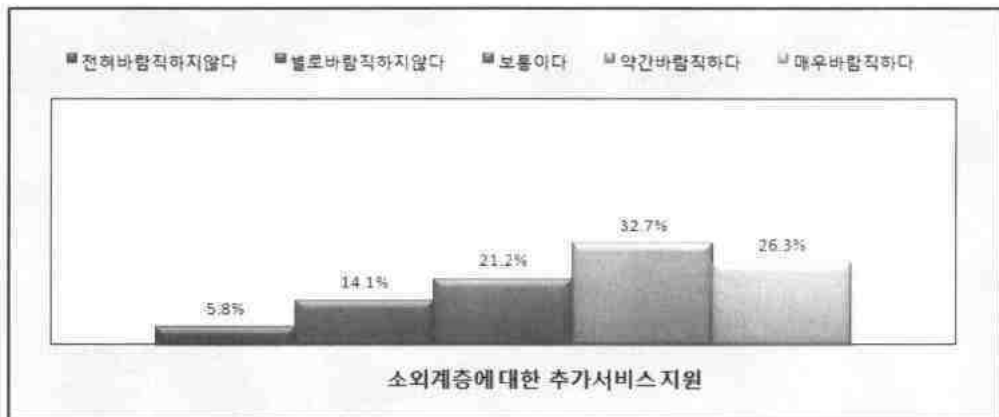
<그림 31> 잉여 적립에 대한 인식 (공무원)

라.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서비스 지원

장애인, 독거노인,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간 바람직하다가 3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가 26.3%로 나타났다. 본 의견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수치화한 결과 3.60으로 해당 방안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표 79>소외계층 추가지원에 대한 인식분석

구분	전혀바람 직하지않 다	별로바람 직하지않 다	보통이다	약간바람 직하다	매우바람 직하다	전체	평균
빈도	9	22	33	51	41	156	3.60
백분율	5.8%	14.1%	21.2%	32.7%	26.3%	100.0%	



<그림 32>소외계층 추가지원에 대한 인식 (공무원)

이와 같이 모금된 의연금 총액이 지급해야할 위로금 총액을 초과한 경우 대책 방안에 대한 견해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 재해에 대비하여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과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서비스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3) 일부 소규모 지역 재난 발생 시 의연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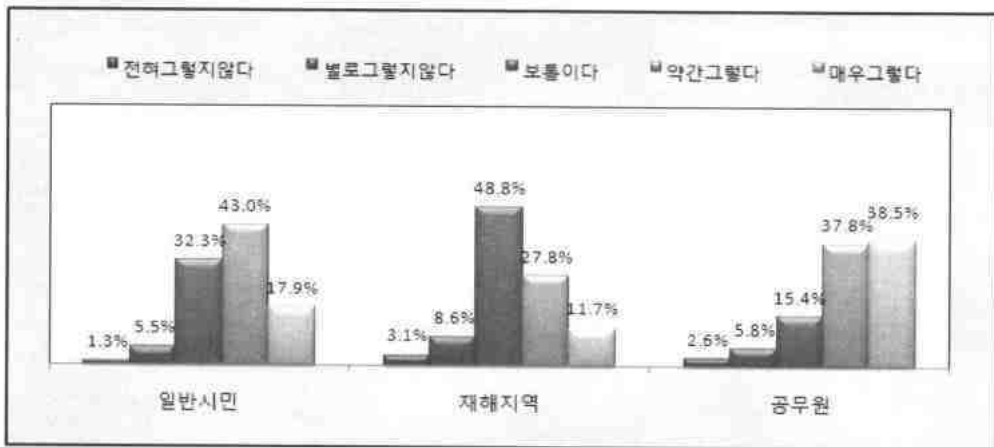
일부 소규모 지역 재난 발생 시 의연금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기존 의연금 적립금에서 지급

기존 의연금 적립금에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은 약간 그렇다가 4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2.3%로 나타났다. 재해지역주민은 보통이다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가 27.8%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매우 그렇다가 3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가 37.8%로 나타났다.

<표 80> 소규모재난의 경우 기존 적립금 지원에 대한 인식분석

집단	구분	전혀그 렇지않 다	별로그 렇지않 다	보통이 다	약간그 렇다	매우그 렇다	전체
일반시 민	빈도	3	13	76	101	42	235
	백분율	1.3%	5.5%	32.3%	43.0%	17.9%	100.0%
재해지 역	빈도	5	14	79	45	19	162
	백분율	3.1%	8.6%	48.8%	27.8%	11.7%	100.0%
공무원	빈도	4	9	24	59	60	156
	백분율	2.6%	5.8%	15.4%	37.8%	38.5%	100.0%



<그림 33> 기존 적립금에서 지급하는데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기존 의연금 적립금에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지수화한 결과 일반시민은 3.71, 재해지역주민은 3.36, 공무원은 4.04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의연금 적립금에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공무원이 가장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일반시민, 재해지역주민 순이었다.

<표 81> 소규모재난의 경우 기존 적립금 지원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집단	N	평균	차이	F-value
일반시민	235	3.71	a	21.331***
재해지역	162	3.36	b	
공무원	156	4.04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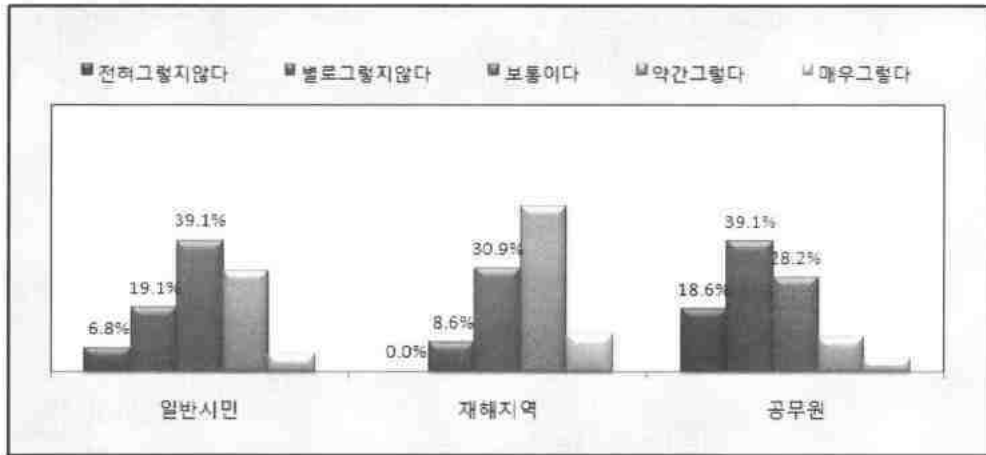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나. 그때 그때 별도 모금 지급

그때 그때 별도로 모금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은 보통이다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가 29.8%로 나타났다. 재해지역주민은 약간 그렇다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0.9%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별로 그렇지 않다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8.2%로 나타났다.

<표 82> 소규모재난시 의연금 모금에 대한 인식분석

집단	구분	전혀그 렇지않 다	별로그 렇지않 다	보통이 다	약간그 렇다	매우그 렇다	전체
일반시 민	빈도	16	45	92	70	12	235
	백분율	6.8%	19.1%	39.1%	29.8%	5.1%	100.0%
재해지 역	빈도	0	14	50	80	18	162
	백분율	0.0%	8.6%	30.9%	49.4%	11.1%	100.0%
공무원	빈도	29	61	44	16	6	156
	백분율	18.6%	39.1%	28.2%	10.3%	3.8%	100.0%



<그림 34> 소규모재난시 의연금 모금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그때 그때 별도로 모금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지수화한 결과 일반시민은 3.07, 재해지역주민은 3.63, 공무원은 2.42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때 그때 별도로 모금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해지역주민이 가장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일반시민, 공무원 순이었다.

<표 83> 소규모재난시 의연금 모금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집단	N	평균	차이	F-value
일반시민	235	3.07	a	65.533***
재해지역	162	3.63	b	
공무원	156	2.42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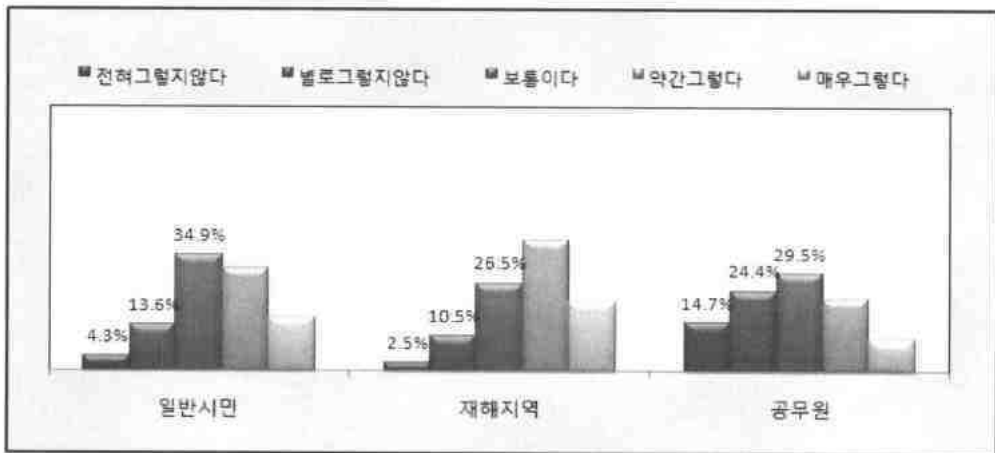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다. 부족금액 정부 구호금으로 지급

별도 모금없이 부족금액을 정부 구호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은 보통이다가 3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가 31.1%로 나타났다. 재해지역주민은 약간 그렇다가 3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6.5%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보통이다가 2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가 24.4%로 나타났다.

<표 84> 부족분의 정부 구호금 지급에 대한 인식분석

집단	구분	전혀그렇지 않다	별로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일반시민	빈도	10	32	82	73	38	235
	백분율	4.3%	13.6%	34.9%	31.1%	16.2%	100.0%
재해지역	빈도	4	17	43	64	34	162
	백분율	2.5%	10.5%	26.5%	39.5%	21.0%	100.0%
공무원	빈도	23	38	46	34	15	156
	백분율	14.7%	24.4%	29.5%	21.8%	9.6%	100.0%



<그림 35> 부족분의 정부 구호금 지급에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별도 모금 없이 부족금액을 정부 구호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지수화한 결과 일반시민은 3.41, 재해지역주민은 3.66, 공무원은 2.87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별도 모금 없이 부족금액을 정부 구호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민은 비교적 긍정적인 반면 공무원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공무원이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이해관계자이므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표 85> 부족분의 정부 구호금 지급에 대한 인식 분산분석

집단	N	평균	차이	F-value
일반시민	235	3.41	a	22.341***
재해지역	162	3.66	a	
공무원	156	2.87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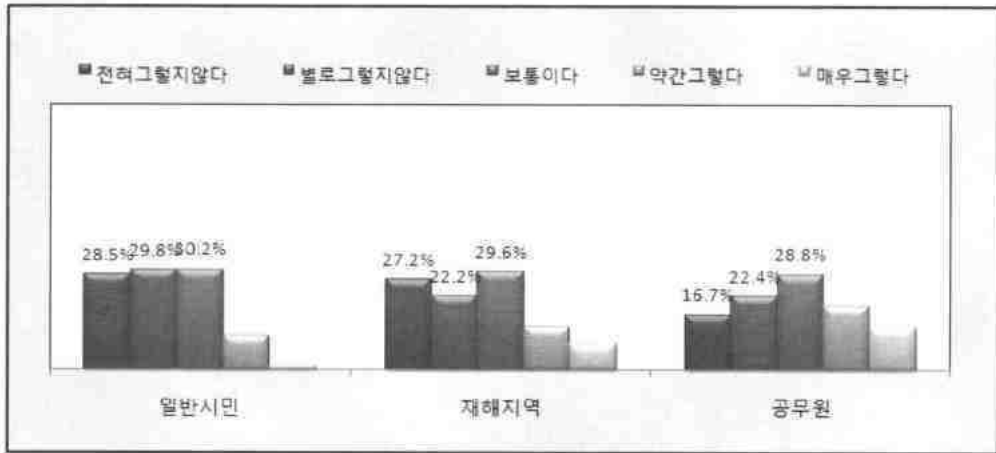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라. 소규모 재난시 의연금 지급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소규모 재난시 의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은 보통이다가 30.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가 29.8%로 나타났다. 재해지역주민은 보통이다가 2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27.2%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보통이다가 2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가 22.4%로 나타났다.

<표 86> 소규모재난시 의연금 지급 않는데 대한 인식분석

집단	구분	전혀그렇 지않다	별로그렇 지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 다	매우그렇 다	전체
일반시민	빈도	67	70	71	24	3	235
	백분율	28.5%	29.8%	30.2%	10.2%	1.3%	100.0%
재해지역	빈도	44	36	48	21	13	162
	백분율	27.2%	22.2%	29.6%	13.0%	8.0%	100.0%
공무원	빈도	26	35	45	30	20	156
	백분율	16.7%	22.4%	28.8%	19.2%	12.8%	100.0%



<그림 36> 소규모재난시 의연금 지급 않는데 대한 인식
(일반시민-재해지역주민-공무원)

소규모 재난시 의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지수화한 결과 일반시민은 2.26, 재해지역주민은 2.52, 공무원은 2.89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규모 재난시 의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대해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민, 공무원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민이 공무원에 비해 부정적 견해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7> 소규모재난시 의연금 지급 않는데 대한 인식 분산분석

집단	N	평균	차이	F-value
일반시민	235	2.26	a	13.887***
재해지역	162	2.52	a	
공무원	156	2.89	b	

* p<.05, ** p<.01, *** p<.001

4) 동일 액수 지급에 대한 의견(공무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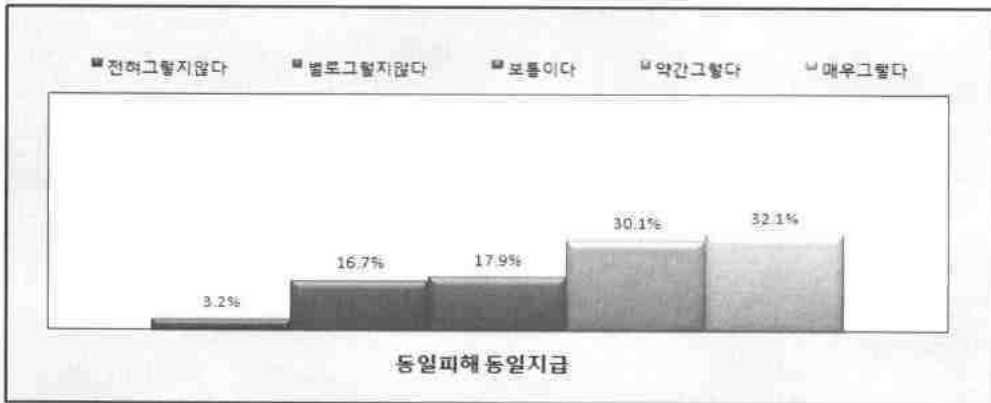
현재 의연금은 사전에 마련된 규정인 의연금 지급기준에 준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동일한 액수가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동일피해 동일지급

지금까지처럼 동일피해에 대해서는 동일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가 30.1%로 나타났다. 이를 지수화 한 결과 3.71로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88> 동일 피해 동일 지급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구분	전혀그 렇지않 다	별로그 렇지않 다	보통이 다	약간그 렇다	매우그 렇다	전체	평균
빈도	5	26	28	47	50	156	3.71
백분율	3.2%	16.7%	17.9%	30.1%	3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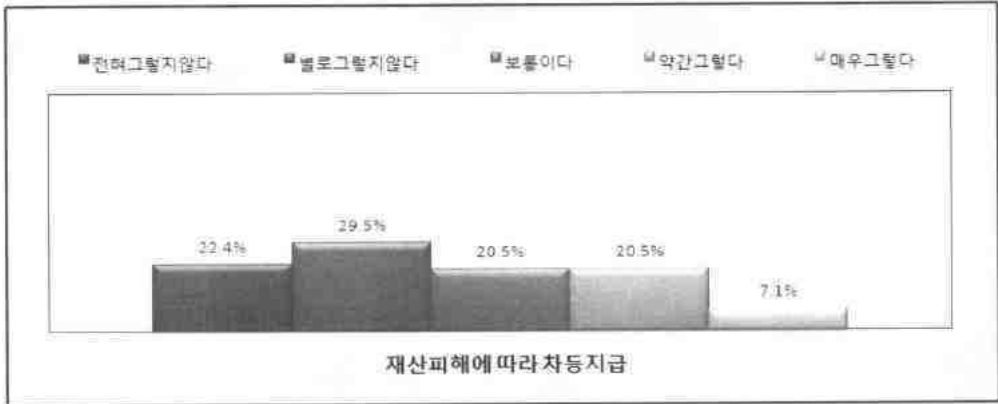
<그림 37> 동일 피해 동일 지급에 대한 인식 (공무원)

나. 재산피해에 따라 차등지급

동일한 피해일지라도 재산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별로 그렇지 않다가 2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22.4%로 나타났다. 이를 지수화 한 결과 2.60으로 비교적 부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89> 재산피해 대비 차등지급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빈도	35	46	32	32	11	156	2.60
백분율	22.4%	29.5%	20.5%	20.5%	7.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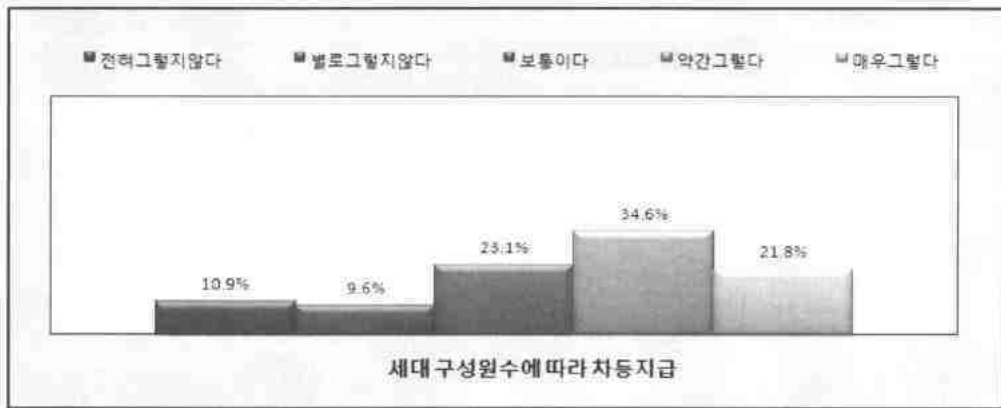
<그림 38> 재산피해 대비 차등지급에 대한 인식 (공무원)

다. 세대수에 따라 차등지급

동일한 피해일지라도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약간 그렇다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가 21.8%로 나타났다. 이를 지수화 한 결과 3.47로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90> 세대 구성원수 대비 차등지급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평균
빈도	17	15	36	54	34	156	3.47
백분율	10.9%	9.6%	23.1%	34.6%	2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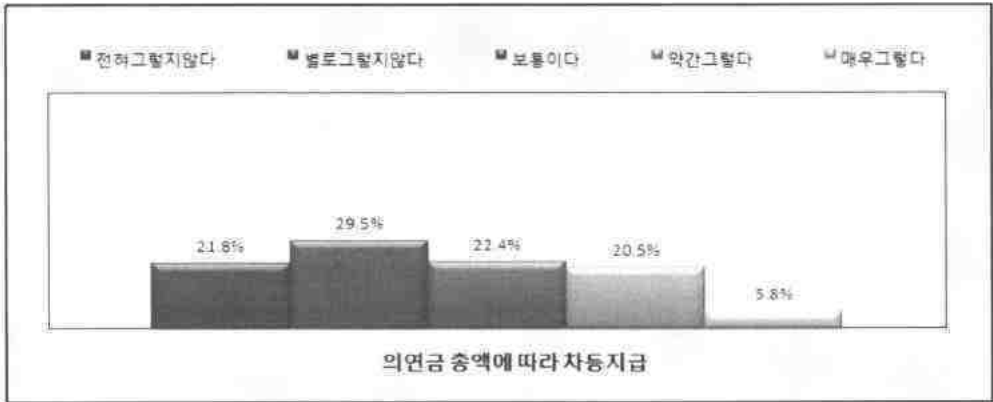
<그림 39> 세대 구성원수 대비 차등지급에 대한 인식 (공무원)

라. 의연금 총액에 따라 차등지급

동일한 피해일지라도 모금된 의연금 총액에 따라 차등지급 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별로 그렇지 않다가 2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2.4%로 나타났다. 이를 지수화 한 결과 2.59로 비교적 부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91> 의연금 총액 대비 차등지급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평균
빈도	34	46	35	32	9	156	2.59
백분율	21.8%	29.5%	22.4%	20.5%	5.8%	100.0%	



<그림 40> 의연금 총액 대비 차등지급에 대한 인식 (공무원)

이와 같이 현재 의연금은 사전에 마련된 규정인 의연금 지급기준에 준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동일한 액수가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일한 피해일 경우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세대수에 따라 차등지급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5) 현금 일시지급에 대한 의견(공무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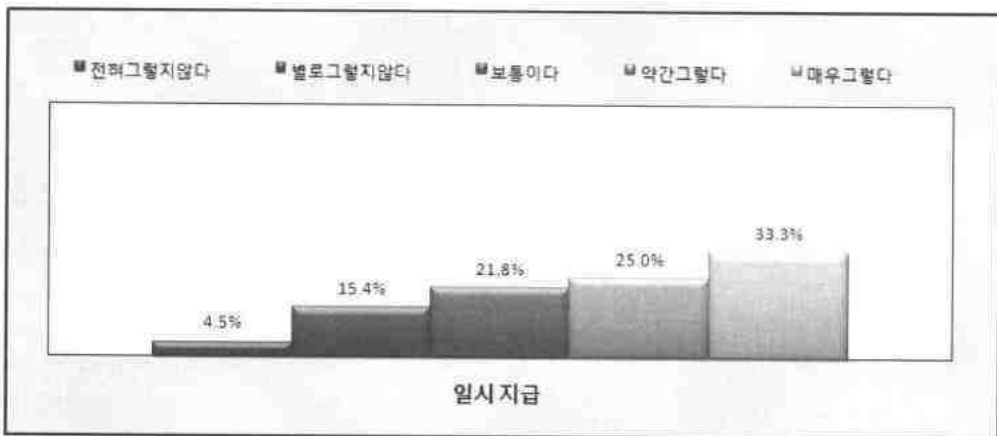
현재 의연금은 이재민에 대하여 현금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일시에 지급하다보니 이재민의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해를 당한 상황에서 일시에 전부 다 사용한 이후 생활에 곤란을 겪을 경우도 있다. 현금 일시 지급에 대한 견해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일시 지급

이재민 각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연금 전액을 지금처럼 한 번에 일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가 25.0%로 나타났다. 이를 지수화 한 결과 3.67로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92> 현금 일시지급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구분	전혀그렇지 않다	별로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평균
빈도	7	24	34	39	52	156	3.67
백분율	4.5%	15.4%	21.8%	25.0%	33.3%	100.0%	



<그림 41> 현금 일시지급에 대한 인식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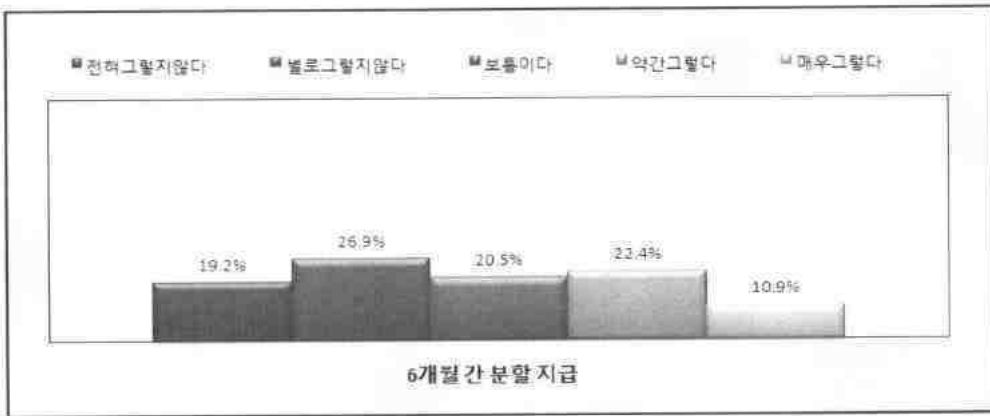
나. 6개월 간 분할 지급

이재민 각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연금 전액을 6개월 기간 이내에서 2-3회 정도로 분할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 별로 그렇지 않다가 2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가 22.4%로 나타났다. 이를

지수화 한 결과 2.79로 비교적 부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93> 6개월 분할지급에 대한 공무원 인식분석

구분	전혀그렇 지않다	별로그렇 지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 다	매우그렇 다	전체	평균
빈도	30	42	32	35	17	156	2.79
백분율	19.2%	26.9%	20.5%	22.4%	10.9%	100.0%	



<그림 42> 6개월 분할지급에 대한 인식 (공무원)

이와 같이 현금 일시 지급에 대한 공무원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 이재민 각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연금 전액을 지급처럼 한 번에 일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제3절 의연금 지원 체계에 관한 실증분석의 결론

의연금 지원 체계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민, 공무원들 간의 의연금 지원체계 선호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민, 공무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행 의연금 지원 정책에 대해 회의적

현행대로 위로금의 형태로 의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시민, 재해지역주민, 공무원 모두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행 의연금 지원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재해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연금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조사한 결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도 실제 재난 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한 금액으로 의연금을 지원하고 있고, 재해지역의 지역구호센터에서 접수하여 의연품을 처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재민의 실생활에 있어서는 작은 정성일 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A군 공무원, 2009. 07.24).

또한, 재해복구는 재해지역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재해 상황으로 부터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점에서 현행의연금 지원 체계를 재해지역주민의 삶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실무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도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생활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최초로 피해가 발생하고 7일 이내에는 1차적 의연금품이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에 피해조사

절차를 거쳐서 정부지원금과 같이 지원하더라도 당장 필요한 물품지원이나 일부의 현금 지원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A군 공무원, 2009. 07.24).

2. 의연금에 대한 인식도

재해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연금 인식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많은 재해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연금은 일반시민들이 사회봉사의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모금된 것이므로 재해지역주민들이 의연금 지급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인식한다면 의연금 지급액과 별개로 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많은 위안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해환경복구가 위급한 상황이므로 이를 인식하는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해기간 중에 의연금에 대해서 인식시키는 노력은 재해복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해지역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재해기간이 아니더라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연금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홍보하여 향후 재해를 경험한 경우 자연스럽게 의연금이 어떠한 경로로 재해지역주민에게 보급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재해복구 비용 개별적 사전 마련 정책 필요

매년 폭우·폭설, 홍수 등의 피해는 일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지역주민은 속수무책으로 재해를 겪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재해를 경험하고 난 후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는 경제적으로 큰 규모의 지출이 따르기 때문에 일부 재해지역주민

은 평생 재해 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장이나 사업체를 비롯하여 일반 가정에도 재해에 대비하여 사전에 보험의 형태로 재해 복구 비용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공장이나 사업체는 재해복구를 대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재해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4. 의연금 사용처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의연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긴급자금지원이나 봉사단체 지원을 매우 필요로 했다. 또한 재해지역주민은 개개인의 지원도 필요로 하고 있었지만 소외계층 추가지원 역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5. 의연금 지원 방안

일반시민, 재해지역 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연금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액현금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현금과 함께 물품이나, 복구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액 현금 지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았다. 그러나 심리·의료상담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재해지역주민과 일반시민의 의견은 필요하나가 많았으나 공무원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또한 현금과 봉사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해지역주민과 일반시민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공무원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 일반시민과 재해지역 주민, 공무원간에 의연금 지급 방안에 대한 시각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해를 당한 재해지역주민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하며 피해지역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의연금 지급 방안은 피해지역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의연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품이나, 복구서비스, 심리·의료상담서비스도 동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정 규모이상 재해피해가 발생했을 때 의연금품을 지역 대한적십자사나 자원봉사기관에 위임하여 접수하고 처리하는 등 민간부문을 활용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A군 공무원, 2009. 07.24). 재난관리 담당공원의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의연금품의 전달이라는 새로운 업무의 발생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의연금품을 공무원을 통하여 전달하게 되면 의연금품 전달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B군 공무원, 2009. 07.24).

또한 실제 큰 재해가 발생하면 의연금품을 접수하고 배분하는 것이 피해지역의 지역 구호센터 조직이나 인력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민간단체와 탄력 있는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으로 전달방식이 바뀌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원에 있어서도 일차적으로는 의연금품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후에는 이재민 가정 마다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현금과 유사한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A군 공무원, 2009. 07.24).

6. 의연금 지급방안

의연금 지급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피해액에 따라 피해지역주민과 일반시민은 차등 지원하는 방안과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

안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공무원은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과 피해정도에 따라 균등 지원하는 방안을 동일한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지급방안에 대해서도 일반시민, 재해지역 주민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해규모와, 가족원수, 소외계층유무를 의연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여 의연금 지급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모금된 의연금이 부족 또는 초과할 경우 대처방안

의연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모금을 하는 것이 의례적이므로 의연금 모금 당시 경제상황이나 재해발생 인식수준에 따라 의연금 모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모금된 의연금이 부족할 경우 대처방안으로는 정부가 피해보상금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예산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민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은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공익기금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반시민, 재해지역 주민, 공무원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모금된 의연금이 부족할 경우 공익기금으로 보충할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모금된 의연금이 초과할 경우 대처방안으로 의연금의 추가지급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다음 재해에 대비하여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외계층에게 추가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8. 소규모 재난시 의연금 모금

소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의연금을 계속해서 모금할 경우 국민들은 의연금모금 간격이 좁아지므로 의연금을 모금액이 저조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재난에 대한 의연금 대처 방안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연금 적립금에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시민, 재해지역 주민, 공무원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부족금액을 정부 구호금으로 지급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민은 긍정적이었으나 공무원은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의 의연금 적립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그러나 소규모 재난이 자주 발생할 경우 의연금 적립금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의연금 적립금액이 고갈 될 수 있으므로 최소 적립 유지금액(적립 하한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소 적립 유지금액을 넘어선 지급액에 대해서는 정부 구호금으로 의연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이 의연금을 모금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9. 소상공인 피해조사

현행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은 재해로 인한 생계지원 대상피해에 대한 의연금으로서 소상공인에게 세대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함을 규정하고 있다. 생계지원 대상피해에 대한 의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피해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자연재난 피해조사 지침은 농가·어가·임가·염생산가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조사는 주택 침수 기준과 피해조사 관련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특히, 현장조사에서는 제품의 완

제품이나 재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피해대상 중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나 기계 등은 피해액 산정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B구 공무원, 2009. 07.24).

제5장 효율적인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제1절 의연금 지원제도의 개선방향

현행 의연금의 지급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의연금 지급대상, 지급최고금액 등의 지급기준에 의해 중앙정부지원대상의 피해에 대하여 정부가 복구계획과 구호금 등의 지급 결정 후에 피해확인결과를 근거로 하여 피해 지자체(시,도)를 통한 의연금 지원신청 접수를 통하여 배분사무국의 심사 및 소방방재청의 실무팀과의 협의를 거쳐 배분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피해세대 개별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의연금의 지원방식은 의연금을 이재민의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함이 없이 현금지원 중심의 우선지원시스템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현금 지원과 더불어 서비스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운영에 있어서는 지급 최고한도금액이 일반 지원기준금액으로 잘못 인식 운영되는 한편, 당해 피해 모금액이 지원기준금액을 훨씬 초과하거나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피해지역의 강한 요구에 지원기준이 무시되고, 결국 법률(지원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 바 있다.

아울러, 중앙지원대상외 지역 피해 시 의연금 배분에서 제외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와 지원 이후에도 사후 점검과 평가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의연금 집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현장상황이나 잘못된 사항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수혜자 입장에서 요구나 만족도는 물론 잘못된 점을 알지 못하고 반복하게 됨에 따라 불만과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수혜자 중심의 체도가

선과 함께 피해조사에서 의연금 지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점검과 확인 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평가회의 및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 재해의연금의 지원 및 활용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탁자와 일반시민들의 경우 재해의연금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문조사 결과 66.8%의 응답자가 재해의연금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재해의연금의 의미와 지원 내용,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외적 활동의 다양성 및 의연금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현재의 재해의연금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재민의 복구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 즉 일반시민의 76.5%와 재난 피해 지역 주민의 79%가 이재민을 위한 중·장기적 복구 사업 지원을 위해 의연금을 사용해야 한다는데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와 약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73.7%가 의연금을 현재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중·장기적인 차원의 지원 사업 성격인 재건의연금 서비스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로 미루어 향후 의연금의 활용 방안에 있어서 단기적 차원의 위로금 성격의 지원과 함께 지원액 대비 모금액이 초과 모금되는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의연금의 활용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중증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가정, 조손 가정, 소년소녀 가장 가족 등 재난 피해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일반 시민의 경우 89.4%, 재난피해 지역 주민의 경우 78.4%가 의연금을 이재민 중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추가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에도

복지사업 성격의 중·장기적 복지의연금 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4.8%,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25.6%로 나타났으며,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3.33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해의연금을 재난 피해 지역의 이재민 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복구 활동 이후 이재민의 생계활동이나 추가 복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일반 시민의 70.6%와 재난 피해 지역 주민의 67.2%가 이재민 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연금을 재해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단체 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수화 한 결과 일반 시민은 3.95, 재해 지역 주민은 3.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재해의연금을 현재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응급의연금, 즉 위로금 성격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81.4%)과 함께 중·장기적인 재건의연금(지원사업 성격) 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73.7%가 의연금을 중·장기적 재건의연금 서비스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재해의연금의 지원 대상은 현재 재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의연금을 과거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재민에게도 생계유지 차원에서 위로금 성격의 생활의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구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4%가 과거 재난 피해자에게도 생활의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고, 보통이라는 의견은 23.7%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재민을 위한 현금 지원 이외에 의료서비스, 주택서비스, 봉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단체나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재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일반 시민은 71.4%, 재해지역 주민은 56.8%, 공무원은 66.6%가 현금지원과 함께 다른 단체와 연계하여 이재민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논의와 함께 이 연구에서는 이재민들에게 지원해야 할 의연금 지원액의 범위와 운영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모금된 의연금 금액 한도 내에서만 의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일반 시민은 38.7%, 재해지역 주민은 42% 만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연금 모금액이 지원액보다 부족한 경우의 대안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우선, 과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모금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3.3% 만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41.1%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공익기금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의 70.6%, 재해지역 주민의 75.3%, 공무원의 70.5%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 예산을 통해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 시민의 74.9%, 재해지역 주민의 79%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높게 보인데 반해, 공무원은 50%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셋째,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금액보다 의연금 모금액이 초과한 경우의 방안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우선, 해당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의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1.6%,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70.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해당 재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현금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5.6%로 나타났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40.4%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 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8.2%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의연금이 초과로 모금된 경우, 초과 모금액을 장애인, 독거노인,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이재민 중에서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9%인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8.9%로 나타났다.

넷째, 일부 소규모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의연금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소규모 재난의 경우에는 기존 의연금 적립금에서 위로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 시민과 공무원은 각각 60.9%와 76.3%가 찬성 의견을 밝힌데 반해, 재해지역 주민은 39.5%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다음으로, 소규모 재난일지라도 그 때 그 때 별도로 모금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 시민은 34.9%, 공무원은 14.1%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에, 재해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60.5%가 그 때 그 때 별도로 모금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보통이라는 의견도 39.1%의 응답을 보임으로써 세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 재난의 경우에는 별도로 모금을 하지 않고 정부의 구호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 시민은 47.3%, 재해지역 주민은 60.5%가 찬성 의견을 밝힌데 반해, 공무원은 31.4%만이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34.9%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일반 시민과 재해지역 주민은 별도의 모금 없이 정부 구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아예 의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

안에 대해서는 일반시민, 재해지역 주민, 공무원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의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안에 대해서 일반 시민의 11.5%, 재해지역 주민의 21%, 공무원의 32%만이 찬성의 의견을 나타냈다. 오히려 일반 시민의 58.3%, 재해지역 주민의 49.4%, 39.1%가 의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였다.

다섯째, 현재 의연금은 사전에 마련된 규정, 즉 의연금 지급 기준에 따라 피해정도에 의거하여 동일한 액수가 지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우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동일피해에 대해 동일금액을 지급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무원의 62.2%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이와는 달리 동일한 피해일지라도 재산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27.6%로 나타났으며,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51.9%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동일한 피해일지라도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56.4%가 찬성의 의견을 보여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동일한 피해일지라도 모금된 의연금 총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 의견은 26.3%에 불과한 반면, 반대 의견은 51.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현재 의연금 지급은 현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있다. 일시 지급과 분할 지급에 대한 의견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무원의 경우 현행과 같은 일시 지급에 대해 58.3%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이재민 각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연금 전액을 6개월 기간 내에 2-3회 정도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33.3%만이 찬성의견을 낸 반면에 반대 의견은 4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의연금 지급기준 개선방향

의연금의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의연금 지급기준은 형식 수준에 그치며, 현실적인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배분의 자율성과 구호의 융통성을 제한하는 제도적 불편함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운데 포괄적 적용이 가능하며, 효율적 운용과 보다 효과적인 배분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실제 재난 피해 현장의 경우, 주택이나 인명피해의 기준이 이재민의 재난 복구와 지원 등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현행의 상한기준을 높이거나 하한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의 경우는 값어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가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이재민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A군 담당공무원, 2009.07.24).

또한 모금액과 지원대상의 규모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우선지원 형식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모순과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연금의 모금이 종료된 후 수혜대상 모두에게 이웃의 사랑과 도움이 전달되어 위로가 되고 감사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배분지원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운영에 있어서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지원기준으로 모금액이 더 많은 경우 모금액이 부족한 때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재해 상황과 피해대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배분제도와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이재민 입장에서는 동일한 재해로 피해를 입으나 도움과 지원을 못 받는 불평등한 구호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어 배분위원회가 모든 의연금을 통합 관리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방안을 마련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의연금 지원 기준을 의연금 모금 여부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지원 방식과 지원액 대비 모금액이 30%이상 초과된 경우에 지원하는 추가지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지원의 경우, 재난발생 후 정부복구계획이 확정된 지 10일 이내에 지원하는 1차 지급과 피해조사 완료 후 또는 모금이 마감된 이후의 2차 지급으로 구분하여 의연금 지원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1차 지급의 경우에는 구호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인명피해와 주택피해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포함하고, 2차 지급에서는 당해 의연금 모금액을 고려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업 등 피해자가 50%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와 소상공인 사업장 피해가 50%인 경우, 그리고 1차 지급에서 누락된 경우 등이 포함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의연금품 운영·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재해관련 정책 중에서 자연재난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을 통하여 재난에 대비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소상공인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의연금 지급보다는 정부의 별도 기금을 활용하거나 풍수해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바로 없어진다고 해도 지원액이 작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을 판단된다(B구 공무원, 2009. 07.24). 국민개개인들의 재난 대비 역량 강화와 의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재해로 인해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주택이 전파한 때에

는 세대당 500만원의 의연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주택이 반파한 경우에는 세대당 250만원의 의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이 침수된 경우에는 세대당 100만원의 의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오늘날 도시화 현상에 의해 도시 지역에서의 침수 현상이 일반화 됨으로써 의연금 지급대상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표 21>의 주택 침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2400억원, 2002년에는 2900억원, 2003년에는 3300억원 이상이 지급되었고, 2004년 이후에는 전체적인 재해 피해액이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상당액이 주택침수비용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시 지역에서의 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의연금 성격과 재원 조달의 한계를 감안하면 주택 침수 지원 금액이 현재보다 하향조정 될 필요성이 있다. 즉 주택에 일부만이 물이 들어와도 주택 침수로 간주하고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수준의 60% 정도인 60만원을 의연금으로 지원하더라도 의연금 지원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소상공인 사업장 피해의 경우 의연금 지원 대상을 사업장이 반파(50%)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의연금 모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경우 경미한 피해의 경우에도 지원 기준액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인명피해 및 주택피해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원액의 경우, 오늘날 재난피해지역이 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함으로써 지원 대상 사업장이 너무 과도한 관계로 의연금 모금액만으로 는 지원액을 충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의연금 모금이 마감된 이후, 모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의연금 지원 대상 사업장별로 주택 침수에 따른 지원액과 같은 60만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소상공인이나 농가, 어가, 임가, 염생산가의 생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 방법과 관련하여, 이들 생산시설은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스스로 보호하고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일반 시민의 66%, 재해지역 주민의 55.5%, 공무원의 76.9%가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는 의견을 보였다. 즉 생산시설과 같은 사유재산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통해 스스로 지키고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견금 지급기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4> 의연금 지원 기준(안)

구분	기본 지원	
	대상	위로금
1차 지급 (응급위로금)	1. 인명피해	
	*사망/실종자-세대주 (세대원)	1000만원 (500만원)
	*부상자 -세대주 (세대원)	500만원 (250만원)
	2. 주택피해	
	*전파, 멸실 - (세입자) -	500만원 (250만원)
*반파 - (세입자)	250만원 (125만원)	
	*침수 -	60만원
2차 지급 (생계위로금)	3. 농, 어, 임, 영업등 피해지 50%이상 피해	60만원
	4. 소상공인 사업장피해 반파(50%)이상 피해	60만원
	5. 누락 등 기타 지원	

제3절 의연금 지원의 향후 발전방향과 개선방안

의연금은 본래 보상성격의 보험금이나 정부보상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지원으로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이웃사랑과 돕는 마음이라는 동양적인 상부상조의 문화 속에 위로금의 성격이 중요한 본질이다.

따라서 향후의 지원제도 개선은 이러한 의연금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우선, 재해구호 의연금의 사용 범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구호위로금의 지원은 슬픔과 고통의 위로와 격려 및 생필품구입 등 생계지원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가능한 현금지원 방식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응급구호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응급구호활동의 지원 범위는 이재민에게 전달되는 응급구호 물품구호지원과 긴급구조 활동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연금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긴급복구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개별세대의 복구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과 노력봉사 및 전문봉사 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의연금에서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속적 구호활동과 프로그램 지원으로서 이재민 입장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호활동과 프로그램의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의연금 총당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배분 활동과 관련하여 배분위원회 운영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에 대한 비용 사용, 배분심사, 평가 및 배분제도개발과 시스템운영을 위한 예산 등 의연금을 통해 이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위한 과정과 집행, 평가에 대한 일부의 재정적 지원이 의연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의연금의 바람직한 배분형태를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현

재 의연금의 지급은 절대적으로 행정편의,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선적으로 고객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수혜자 중심 시스템으로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수혜자 입장에서 적시에 필요한 도움, 즉,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과 자원봉사 등까지도 공평하게 지원 받기를 바라는 이재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이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재민의 요구뿐만 아니라, 의연금을 기탁하는 기탁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즉, 재해를 당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재민들을 신속히 돕고 싶어 하는 기탁자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일정한 기준과 규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평한 구호를 통해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빠른 피해복구 및 피해지역의 민심안정과 주민 불만을 최소화할 위해 노력하되, 이를 위한 기준과 규칙에 있어 현실적합성과 적용가능성을 고려한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 특히, 모집 협력기관들과 일반국민 그리고 이재민 모두가 모집된 의연금이 낭비 없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이재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의연금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인 배분, 운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연금 자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재해구호를 위한 의연금은 무엇보다 신속성과 공평성의 일반원칙에 따라 모금액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자연재난 피해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기본 의연금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모집 목적의 당해 재해에 대해 모집금액이 충분할 와 모집금액이 부족하거나 모금이 없을 때를 다르게 지원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 등 특별히 추가 구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의연금이 이재민의 생활지원에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상황과 이재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개별적 상황에 필요

한 구호를 위한 현금 지원 외의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을 통한 구호활동으로 지원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실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구호위로금 등의 현행 중앙정부의 지급기준에 의한 현금지급액은 일부 줄이고, 현재 의연금 사용이 없거나 부족한, 긴급구호 또는 장기구호, 장기복구, 비상구호 적립금에 대한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금 지급방식의 구호 위로금의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모금 후 신속지원 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이재민 지원 의연금 지급기준은 모금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해에 공동으로 적용하여 지급하되, 의연금 보유액을 고려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비율을 낮추어 배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1차적인 모금 후 의연금 지급 후에도 특별히 추가적 구호가 필요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배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추가 구호 의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 추가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의연금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연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 시민과 재해지역 주민, 공무원의 의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시민과 공무원은 각각 45.1%와 43%만이 전액 현금 지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해지역 주민은 76.6%가 전액 현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연금을 현금과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일반 시민과 재해지역 주민은 각각 78.3%와 74.7%가 현금과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데 반해, 공무원의 경우에는 53.9%가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의연금을 현금과

복구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은 83.4%, 재해지역 주민은 72.9%, 공무원은 52.6%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 및 재해지역 주민의 인식은 공무원의 인식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의연금을 의료·심리 상담 등 별도 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일반 시민은 74.1%, 재해지역 주민은 61.1%, 공무원은 52.5%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다섯째, 의연금을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일반 시민은 81.7%, 재해지역 주민은 67.3%, 공무원은 65.4%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 집단별 차이를 검정한 결과 일반 시민이 재해지역 주민이나 공무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현대 사회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상 이변 현상에 의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특히, 자연재난으로 인한 대형 재난의 경우, 정부와 일반 시민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나타난다. 재난 피해 현장에서 이재민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은 물론 이재민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의연금 모금 등의 활동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연금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대두되는 쟁점은 현행 의연금 지원 제도의 개선, 의연금 지급 기준의 개선, 의연금 지원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 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하에서 이 연구에서는 재해의연금의 성격에 맞는 합리적인 의연금 배분 원칙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혜자 중심의 효율적인 이재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연금 지원 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의연금 지원 제도와 관련한 법령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의 의연금 모금 및 배분, 지원 방법 등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의연금 담당공무원, 기탁자 및 일반 시민, 이재민 등의 의연금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의연금 지원 체계에 대하여 공무원, 기탁자 및 일반 시민, 이재민 등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의연금 지원 체계에 대하여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해지역주민은 의연금이 일상생활로 복귀하

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둘째, 의연금에 대한 낮은 인식도로서, 평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연금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재해복구 비용에 대하여 사전에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공장이나 사업체는 재해복구를 대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재해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연금 사용처에 대하여 재해지역주민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역시 매우 필요하다. 다섯째, 의연금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전액현금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현금과 함께 물품이나, 복구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비슷한 수준으로 많았다. 의연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품이나, 복구서비스, 심리·의료상담서비스도 동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의연금 지급 방안에 대하여 재해규모와, 가족원수, 소외계층유무를 의연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여 의연금 지급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모금된 의연금이 부족 또는 초과할 경우 대처방안으로 정부가 피해보상금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예산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일반시민과 재해지역주민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은 부정적이었으나 공익기금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반시민, 재해지역주민, 공무원 모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모금된 의연금이 부족할 경우 공익기금으로 보충할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여덟째, 소규모 재난시 의연금 모금에 대하여, 기존의연금 적립금에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시민, 재해지역주민, 공무원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소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의 의연금 적립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2. 연구 결과의 함의

현행 의연금의 지급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의연금 지급대상, 지급최고금액 등의 지급기준에 의해 배분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피해세대로 입금하는 방법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의연금의 지원방식은 행정편의 위주의 공급자 중심의 배분시스템으로서 현금지원 중심의 우선지원시스템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지원 이후에도 사후 점검과 평가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수혜자 중심의 제도개선과 함께 피해조사에서 의연금 지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점검과 확인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평가회의 및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의연금의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제도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운데 포괄적 적용이 가능하며, 효율적 운용과 보다 효과적인 배분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모금액과 지원대상의 규모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의연금의 모금이 종료된 후 수혜대상 모두에게 이웃의 사랑과 도움이 전달되어 위로가 되고 감사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배분지원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의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상황과 피해대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배분제도와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배분위원회가 모든 의연금을 통합 관리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연금은 본래 보상성격의 보험금이나 정부보상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지원으로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중요한 본질이다. 따라서 향후의 지원제도 개선은 이러한 의연금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구호위로금의 지원은 슬픔과 고통의 위로와 격려 및 생필품구입

등 생계지원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가능한 현금지원 방식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응급구호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응급구호활동의 지원 범위는 이재민에게 전달되는 응급구호 물품구호지원과 긴급구조 활동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연금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긴급복구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개별세대의 복구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과 노력봉사 및 전문봉사 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의연금에서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속적 구호활동과 프로그램 지원으로서 이재민 입장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호활동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의연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다섯째, 기타 배분 활동과 관련하여 배분위원회 운영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에 대한 비용사용, 배분심사, 평가 및 배분제도개발과 시스템운영을 위한 예산 등 의연금을 통해 이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위한 과정과 집행, 평가에 대한 일부의 재정적 지원이 의연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의연금의 바람직한 배분형태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우선적으로 고객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수혜자 중심 시스템으로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신속하고 공평한 구호를 통해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주민 불만 최소화를 위하여 현실적합성과 적용가능성을 고려한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 일곱째, 의연금 자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모집 목적의 당해 재해에 대해 모집금액이 충분할 경우와 모집금액이 부족하거나 모금이 없을 때를 다르게 지원하는 유통성이 필요하다. 또한 특별 추가 구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의연금이 이재민의 생활지원에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상황과 이재민의 욕구를 고려하여 개별적 상황에 필요한 구호를 위해서는 현금 지원 외의 다양

한 사업프로그램을 통한 구호활동으로의 지원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실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중앙정부의 지급기준에 의한 현금지급액은 일부 줄이고, 현재 의연금 사용이 없거나 부족한, 긴급구호 또는 장기구호, 장기복구, 비상구호 적립금에 대한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현금 지급방식의 구호 위로금의 지급 기준을 모금 후 신속지원 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이재민 지원 의연금 지급기준은 모금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해에 공통으로 적용하며, 의연금 보유액을 고려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비율을 낮추어 배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특별 추가 구호가 필요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배분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특별추가구호 의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 추가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국도, 1985. 법인설립과 조세문제. 서울: 한국법인문제연구소.
- 김병준, 2000.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 김상규 외, 1994. 사회복지론. 서울: 형설출판사.
- 김소선, 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이론과 실제. 간호학 탐구, 12(1): 69-81.
- 김승권, 2002.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2-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국재해구호협회.
- 김형렬, 2000. 정책학. 서울: 법문사.
- 다산연구회 역주, 1988. 역주 목민심서 6. 창작과비평사.
- 박철하, 1999. 1925년 서울지역 수해이재민 구제활동과 수해대책. 서울학 연구, 13(1): 153-190.
- 백종만, 1994.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국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유형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4. 「우리나라의 재해·재난관리 및 긴급지원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구보고서.
- 소방방재청, 2005. 2005년도 재해구호사업 지침.
- 소방방재청, 2007. 「재해의연금 관리·운용 규정」. 소방방재청.
- 신경림 외, 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서울: 현문사.
- 신선인, 2001. 재해 및 재난 구호시 요구되는 정신보건사회사업서비스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0: 61-83.
- 심성화, 2004. 우리나라의 이재민 구호정책에 관한 연구 - Gilbert와 Specht의 정책분석틀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윤배. 1975. 공동모금의 방향과 대책. 몽산 하상락교수 송수 논문집. 서울: 동원출판사.
- 엣센스국어사전. 1985. 서울: 민중서림.
- 오재호. 2005. 국가위기관리의 학문적 발전방안에 관한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정책포럼.
- 유현정·남수정. 2006. 아나바다 사이트 참여자의 비윤리적 행동과 반응양식 :근거이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44(12): 189-201.
- 윤영득. 1997.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산업정책. 경제학논집. 6(2): 251-277.
- 이계복. 2001. 재해관리와 효율적인 재해구호체계. 「방재행정 세미나, 제6회」. 행정자치부·국립방재연구소.
- 이대회. 2004. 정부 혁신을 위한 옛 제도 연구.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재원. 2000. 지방정부의 이재민 구호품 전달체계 개선방안 - 수해이재민 구호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논문집. 5(1): 67-87.
- 이재은. 2004. 재난관리시스템 개편과정 쟁점분석 및 향후 방향. 행정논총. 42(2): 147-169.
- 이재은. 2005. 국가 위기관리의 학문적 체계화의 의의와 필요성. 한국위기관리논집. 1(1): 20-32.
- 이재은·양기근. 2006. 한국의 재해의연금 모금 및 배분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미국·일본·독일·프랑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행정논총(서울대). 44(4): 339-372.
- 이재은·유현정. 2009. 재해구호에서의 의연금 지원에 관한 실증분석: 기탁자와 이재민의 기대·성과·만족도 인식 비교. 국정관리연구. 4(1): 131-156.
- 이재은. 2006. 「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 이종수 편, 2000. 행정학사전. 서울: 대영문화사.
- 이주호, 2007. 「재해구호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 이혁구, 1997.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과 발전방향. 사회과학(성균관대). 44: 85-104.
- 재해구호법[전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75호]
- 전국재해구호협회, 2004. 2004 전국재해구호협회. 서울: 전국재해구호협회.
- 전국해재구호협회 연보, 2004.
- 정호영, 1990. 사회복지기관의 모금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중앙일보, 2005. 9. 7. 1면.
- 최창호, 1995. 지방자치학. 서울: 박영사.
- 최항순, 1993. 복지행정론. 서울: 신원.
- 표준어국어사전, 2007.
- 한동우·이재은·유태균·홍백의·노연희, 2004. 우리나라의 재해·재난관리 및 긴급지원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행정자치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2003. 국가재난관리 종합대책. 서울: 행정자치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 황진수, 1996. 현대복지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Anisya Thomas and Lynn Fritz, 2006. Disaster Relief, Inc. *Harvard Business Review*, Nov 1: 114-122.
- Bimal Kanti Paul, 2006. Disaster relief efforts: an update. *Progress in Development Studies*. 6(3): 211-223.
- Certo, Samuel C. 1989. *Principles of Modern Management: Functions and Systems*(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Doury, C. M. 1972. Disaster and Charity: Some Aspects of Cooperative Economic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69(1): 142-151.
- Gidron, Benjamin, Ralph M. Kramer, and Lester M. Salamon. 1992. *Government and the Third Sector: Emerging Relationships in Welfare State*.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
- Glaser, B., & Strauss, A. 1965. Awareness of dying. Chicago: Aldine.
- Glaser, B., & Strauss, A. 1967.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Aldine.
- Gregory Kutz. 2007. *Hurricanes Katrina and Rita Disaster Relief: Prevention Is the Key to Minimizing Fraud, Waste, and Abuse in Recovery Efforts*.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Gronbjerg, K. 1993. *Understanding Nonprofit Funding: Managing Revenues in Social Services and Community Development Organization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s.
- Inui, K. 1996. The role of Volunteers with professional skills in the Reconstruction of urban areas. In J.F. Goater, (ed.) *Innovative urban community development and disaster management*. UNCRD, Nagoya
- Jalali, R. 2002. Civil Society and the State: Turkey after the earthquake. *Disasters*, 26(2): 120-139.
- King, C. Wendell. 1956. *Social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Random House.
- Max Stephenson, Jr. 2005. Making humanitarian relief networks more effective: operational coordination, trust and sense making.

- Disasters*, 29(4): 337-350.
- Morris, Saul S. 2003. The Allocation of Natural Disaster Relief Funds: Hurricane Mitch in Honduras. *World Development*, 31(7): 1279-1289.
- Mullen, P. D., & Reynold, R. 1978. The potential of grounded theory for health education research: Linking theory and practice. *Health Education Monographs*, 6(3): 280-294.
- Najam, Adil. 2000. The Four-C's of Third Sector-Government Relations: Cooperation, Confrontation, Complementarity, and Co-optation. *Nonprofit Management & Leadership*, 10(4): 375-396.
- Parker, L. D. & Roffey, B. H. 1997. Methodological themes Back to the drawing board: revisiting grounded theory and the everyday accountant's and manager's reality. *Accounting Auditing and Accountability Journal*, 10(2): 212-247.
- Rajib Shaw and Katsuihiro Goda. 2004. From Disaster to Sustainable Civil Society: The Kobe Experience. *Disaster*, 28(1): 16-40.
- Russell S. Sobel and Peter T. Leeson. 2007. The Use of Knowledge in Natural-Disaster Relief Management. *The Independent Review*, VI(4): 519-532.
- Smith, David H. 1988. The Nonprofit Sector, T. D. Connors, ed. *The Nonprofit Organization Handbook*.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Steiss, Alan Walter. 2003. *Strategic Management for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 New York: Marcel Dekker, Inc.

-
- Strauss, Anselm L, & Corbin, Juliet M.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 Strauss, Anselm L, & Corbin, Juliet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Sage.
- Trattner, W. 1984. *From Poor Law to Welfare State*. New York: Free Press.
- Wegner, D.E. 1978. Community Response to Disaster: Functional and Structural Alternations. In E.L. Quarantelli (ed.) *Disasters: Theory and Research*. Sage, Thousand Oaks.
- Wehrich, Heinz. 1982. The TOWS Matrix: A Tool for Situational Analysis. *Long Range Planning*. 15(2).
- Wordon, Q., & Yitzhaki, S. 2002. Evaluating the impact of government programs on social welfare: the role of targeting and the allocation rules among program beneficiaries. *Public Finance Review*. 30(2): 102-103.
- Young, D. R. 1999. Complementary, Supplementary, or Adversarial? A Theoretical and Historical Examination of Nonprofit-government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in E. T. Boris and C. E. Steuerle. eds. *Nonprofits & Government: Collaboration and Conflict*.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부록 1 : 설문조사지 : 공무원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평소에 느끼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응답은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14조(통계작성사무종사자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통계처리에만 사용될 것이므로 안심하시고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3월 일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드림

※ 이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개신동) 충북대학교 산학협력관 411호
TEL: (043)261-3337 FAX: (043)272-5798 E-mail: ncmr i@chungbuk.ac.kr

☞ **설문지 응답 전에 아래 설명 자료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의연금 지급에 대한 설명 자료>

○ 의연금은 피해 보상금이나 정부 구호금과는 구별됩니다.
 즉 의연금은 불시에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이재민을 돕기 위해 일반 국민들이 이웃사랑과 상부상조의 마음으로 내는 자발적인 기탁 성금입니다.

○ 의연금은 배분위원회 위원장과 소방방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 의연금 지급 기준에 준하여 의연금의 재원과 피해 규모에 따라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됩니다.

○ 현행 의연금 지급 기준(의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부상자 유족 등에 대한 의연금 지급 상한액

가. 사망·실종자 유족

1) 세대주 사망·실종 : 최대 1,000만원

2) 세대원 사망·실종 : 최대 500만원

나. 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 신체장애등급 7급이상)

1) 세대주 부상 : 최대 500만원

2) 세대원 부상 : 최대 250만원

2. 재해로 인한 주택의 파손, 침수에 대한 의연금 지급 상한액

가. 주택전파 : 세대당 최대 500만원

나. 주택반파 : 세대당 최대 250만원

다. 주택침수 : 세대당 최대 100만원

3. 재해로 인한 생계지원 대상 피해에 대한 의연금 지급 상한액

가.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를 받은 농가·어가·임가·영생산가

: 세대당 최대 100만원

나. 소상공인 : 세대당 최대 100만원

※ '주택 침수'와 '생계지원 대상 피해'에 대한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1. 의연금의 사용

(의연금의 사용 용도)

1. 의연금은 국민의 자발적인 기탁에 의해 모여진 재원으로서 사용에 있어 한정적일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귀하는 의연금이 다음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연금 사용 용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현재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응급의연금(위로금 성격)을 현금으로 지원					
(2)현재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중·장기적 재건의연금(지원 사업 성격)을 서비스로 지원					
(3)과거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재민에게 생계유지 차원의 생활의연금(위로금 성격)을 현금으로 지원					
(4)과거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재민에게 중·장기적 복지의연금(복지 사업 성격)을 서비스로 지원					

(의연금 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2. 의연금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 정부의 구호금이나 피해 보상금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그 재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귀하는 의연금이 다음 용도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연금 사용 용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이재민 중에서도 중증장애인가정, 독거노인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후 추가 지원					
(2)정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고 삶의 의욕을 불려 일으키기 위해 재난 피해 지역 이재민에게 농촌봉사, 의료지원 봉사, 상담서비스 등의 서비스 지원					

(의연금 지원 시 고려사항)

3. 의연금은 피해보상의 성격과 전혀 다르며 이웃들이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돕는 위로금 성격의 재원임을 감안할 때, 이재민에 대한 의연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①이재민이 당한 피해 정도에 따라 의연금을 차등 지원
- ②이재민이 당한 피해 정도에 따라 형평성 있게 의연금을 균등 지원
- ③이재민이 당한 생산시설이나 장비 등의 피해 정도에 대해 이중 추가 지원
- ④이재민이 당한 피해 세대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의연금을 차등 지원
- ⑤의연금 모금 총액에 따라 이재민에게 그때 그때마다 의연금을 차등 지원

의연금은 재해를 당한 이재민의 구호 차원에서 국민들이 기탁한 성금 재원입니다. 인명피해와 주택피해의 일정한 기준에 준하여 이재민에게 의연금을 공평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의 생산 수단 및 시설에 지원 방법)

4. 의연금이 피해 보상금과는 다른 것임을 고려할 때, 의연금은 형평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귀하는 소상공인이나 농·어·임·업생산자의 생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연금 사용 용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소상공인 등의 생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 재산은 본인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민간 보험회사 등에 사전 가입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2)소상공인 등의 생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의연금에서 지원하기 보다는 정부가 피해보상금 등의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					
(3)다른 이재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의 생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의연금을 위로금 지원에 포함하여 지원해야한다.					

(이재민에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연계 필요성)

5. 현재 이재민을 위한 지원은 현금지급 방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 및 위로를 위해 의연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자원봉사 서비스나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 관련된 이재민 전문 봉사단체로 하여금 이재민에게 서비스 지원을 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필요하다 ⑤매우 필요하다

(의연금 지원 방식의 다양화)

6.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 의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는 이재민에게 의연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이재민에게 현금과 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재민에 대한 다음 의연금 지원 방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연금 지원 방식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이재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액 현금으로만 지원					
(2)의연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또 일부는 물품으로 지원					
(3)의연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또 일부는 봉사 서비스로 지원					
(4)일부 현금 및 그 밖에 일부 생계수단 수리서비스 등 지원					
(5)일부 현금 및 그 밖에 일부 의료, 상담, 심리 등 별도 서비스 등 지원					
(6)특별 추가지원으로 이재민 중 장애인, 독거노인,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					

II. 의연금의 지급 범위 및 기준

2001년 7월 14일과 15일 이틀동안 서울·경기 지역에 내린 호우로 짧은 시간에 11만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당시 지급기준에 따르면 1가구당 60만원씩 660억원이 지원되어야 했지만 그 당시 모금한 의연금이 부족하여 가구당 20만원밖에 지원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화 현상에 의해 인구가 도시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도시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 짧은 시간에 수십만 세대가 침수됨으로써 모금된 의연금만으로는 위로금 지원액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연금 지급 금액이 부족한 경우의 방안)

7. 일정한 피해규모 정도를 기준으로 의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지급해야할 의연금 지원액에 비해 모금된 의연금 총액이 부족할 경우, 귀하는 다음 방안들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연금 지원 방식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모금된 의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재민들이 과거 수준과 동일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모금을 해야 한다					
(2)모금된 의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로또 복권 등의 공익기금을 사용하여 부족분을 보충해야 한다					
(3)모금된 의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을 통해 의연금 부족분을 보조해주어야 한다					

(의연금 모금 금액이 초과한 경우의 방안)

8. 일정한 피해규모 정도를 기준으로 의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모금된 의연금 총액이 지급해야 할 위로금 총액을 초과하여 권힌 경우, 귀하는 다음 방안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연금 지원 방식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모금된 의연금이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의연금 모금을 한 이재민에게 의연금을 추가로 더 지원한다					
(2)모금된 의연금이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의연금 모금을 한 이재민에게 현금이외의 서비스 형태로 지원한다					
(3)모금된 의연금이 초과한 경우에는 의연금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남은 의연금은 다음 재해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으로 적립한다					
(4)해당 재해 이재민 중에서 장애인, 독거노인,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 서비스 지원을 한다					

(일부 소규모 지역 재난 발생 시 의연금 지원)

9.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에게 의연금 모금 운동을 벌이게 되면 의연금 모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가져오기 쉽고 의연금 피로감을 느끼게 하기 쉽습니다. 이에 현재는 소규모 지역에 국한하여 재난 피해가 작은 경우에는 의연금을 모금하지 않고 기존에 모금된 의연금 적립기금에서 위로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연금 지원 방식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별도로 모금하지 않고 기존에 모금해서 적립해 둔 의연금에서 지급해야 한다					
(2)그때그때 별도로 모금을 해서 모은 의연금에서 지급해야 한다					
(3)국민들에게 별도로 모금하지 않고 의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구호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4)소규모 재난에 의한 이재민에게는 의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 액수 지급에 대한 의견)

10. 현재 의연금은 사전에 마련된 규정에 마련된 의연금 지급기준에 준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금까지처럼 동일피해에 대해서는 동일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동일한 피해를 입으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동일피해일지라도 재산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격이 높은 집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더 많은 위로금을 지급한다					
(3) 동일피해일지라도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세대 구성원이 많으면 더 많은 위로금을 지급한다					
(4) 동일피해일지라도 모금된 의연금 총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비해 의연금이 적게 걷히면 의연금 지급액도 전년도에 비해 조금만 지급한다					

(현금 일시지급에 대한 의견)

11. 현재 의연금은 이재민에 대하여 현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지급하다보니 이재민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해를 당한 상황에서 일시에 전부 다 사용한 이후 생활에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이재민 각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연금 전액을 지금처럼 한 번에 일시 지급하는 것이 좋다					
(2)이재민 각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연금 전액을 6개월 기간 이내에서 2-3회 정도로 분할 지급하는 것이 좋다					

(의연금 지원에 대한 자유 의견)

12. 현재의 의연금의 지원 및 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또는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다음은 자료의 통계적 분석에 필요한 몇 가지 기본 사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2. 귀하의 연령은?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고졸이하 ②대졸 ③석사 ④박사
4. 귀하의 직급은? ①8~9급 ②6~7급 ③5급 ④4급 이상
5. 귀하의 근무 년 수는? _____년
6. 귀하의 재해구호(의연금품 포함)업무에 근무 년 수는?
7. 귀하의 연 소득은? ①3,000만원 이하 ②3,000만원 - 4,000만원
③4,000만원 - 5,000만원 ④ 5,000만원 - 6,000만원 ⑤6,000만원 이상

※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부록 2 : 기탁자 · 일반시민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평소에 느끼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응답은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14조(통계작성사무종사자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통계처리에만 사용될 것이므로 안심하시고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4월 일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드림

※ 이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개신동) 충북대학교 산학협력관 411호
TEL: (043)261-3337 FAX: (043)272-5798 E-mail: ncemri@chungbuk.ac.kr

☞ 설문지 응답 전에 아래 설명 자료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연금은 이렇게 지원됩니다 >

○ 의연금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성금으로, 피해보상금이나 정부에서 지급하는 구호금과 다릅니다.

○ 의연금은 지급 기준에 의해 재원과 피해 규모에 따라 배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됩니다.

○ 의연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구 분	단 위		지 원 액
사망자 및 실종자	인	세대주	10,000천원 이내
		세대원	5,000천원 “
부 상 자	인	세대주	5,000천원 “
		세대원	2,500천원 “
전 파 주 택	세 대		5,000천원 “
반 파 주 택	세 대		2,500천원 “
침 수 주 택	세 대		1,000천원 “
농업·어업·임업 ·염생산업	세 대		1,000천원 “
소 상 공 인	세 대		1,000천원 “

1. 의연금의 사용

(의연금 사용처에 대한 인식)

1. 귀하는 재해의연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계십니까?

- ① 전혀 알지 못 한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알고 있다 ⑤ 아주 잘 알고 있다

(의연금의 사용 용도)

2. 재해 의연금은 모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지원이 한정될 수 밖에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귀하는 의연금의 다음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연금 사용 용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이재민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					
(2) 이재민을 위한 중·장기적 복구 사업 지원					
(3) 이재민 중 장애인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4) 재해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단체에 대한 지원					

(의연금 지원 시 고려사항)

3. 의연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번) (2순위 _____번)

<보기>

- | |
|-----------------------------|
| 1) 형평성이 중요하므로 세대별 균등지원 |
| 2) 피해규모가 같아도 가족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 |
| 3) 손실된 재산 가액에 따른 차등지원 |
| 4) 당해 모금된 의연금 총액에 따른 비례지원 |

(소상공인 등의 생산 수단 및 시설에 지원 방법)

4. 귀하는 소상공인이나 농·어·가·임·가·업 생산가의 생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연금 사용 용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사유재산은 스스로 지켜야하므로 보험가입 등으로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정부가 피해보상금 등의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					
(3)생산시설피해지원은 위로금의 성격이 아니므로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이 바람직하다.					
(4)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나 현행대로 의연금에서 위로금 지원해야한다.					

(이재민에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연계 필요성)

5. 이재민을 위해 현금지원 외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단체나 자원 봉사자들에게 위탁하여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의연금 지원 방식의 다양화)

6. 우리나라는 현재 의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 의연금 지원 방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연금 지원 방식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전액 현금 지원					
(2)현금과 물품을 함께 지원					
(3)현금과 주택수리 등 복구 서비스 지원(직접 지원)					
(4)의료, 심리상담 등 별도 서비스 제공 단체의 지원(단체 지원)					
(5)조손가정이나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단체의 지원(단체 지원)					

II. 의연금의 지급 범위 및 기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는 짧은 시간에 수백만 가구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금된 의연금으로는 피해세대 지원 금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연금 지급 금액이 부족한 경우)

7. 재해가 발생하여 의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모금된 의연금이 **부족할 경우**, 다음 방안들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연금 지원 방식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모금된 금액 한도에서 지원					
(2)로또 복권 등의 공익기금을 사용하여 부족분을 보충					
(3)정부가 예산을 통해 의연금 부족분을 보조					

(일부 소규모 지역 재난 발생 시 의연금 지원)

8. 현재는 소규모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피해규모가 적은 경우, 모금하지 않고 과거 모금한 의연금 적립금에서 위로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연금 지원 방식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존 의연금 적립금에서 지급					
(2) 그때그때 별도 모금해서 지급					
(3) 별도 모금없이 부족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					
(4) 소규모 재난에 의한 이재민에게는 의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음은 자료의 통계적 분석에 필요한 몇 가지 기본 사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2. 귀하의 연령은?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초졸 ②중졸 ③고졸 ④대학중퇴 이상
4. 세대주와의 관계는?
①세대주 본인 ②세대주의 배우자 ③세대주의 부모
④세대주의 형제·자매 ⑤세대주의 자녀 ⑥기타
5. 귀하의 연 소득은?
①3,000만원 이하 ②3,000만원 - 4,000만원
③4,000만원-5,000만원 ④ 5,000만원-6,000만원 ⑤6,000만원 이상
6. 귀하의 직업은?
①회사원 ②공무원 ③자영업 ④농·축·수산업
⑤전문직 ⑥주부 ⑦학생 ⑧단순노무
⑨무직 ⑩기타()

※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부록 3 : 재해지역 주민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평소에 느끼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응답은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14조(통계작성사무종사자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통계처리에만 사용될 것이므로 안심하시고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4월 일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드림

※ 이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개신동) 충북대학교 산학협력관 411호
TEL:(043)261-3337 FAX:(043)272-5798 E-mail: ncemr i@chungbuk.ac.kr

☞ 설문지 응답 전에 아래 설명 자료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연금은 이렇게 지원됩니다 >

- 의연금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성금으로, 피해보상금이나 정부에서 지급하는 구호금과 다릅니다.
- 의연금은 지급 기준에 의해 재원과 피해 규모에 따라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됩니다.
- 의연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구 분	단 위	지 원 액	
사망자 및 실종 및 자	인	세대주	10,000천원 이내
		세대원	5,000천원 “
부 상 자	인	세대주	5,000천원 “
		세대원	2,500천원 “
전 파 주 택	세 대	5,000천원 “	
반 파 주 택	세 대	2,500천원 “	
침 수 주 택	세 대	1,000천원 “	
농업·어업·임업 ·염생산업	세 대	1,000천원 “	
소 상 공 인	세 대	1,000천원 “	

1. 의연금의 사용

(의연금 지원에 대한 이재민 만족도)

1. 귀하께서 받으신 의연금이 다음 각 질문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질 문	전혀 도움되 지 않았다	별로 도움되 지 않았다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생계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2)정신적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3)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의연금의 사용 용도)

2. 재해 의연금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모여집니다. 귀하는 의연금을 다음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연금 사용 용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이재민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					
(2)이재민을 위한 중장기적 복구 사업 지원					
(3)이재민 중 장애인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4)재해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단체에 대한 지원					

(의연금 지원 시 고려사항)

3. 의연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번) (2순위 _____번)

<보기>

- 1) 형평성이 중요하므로 세대별 균등지원
- 2) 피해규모가 같아도 가족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
- 3) 손실된 재산 가액에 따른 차등지원
- 4) 당해 모금된 의연금 총액에 따른 비례지원

(소상공인 등의 생산 수단 및 시설에 지원 방법)

4. 귀하는 소상공인이나 농가·어가·임가·염생산가의 생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연금 사용 용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유재산은 스스로 지켜야하므로 보험가입 등으로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 정부가 피해보상금 등의 형태로 지 원해야 한다.					
(3) 생산시설피해지원은 위로금의 성격 이 아니므로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이 바람직하다.					
(4)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나 현행대로 의연금에서 위로금 지원해야한다.					

(이재민에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연계 필요성)

5. 이재민을 위해 현금지원 외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단체나 자원 봉사자들에게 위탁하여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의연금 지원 방식의 다양화)

6. 우리나라는 현재 의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 의연금 지원 방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연금 지원 방식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전액 현금 지원					
(2)현금과 물품을 함께 지원					
(3)현금과 주택수리 등 복구 서비스 지원(직접 지원)					
(4)의료, 심리상담 등 별도 서비스 제공 단체의 지원(단체 지원)					
(5)조손가정이나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단체의 지원(단체 지원)					

II. 의연금의 지급 범위 및 기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는 짧은 시간에 수백만 가구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금된 의연금으로는 피해세대 지원 금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연금 지급 금액이 부족한 경우)

7. 재해가 발생하여 의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모금된 의연금이 부족할 경우, 다음 방안들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연금 지원 방식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모금된 금액 한도에서 지원					
(2) 로또 복권 등의 공익기금을 사용하여 부족분을 보충					
(3) 정부가 예산을 통해 의연금 부족분을 보조					

(일부 소규모 지역 재난 발생 시 의연금 지원)

8. 현재는 소규모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피해규모가 적은 경우, 모금하지 않고 과거 모금한 의연금 적립금에서 위로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연금 지원 방식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존 의연금 적립금에서 지급					
(2) 그때그때 별도 모금해서 지급					
(3) 별도 모금없이 부족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					
(4) 소규모 재난에 의한 이재민에게는 의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음은 자료의 통계적 분석에 필요한 몇 가지 기본 사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2. 귀하의 연령은?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초졸 ②중졸 ③고졸 ④대학중퇴 이상
4. 세대주와의 관계는?

- ①세대주 본인 ②세대주의 배우자 ③세대주의 부모
- ④세대주의 형제·자매 ⑤세대주의 자녀 ⑥기타
5. 귀하의 연 소득은? ①3,000만원 이하 ②3,000만원 - 4,000만원
- ③4,000만원 - 5,000만원 ④ 5,000만원 - 6,000만원
- ⑤6,000만원 이상
6. 귀하의 직업은?
- ①회사원 ②공무원 ③자영업 ④농·축·수산업
- ⑤전문직 ⑥주부 ⑦학생 ⑧단순노무
- ⑨무직 ⑩기타()

※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발행일: 2009년 12월 4일

발행인: 전국재해구호협회장

발행처: 전국재해구호협회

: (121-856)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71-19
